

2025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돌 판결문 읽기”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후원 :  재단법인 사무금융우분투재단
Finance & Service Ubuntu Fund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난민/미등록이주민 지원과 난민심사 및 이주구급 관련 법정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올해 초에 만들어진 자그마한 연구/활동모임입니다. 국경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난민과 비인간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어 온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실천적인 앎을 모색하는 것을 활동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문제>기획으로 우분투프로젝트 ‘생각대로’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ZOOM) 공론장을 꾸렸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변호사와 활동가가 구체적으로 만난 사례/판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고민을 나눔으로써, 난민/미등록이주민 이슈를 구체적으로 문제화하고, 교차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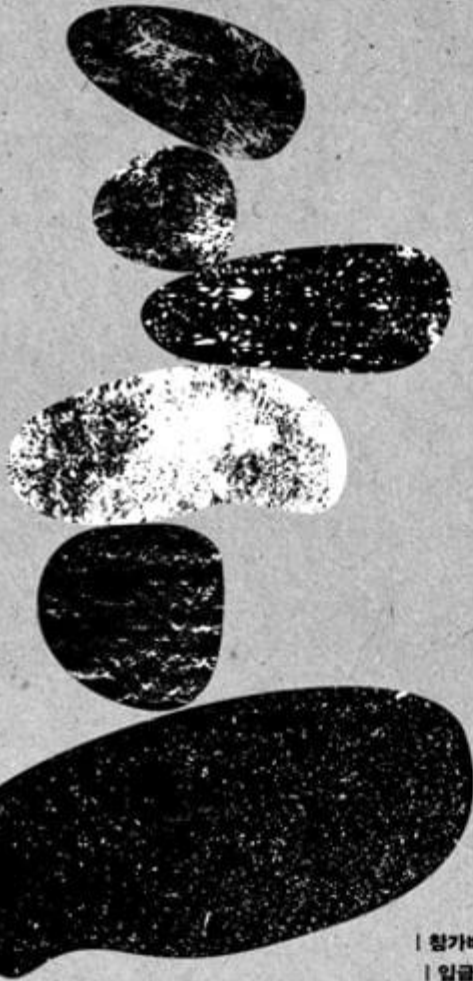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문제>

- *** 일시 : 2025년 7월14일부터 8월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30-9:30
- *** 진행 : ZOOM(남겨주신 연락처로 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 참가비 : 부분 참가 1만원, 전체 참가 3만원 (카카오뱅크 3333-02-8540124 심아정)
- *** 주최 :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 *** 후원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7/14~8/18
매주 월요일 총6강
저녁 7시30분~9시30분
온라인 ZOOM



판례로만나는이주/다민이슈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 참가비 | 부분참가 1만원, 전체참가 3만원
| 입금계좌 | 3333-02-8540124 실아정

| 주최 |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 후원 | 사무금융우뎀재단

제1강 (7/14)
고문당했던 나라로 떠나라?
: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사회: 아정 트랜스보더링랩
발표: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토론: 한나현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제2강 (7/21)
국경에 갇힌 공항난민
: 관행과 불법행정을 문제화하기

사회: 아정 트랜스보더링랩
발표: 이항재 공익법단체 두루
토론: 에밀리

제3강 (7/28)
1%의 가능성을 붙잡고
: 성소수자 난민재판

사회: 아정 트랜스보더링랩
발표: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황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제4강 (8/4)
환대의 범죄
: 단속을 피해 동료들의 도망을 도운 김민수의 사례

사회: 슬기 트랜스보더링랩
발표: 최정규 범무법언 율곡
토론: 김희정 성서공단노동조합

제5강 (8/11)
체류가 아닌 삶, 성원권을 보장하라-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과 함께 사는 미래

사회: 슬기 트랜스보더링랩
발표: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토론: 김슬기 의정부 엑소더스

제6강 (8/18)
이주의 위기, 여성의 위기
: 여성난민신청자의 몸과 삶

사회: 슬기 트랜스보더링랩
발표: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토론: 박영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커뮤니티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1강**

<징집거부도 난민 인정 사유가 되나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징집거부 난민신청자를 조력하며>

사회 : 심아정(트랜스보더링랩)

발표 : 이종찬(공익법센터 어필)

토론 : 한나현(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제1강 징집거부도 난민인정 사유가 되나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징집 거부
난민신청자를 조력하며(7/14)



전쟁난민과 징집거부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은 긴 구금 기간과 재판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소하여 **위험을 안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구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는 **공항에서의 구금 문제**로도 이어진다.

발표자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제1강 징집거부도 난민인정 사유가 되나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징집 거부
난민신청자를 조력하며(7/14)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과정에서 '명령과 집행의 이원화'는 **난민심사제도와 출입국관리법의 공조**를 의미한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난민을 **'포획'해두는 공간**이다. 난민에게 구금의 시간은 투쟁이다.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과 **신념에 따라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있음'을 통해 싸운다.**

토론자 한나현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징집거부도 난민 인정 사유가 되나요?

발표_이종찬(공익법센터 어필)

- I.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의 문제
 - 1. 강제송환금지원칙의 근거와 내용
 - (1) 국제법상 근거
 - (2) 국내법상 이행
 - 2.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심사 단계
 - 3. 송환국의 조건과 소거 방식 실무의 문제
 - 4.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문제

- II. 전쟁난민/징집거부자의 강제송환 - 러시아, 수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 1. [걸림돌] 문제의 출발점
전쟁난민/징집거부를 난민으로 보지 않는 출입국/법원의 태도(러시아 사례)
 - 2. 전쟁난민/징집거부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 3. 전쟁난민/징집거부자의 출입국향 난민심사 불회부결정과 공항 구금의 문제

I.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의 문제¹⁾

1. 강제송환금지원칙의 근거와 내용

강제송환금지원칙의 근거가 되는 국제협약	내용 요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 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난민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박해의 위험')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이는 '박해'의 위험을 금지하는 취지이며, 특정 박해 사유로 인한 위험에 적용되지만, 일정한 배제 사유가 존재: ①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1) 최계영 교수님의 2024. 5. 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79회 정기학술발표회 제1주제 발표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강제퇴거의 제한> 목차 III.의 체계와 내용을 따르면서, 어필에서 수행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더하여 발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p>아니된다.</p> <p>②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p>
<p>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제 3조</p>	<p>"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난민협약과 달리 배제 사유가 없는 절대적 금지이며, 특정한 사유(예: 박해 사유)를 요구하지 않음:</p> <p>①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위와 같이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p>
<p>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제 7조</p>	<p>직접적으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는 고문방지협약보다 넓은 범위에서 비인도적 처우의 위험까지 포함:</p> <p>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p>

※ (해석론) 송환 금지에 따른 체류국 보호 의무: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송환으로부터의 방어를 넘어서는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근거가 됨. 송환이 금지된 결과 국내에 머무르게 된 외국인의 삶의 조건 역시 비인도적·굴욕적인 처우에 이르지 않아야 하므로, 체류국은 이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짐.

(2) 국내법상 이행

1) 한국 난민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①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 ②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 ④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특히,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침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며, 이는 자유권규약 제7조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됨(한국은 자유권규약의 체약국으로서 동 규약 제7조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부담).

2.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심사 단계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보호대상인(보호대상일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강제퇴거명령 ‘발령’은 적법한가?(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반을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1) 명령과 집행의 이원화 [걸림돌]

대법원 판례는 없고, 과거 하급심 판례는 대체로 그 자체는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

예)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3063 판결: 난민신청자가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신청자인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퇴거명령은 내릴 수 있도록하되,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는 방법”을 입법적으로 택하였다는 입장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0.>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판례 경향의 문제점

-출입국관리법 제62조는 난민협약 제3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 a) 난민법 제3조에 의해 보호되는 난민신청자 중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가 제외되어 있음.
- b)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유인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는 추방을 제한하는 난민협약 제32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대한 제33조 제2항의 예외사유보다 훨씬 넓은.
- c)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명령과 집행 사이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처분이 게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저촉되는 강제퇴거 집행을 재판을 통해 저지할 방법이 없음.

(2) 심사 가능성의 인정 [디딤돌/애매한돌 판결]

1)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 78282 판결

-사안 개요: 난민‘인정자’(국적: 우간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송환국 심사가 필요함을 밝힌 최초의 판결.

난민인정자가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 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명령을 한 사안.

-법원의 판단(12-13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난민인정자 강제퇴거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송환 가능 국가 확인하고 송환국 특정해야 함. 송환국 전혀 특정 안 했거나 박해/고문 우려 국가 포함 시 난민법 제3조(난민협약 33조와 고문방지협약 3조를 근거로 특정 제시) 위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법 제3조에서 규정한 강제송환금지원칙상 일반적인 외국인이나 난민신청자와 달리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송환이 가능한 국가를 확인하고,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서에 송환국을 기재하거나, 적어도 난민인정자가 송환될 경우 박해 또는 고문을 받을 염려가 있는 국가를 소극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송환국을 특정해야 하며, 이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거나, 박해 또는 고문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송환국을 특정하였다면 이는 난민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봄이 옳다.”

-주요 근거(13-21면)

- a) 국제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 가짐.
- b)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절대적 금지: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과 달리 고문 위험 시 예외 없

는 추방·송환 금지. 따라서 난민협약상 예외에 해당하는 난민인정자라도 고문 위험 국가는 송환 불가.

c) 절차적 보호의 중요성: 강제퇴거 명령 후 송환국 결정 및 집행 단계에서 다투기 사실상 불가하므로, 명령 단계에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보장해야 함.

d) 행정청의 실질적 분리 없음: 강제퇴거 명령 발령과 집행이 동일 행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절차적 분리를 이유로 송환국 심사 미룰 필요성 크지 않음(어차피 한 기관에서 발령과 집행을 하므로 발령시에 송환국 심사하면 됨).

e) 난민법의 우선 적용: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의 지위와 처우에 출입국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난민 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전 난민법 제3조 심사 이루어져야 함.

f) 송환 불가능 시 국내 체류 내재: 강제송환금지원칙 적용으로 송환할 국가가 없으면 국내 계속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내재됨(그러니 발령 심사 단계에서 이런 것들 고려하여 강제 퇴거명령 발령 안하고 체류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음)

-결론: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부적법(보호명령은 적법한 강제퇴거명령을 전제하므로 보호명령도 위법).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모두 취소.

a) 피고, 강제퇴거명령 발령 전 송환국 조사 및 난민법 제3조 위반 여부 심사 안 함. 강제 퇴거명령서에 송환국 전혀 특정 안 함(국적국 제외된다는 취지도 기재 안 함).

b) 원고,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박해 가능성 소멸 안 함. 고문 위험 존재하므로 국적국으로는 강제송환 불가.

2) 유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구단50933 판결

-강제퇴거명령 발령 단계의 심사가가능성 인정:

“송환국의 지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적정한 국가로 지정되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재량권의 행사가 헌법의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되면 해당 강제퇴거명령은 위법”

-원고(국적: 미얀마)는 형식적으로는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였으나, 원고는 국적국에서 박해의 위험과 고문의 위험이 있음을 주장.

*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구금(취업비자 만료 - 이후 취업허가 없는 근로활동으로 출국명령 - 난민신청을 이유로한 출국기한 유예 - 출국기한 유예 만료 이후 유예 신청을 위한 방문 - 강제퇴거명령: 송환국 미얀마 지정 - 구금)을 계기로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였음

(3) 왜 ‘애매한 판결’이기도 할까? - 판결문 이후의 이야기들

1) 서울행법 2021구합78282 사건(우간다)의 뒷이야기

-외국인보호소 구금된 소식을 듣고(과거에 도왔던 난민인정자) 상담 후 강제퇴거명령 소제기 및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정지 (보호소에서 보호해제됨).

-2022. 8. 18. 본안판결 선고. (피고 항소포기: 재판부에게 법리상 중요한 이슈이자 판단이었지만, 실제 실무에선 송환국을 어떻게 적는지는 피고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음. 이에 항소 안한 것으로 추측).

-출입국: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2022. 12. 21.경 강제퇴거명령 재처분. '우간다를 제외한 제3국' 취지로 기재함. 어필과 함께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 수령하러 갔고 다시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됨.

2) 서울행법 2021구합78282(우간다)에 바로 이어진 후속 사건: 재구금된 바로 다음날 제2사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의 소 제기(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822)

-제1사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는 '강제퇴거명령만 인용되고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기각', 항고를 통해서 고등법원에서 2023. 5. 15. 보호명령도 집행정지 인용. 집행정지의 효력으로 풀려나서 현재까지 밖에 있는 상태. 본안소송은 유엔난민기구 사실조회 등으로 기일 추정되어 아직 종결되지 않음.

3) 인천지법 2023구단50933(미얀마) 사건의 뒷이야기

-앞선 이유와 마찬가지로 취지로 출입국 항소하지 않아 확정

-미얀마 국적인에 대하여는 G-1-99 비자 정책이 도입되어 강제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해 출입국도 재처분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문 중 '출국명령 후 조건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은 기속행위(해야 한다)'라는 해석 제시* 때문에, 협의와 고민 끝에 재처분을 내림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각 호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대로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명령에서 정해진 출국기한을 지키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하는 강제퇴거명령은 기속행위라고 해석된다."

-송환국: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

4) 결국 "소거 방식의 기재"를 통해 2021구합 78282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관행으로 전개.

3. 송환국의 조건과 소거 방식 실무의 문제

*2021구합78282 판결은 송환이 가능한 국가를 확인하여 송환국을 기재하는 방식 외에 "난민

인정자가 송환될 경우 박해 또는 고문을 받을 염려가 있는 국가를 소극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송환국을 특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소거 방식’의 기재 실무가 생김

(1) 위 판결 이후 강제퇴거명령 송환국 기재례

-[국적국]을 제외한 제3국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

-[국적국]을 제외한 본인이 송환을 원하는 국가,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 송환국 특정 불가, 집행단계에서 결정 예정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제외, 본인 송환국 미지정, 집행단계에서 결정 예정

제64조(송환국 등)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2) 결국 위 기재례들은 국적국을 소거하는 방식이거나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송환국을 특정한 것임

(3) 소거 방식의 송환국 기재는 적법한가(강제송환금지원칙 충족하는가)? - 안전한 제3국 기준

1)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체류국에서의 추방(강제퇴거) 자체를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라 일정한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제32조에 배치되지 않는 한에서 제3국으로의 송환 가능.

- 난민협약에서도 추방의 금지(제32조)와 송환의 금지(제33조)를 따로 규정: 제33조는 난민 보호를 위한 ‘송환 금지’ 원칙 설정. 제32조는 예외적으로 추방 가능할 때 국가가 따라야 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 명시.

제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외: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협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

제32조 추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해서만 행하여진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

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

2) 제3국 송환 역시 박해, 고문, 비인도적 처우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 출신국이 아니라고 해서 언제나 송환이 허용되는것은 아니고, 송환국은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이어야 함.

3) 안전한 제3국 기준: UNHCR 기준 (이른바 4요건론)

a. 제3국은 당사자의 (재)입국을 허가할 것(제3국은 난민신청자 또는 난민의 지위에서 입국을 허가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하여야 함).

b. 제3국에서 난민인정절차가 보장되어야 함(난민지위와 그 밖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절차여야 함).

-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류가 허용되어야 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수단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c.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으로 인정되면 적법한 체류가 보장되어야 함. 유임노동에 종사할 권리 등 난민협약상 권리도 보장되어야 함.

d. 당사자에게 난민협약과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처우를 보장하여야 함. 강제송환으로부터의 보호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제3국에서 박해의 위험,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위험, 생명에 대한 위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신체의 자유 박탈의 위험이 없어야 함.

- 송환된 제3국에서 다시 출신국이나 박해 등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될 위험도 없어야 함.(‘연쇄송환’, ‘간접송환’의 금지).

- 실효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난민협약과 기본적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인지도 중요하지만, 국내법을 통한 이행과 실제 관행이 이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함.

4) 최근 대법원 판례가 언급 한 “ 안전한 국가 ” [대법원 2024 두 64000] [디딤돌]

- 맥락: 공항 난민신청에 대한 난민심사 불회부²⁾사유로 명시된 “안전한 국가”의 정의(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2) "불회부"는 행정 절차에서 어떤 신청이나 안전을 정식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난민 신청의 경우,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라고 합니다. 즉, 신청자의 주장이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정식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본 규정에서 말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출신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당해 난민신청자가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의 권리,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받고, 불복 기회가 부여되며,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될 우려가 없을 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 나아가 난민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상응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5) 결국,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고 제3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그 제3국이 입국 허가, 난민인정절차, 난민 보호,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처우 등이 보장되는 국가여야 함.

-국적국 소거 방식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부합하는 퇴거를 보장하지 못함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제외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① 안전한 제3국 요건을 다 담지 못함: 예) 박해나 고문을 가하지 않더라도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실무상 확립되지 않아 국적국으로 재송환할 위험은 담아내지 못함.

② 안전한 제3국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해하더라도, 특정한 국가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송환국으로 지정한 행정청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집행을 재판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음

③ 결국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제외한다는 기재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여 송환하겠다는 추상적 원칙을 선언한 이상의 의미는 없고, 송환국을 공란으로 한 기재와 실질적으로 동일.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강제퇴거되는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등의 입국이 보장되는 제3국이 없다는 점.

① 유럽 더블린 협정이나 미-캐나다 협정과 같은 국가 간 명시적인 약정 내지 별건 난민에 대한 개별적 약정이 없는 한, 제3국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의무 없음.

②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 송환국 특정 불가’라는 처분서 기재는 제3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을 확보할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송환할 제3국의 확보는 해당 외국인을 실효적인 통제 하에 두고 있어 국제인권조약에 기초해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지는 ‘체류국’이 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함.

▶▶▶ 결론: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적용된 결과 난민인정자가 송환될 국가가 없는 경우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법 2021구합78282 판결은 ‘강제퇴거명령은 다른 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도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적용된 결과 난민인정자가 송환될 국가가 없는 경우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하여 송환국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처럼 서술. 그러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적용 결과 송환될 국가가 없다면 재량은 사라지고 강제퇴거명령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현실에서는 소거 방식으로 기재된 강제퇴거명령이 부적법하다는 판결 아직 나오지 않음.
예) 난민인정자(국적: 콩고, 가족결합)의 형사 판결 이후 강제퇴거명령이 나온 사안(송환국 기재: 콩고를 제외한 본인이 송환을 원하는 국가,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 송환국 특정 불가, 집행 단계에서 결정 예정)에서 취소소송 제기했으나 1심 패소(서울행법 2023구단52768), 항소심 진행 중.

“원고의 주장대로 난민인정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단계가 아닌 결정 단계에서부터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당시 원고의 부친이 콩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국적국인 콩고를 송환국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원고에게 희망하는 송환국을 확인하였으나 희망국가가 없다는 원고의 답변으로 인해 송환국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에 ‘콩고를 제외한 본인이 송환을 원하는 국가,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 송환국 특정 불가, 집행단계에서 결정 예정’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당시 콩고를 제외하는 이외에 다른 송환국을 기재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에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근거한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한 절차적, 실제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문제

*앞선 판례들은 ‘난민인정자’의 강제송환을 다루고 있는데, 인도적체류자나 난민신청자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함.

(1) 인도적체류자의 강제퇴거명령도 소거 방식 기재로 운영 중이며,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패소 (대전지법 2024구단201637), 항소 중.

-시리아 국적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에서 송환국을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제외, 본인 송환국 미지정, 집행 단계에서 결정 예정’으로 기재. 안전한 제3국 이론 등을 주장하였으나 1심 패소, 항소 중 (원고는 소송 절차 중 제3국 희망 ‘말레이시아’로 하여 퇴거 집행되었음.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안전한 제3국에 해당할 수 없음).

(2)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

1) 과거에는 ‘취업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 여러 규범적 고려를 하여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판결이 있었음(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고 한 사례.

(요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신청자인 甲에 대하여 생계지원 없이 난민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극히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난민불인정 결정 후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허가기간 외에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은 행정의 획일성과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

-관련/유사 항소심 판결은 동천 게시글 참조

2)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위와 같은 규범적 고려를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사례는 찾기 어려워짐.

-밀입국한 나이지리아 국적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2015년 서울행법 1심 판결이 있었으나(2015구단50576), 항소심에서 뒤집혀 패소함(서울고등 2015누51448).

예) 2015구단50576 [디딤돌]:

“설령 체재국에서 난민인정결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난민신청자의 공박한 처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권익의 보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난민편람 제192항 (vii)호 및 제28항 등에 근거하여 판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보류된다고 하여 강제퇴거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거나, 강제퇴거명령 발령단계에서는 비례의 원칙이 특별히 완화되어 피고의 재량권이 무한히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강제퇴거명령은, 비록 관계법령에서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일단 집행되어버리면 그 위법성을 더 이상 다룰 실익이 없어지므로 명령 단계에서부터 그 적법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위법성 인정

예) 항소심 2015누51448 [걸림돌]: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명령과 집행을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보호명령을 함으로써 난민신청자가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실익이 있다.” … “그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퇴거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미얀마 국적 난민신청자 사건(형식적으로 신청 철회했다가 이후 다시 신청, 인천지법

2023구단50933)의 뒷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에서도 ‘소거 기재’가 활용되고 있음.

(참고1)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은 실무상 잘 활용되지 못함.
법원이 보호 집행정지를 잘 인용하지 않고, 본안(강제퇴거명령 취소) 자체도 난민절차 진행에 따른 인정 여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등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 소를 제기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차라리 난민인정절차를 expedite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참고2)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이후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 기존 송환 국 기재를 ‘국적국’으로 한 것에 대해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II. 전쟁난민/징집거부자의 강제송환 - 러시아, 수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1. [걸림돌] 문제의 출발점

: 전쟁난민/징집거부를 난민으로 보지 않는 출입국/법원의 태도(러시아 사례)

예) 서울행정법원 2025. 1. 15. 선고 2023구단70520 판결
러시아 국적 난민신청자(화성보호소-보호일시해제) 사건들은 모두 이런 판시를 포함:

“일반적으로 징병제 국가에서 징집 기피의 유일한 이유가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라면 이는 난민인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유엔난민기구,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제 167조, 제168조 참조). 그러므로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 에 비로소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 393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정치적 의견의 표명으로서 징집을 거부하고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가 본인신문 과정에서 밝힌 반전활동에 관한 진술 내용 역시 막연하고 작위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전시’ 징집거부에 관하여는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한 난민인정 가능성이 넓어지나, 아직까지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음

2. 전쟁난민/징집거부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과 현실

(1) 결론: 징집거부 난민신청자들의 경우도 ①주관(내심/외견)에 의한 난민인정과 ②객관에 의한 난민인정이 가능함

-①②요건(주관적 - 내심에 따른 난민사유) 난민신청자 개인이 내심의 의사로 난민협약상 사유(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의견’)와 관련 있는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징집을 거부하여 이에 반하는 박해(징집 또는 처벌 등)를 받을 경우, 또는

-①㉠요건(주관적 - 외견적 평가에 따른 난민사유: ‘전가된 정치적 의견’ 법리) 난민신청자 개인의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혹은 중첩적으로, 박해 주체인 국적국 당국이 평가하기에 병역 기피·징집 거부가 난민협약상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또는

-②요건(객관적 상황에 따른 난민사유) 난민편람 제171항과 같이 ‘자신이 참여함을 원하지 않는 종류의 군사행동이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기본행동양식의 기본적 규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주요 근거: 난민편람, 난민심사지침, 법원 선례, UN 양심적 병역거부 보고서 등

1) UNHCR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이하 “난민편람”)은 제167항부터 172항에서 별도로 “탈영병과 병역기피자” 주제를 다루면서 ‘단순한 병역기피는 난민의 근거가 되지 않으나(167), 탈영 또는 병역기피가 난민협약상 사유와 관련이 있을 경우 근거가 되고 (168, 169), 특정 군사행동이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기본 행동양식의 기본적 규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박해가 된다(171)’는 점을 명확히 하고 ‘종교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172-174)도 다루고 있음

2) 유엔난민기구가 편람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순차적으로 발간하는 ‘난민심사지침’ 중 2012년 발간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0호(군복무에 기반한 난민지위 신청)에도 이 부분 상술함:

51.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사유는 특정 정치적 운동 또는 이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 정부, 사회 또는 정책의 시스템과 연관된 어느 문제에 대한 모든 의견’을 포함한다. 게다가 실질적인 정치적 의견을 가지는 것과 그러한 의견의 표현, 정치적 중립성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에게 전가된 정치적 의견도 포함한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 혹은 비국가 무장단체가 한 개인에게 특정 정치적 의견을 연관짓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

52. 병역 거부와 관계된 사안은 1951년 협약에서의 정치적 의견의 사유와 연관지어 판단할 수 있다. 분쟁이 인간 행위의 기본규칙을 위반한다는 시각(위 IV.A(ii))에 기초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그 사실에 따라 실제의 혹은 전가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기관은 개인의 분쟁 참여 거부를 해당 기관의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탈영이나 기피 자체가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거나 그러한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미국의 경우 대부분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례가 중남미 국가로부터 피신한 난민들로 인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인정되는 선례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1988년의 한 판례(M.A.A26851062)는 다음과 같이 실시:

“그러나 군 복무 수행의 필요성이 난민 지위 인정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군 복무 수행이 자신의 진정한 정치적 태도,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 또는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양심에 반대하는 군사 행동 참여를 요구했음을 보여줄 수있는 경우(단락 21). 특정 군사 행동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에 관해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군사 행동의 유형이 인간 행동의 기본 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 의해 비난 받는다면, 탈출의 탈영에 대한 처벌은 정의의 다른 모든 요구 사항에 비추어 그 자체가 박해로 간주 될 수 있다”

4) 소위 선택적 병역거부도 난민사유로 가능(위 지침 제10호):

“병역거부는 절대적 양심거부자[평화주의자] 즉 모든 군대의 무력사용을 반대하거나 모든 전쟁에 대해서 참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무력사용은 특정한 경우에는 정당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무력사용을 반대하는 것[병역에 대한 부분 혹은 선택적 거부]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5) 독일 판례: ‘시리아 국적 성인 남성’의 단순한 병역기피에 대해 독일 당국이 ‘인도적 체류 지위’만 부여한 것을 취소한 세 건의 고등행정법원(2심) 판결

a) 2018. 2. 7. 선고 5A 1245/17.A Saxon Higher Administrative Court (독일 작센주 고등행정법원 판례): 2016. 12. 보충적보호지위 인정(행정심판) ☞ 2017. 5. 난민지위 인정(행정소송 1심) ☞ 피고 항소에 대한 고등행정법원의 판결

b) 2018. 6. 6. 선고 3A3040/16.A VerwaltungsgerichtshofHessen – Urt. v. 06.06.2017 (독일 헤센주 고등행정법원 판례): 2016. 7. 보충적보호지위 인정(행정심판) ☞ 2016. 11. 난민지위 인정(행정소송 1심) ☞ 피고 항소에 대한 고등행정법원의 판결

c) 2018. 6. 6. 선고 3 A 403 / 18.A Verwaltungsgerichtshof Hessen – Urt. 07/26/2018 (독일 헤센주 고등행정법원 판례): 2016. 5. 보충적보호지위 인정(행정심판) ☞ 2017. 10. 11. 난민지위불인정 심판 취소소송(1심) 기각 ☞ 2018. 1. 원고 항소 ☞ 위 2심에서 원고 승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출입국/법원의 태도(시리아, 예멘)와 비판들

1) 시리아 내전에 따른 징집거부 난민 사례들에서도 법원은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 사건과 동일하게 ‘난민편람 제170절에서 제174절을 근거로 하여 징집 거부의 기초가 된 정치적 신념이 진실할 때에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서울행법 2017구단80458, 2019구단52440 판결 등)

2) ‘전가된’ 정치적 견해 법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비판한 판례 평석(최계영, ‘난민사건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

“대상판결들에서는 유엔난민기구 편람 제170절에서 제174절을 근거로 하여 징집 거부의 기초가 된 정치적 신념이 진실할 때에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편람의 위 구절이 징집 거부로 인해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완결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4년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0호□에서 군 복무에 기초한 난민신청의 문제를 다루었다.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은 유엔난민기구를 보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위 지침 제52절 인용)
즉, 신청자가 정부에 실제로 반대하지 않더라도 징집 거부를 정부가 정치적 반대의 표현으로 해석한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상판결들에서는 진실한 정치적 신념에 기초한 때에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들은 시리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예멘의 내전’과 징집거부 난민인정 사건에서 유엔난민기구가 법원에 제출한 공식의견서도 같은 입장(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관된 입장으로 패소 선언. 서울행법 2020구단17245 판결):

7. 유엔난민기구는 본 의견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 무력 분쟁 및 폭력 상황에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위협, 비국가 무장단체의 강제 모집 및 이로부터의 탈영, 그리고 위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가된 정치적 의견의 위협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겠습니다.

21. 전가된 정치적 의견의 개념은 다양한 국가의 최고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분석 및 인정된 바 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Canada(Attorney General) v. Ward 사건에서 정치적 의견은 반드시 표현될 필요가 없으며, 인식되었거나 전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정치적 의견이 신청인의 진실한 믿음에 반드시 합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박해자의 인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2. 영국 대법원도 “간주된 의견을 사유로 개인이 박해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상급 행정심판소(Upper Tribunal)는 MSM (Somalia)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판결에서 유럽연합 난민보호지침 제 10조 제 1항 제 e호의 “정치적 의견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제6조에서 언급된 잠재적 박해자 및 이들의 정책과 방식에 관한 의견, 생각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문언을 인용하며 “위 문언은 실제적 및 간주된 정치적 의견을 모두 포함한다. 두 의견 모두 보호의 대상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4)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 관련 국제법/난민법 전문가들의 견해들:

1) 옥스퍼드 대학교 Refugee Studies Centre(옥스퍼드 대학에서 창립한 전 세계 난민법 관련 모든 교수 및 학자들을 배출하는 전문연구소)의 가디언지 기고(2022. 10. 8.자):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하는 전쟁을 위해 징병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핵심이다: 첫째, 박해받을 두려움은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둘째, 두려워하는 박해는 전쟁에 대한 정치적 반대 (또는 협약에 나열된 기타 근거) 때문에 일어날 것. ... 현재 러시아에서 징집을 기피하면 최대 10년의 징역 및 기타 유형의 박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조건은 징집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 탈출하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전쟁을 지지하지 않아 징병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인 박해는 그들의 정치적 반대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즉,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한다는 의미다.”

2) UNSW 국제 난민법 센터 전문가 견해(2022. 10. 18.자): “예를 들어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이 믿지 않는 전쟁의 징병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진정한 정치적,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이 있다면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부교수 Ghezelbash가 말했다.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의 성격 또한 징병 기피자들이 난민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을 높인다. ... “병역 기피로 처벌받을 사람들은 그들이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유형의 군사 행동이 인간 행위의 기본 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비난받을 때 난민 지위를 얻습니다.”

3) 영국 Refugee Law Initiative 영국에서 두 번째로 창립된 난민법 및 강제이주 국제법 학술 전문 기관) 기고(2022. 10. 19.자):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 '무력 충돌, 특히 내전의 맥락과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정부 당국은 당사자의 더 복잡한

한 개인적 동기와 상관없이 병역거부를 정치적 반대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60). 잠재적인 박해자 측은 관련 동기를 강력히 추정한다 (§61).”

▶▶▶ 이상의 내용들은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사건(서울행법 2022구단71939 판결)에서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2023. 6. 12. 재판부에 회신한 사실조회회신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된 재판 과정에서 러시아 전쟁의 반인류/인도성, 러시아 정부가 징집거부자들을 ‘간주’하는 위험, 강제동원령이 공식 종료되지 않았고 언제든지 재개될 위험, 암암리에 계속되는 초법적 징집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참고)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인정 최초 사례로 알려진 서울행법 2023구단72397 판결은 기존 법원의 태도를 탈피한 진보적인 새 법리를 개진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본국에서 C-B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 위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정치적 의견에 따라 C-B 전쟁을 위한 징집을 거부함으로써 본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결국 항소심에서는 위 신빙성 등이 탄핵되며 패소하였음 (2025. 4. 10. 현재 상고 중)

(현실) 이러한 실무로 인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은 긴 보호 기간과 재판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소하여 본국으로 위험을 안고 돌아가거나 구금을 선택. 이러한 태도는 또 공항에서의 구금 문제로 이어짐

3. 전쟁난민/징집거부자의 출입국항 난민심사 불회부³⁾ 결정과 공항 구금의 문제

(1) 전쟁난민/징집거부자가 마주하는 난민신청 불회부의 현실

1) 출입국은 징집거부는 그대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신청인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적극적인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서의 징집거부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난민신청 대부분 불회부

2) 대표적으로 2022. 10. 이후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불회부 결정들, 2016-2017 시리아 (내전) 징집거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불회부결정 등이 있음. 그러나 단 7 일간의 심사만으로 징집거부 난민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신청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견해, 종교적 양심 등을 이유로 전쟁에 반대하고 징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그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난민심사에 회부하는 것이 적법함. 법원의 태도도 동일: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3누37591 판결)

3) "불회부"는 행정 절차에서 어떤 신청이나 안건을 정식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난민 신청의 경우,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라고 합니다. 즉, 신청자의 주장이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정식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딤돌/현재는 거의 사라진]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 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
구합13617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3%EA%B5%AC%ED%95%A913617>

[디딤돌/뒤집힘]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인정 최초 사례로 알려진 서울행법 2023구단72397 판
결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82&gubun=182>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을 짚어본 법률방송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9019>

난민의 강제송환과 구금

토론_한나현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I.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난민협약 및 한국의 난민법에서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송환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수행하나?

“항소심 2015누51448 [걸림돌] 난민신청자가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 전제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실익이 있다”

명령과 집행의 이원화: 명령은 내려졌지만 집행을 유예한다. 난민 심사 및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기” 전술.

- 난민 신청, 이의신청에서의 계속되는 불인정, 소송 패소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함
- 최근 보호소에서 난민 신청하면 2주 내로 인터뷰 잡히고 한 달 내로 심사 결정이 나올 정도로 빠른 거절을 당함.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빠르게 퇴거명령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
- 난민신청을 보호소를 통해 할 수 밖에 없는데, 보호소 바깥보다 구금자들은 여건이 제한될 뿐더러 보호소에서는 난민신청에 비협조적:
 - 보호소 환경: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인터넷 사용 시간, 핸드폰 소지 금지, 비싼 통신요금, 복사 및 팩스도 일일이 자기 전담 매니저에게 요청해야 함, 변호사 접견 및 상담이 어려움
 - 성소수자 난민이 구금자와 직원들에게 자신이 언제나 공개되어있는 보호소 거주공간에서 난민 사유 공개의 우려로 난민신청서 작성에 두려움을 가짐
 - 신청양식 지급 거부, 서류 복사 및 전달 미루기, 난민면접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 등등의 횡방 사례들
 - 보호소로부터 “난민신청은 waist of your time”, “useless” 라는 메시지

- 보호소라는 단기 구금을 목적으로 한 시설에서 난민들은 장기 구금되고, 이는 일종의 고문으로 괴롭게 만들어 출국을 선택하게 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늘어나는 폭력적인 강제퇴거집행

-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를 위헌판결 냄. 2025년 5월에 기존 법 효력 정지.
- 개정법 시행(6월 1일) 전후로 강제퇴거 집행이 급증함. 개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9개월 구

금의 예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여도 최대 20개월 이상은 구금할 수 없음. 따라서 20개월이 되는 구금자들을 보호해제하기보다 그 전에 강제퇴거집행을 하는 것.

- 그 전에는 “무기한 구금 가능성”으로 출국을 종용할 수 있었던 외국인 보호소가 이제 개정법에 따라 구금기한의 제한이 생기자, **강제송환금지 원칙 상 틈새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
- 4월 23일 경찰에 의해 폭력 진압된 강제퇴거 반대 집회의 계기가 되었던 난민신청자 V에 대한 강제송환 역시 난민 불인정 후 재신청 고려 중이었으며 보호소에 난민 재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틈새를 악용해 재빠르게 퇴거 집행 시도한 것.
- 당사자가 거부하는 퇴거집행이기 때문에 IRPT(교정시설 내 경찰)에 의해 매우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V의 경우에도 강제적인 비행기 탑승에 항공사에서 출항을 거부하여 보호소로 돌아옴. (“Against your wish?”)



*V에 대한 추방 당시 헤드기어, 수갑, 호송줄을 사용해 폭력적으로 집행했던 당시 모습을 표현한 일인 시위⁴⁾ (출처: 트랜스보더랩)

-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강제퇴거집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설된 출입국관리법 64조의 3, 4항을 보면, 이러한 강제퇴거집행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보임.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등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8.>

4) V님 관련 반인권적인 강제송환 사례와 이에 대한 항의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한 기사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7392>

**- 개정법 이후 발생한 난민신청의 딜레마: 실질적인 위협이 된 강제퇴거집행을 막을 것인가?
20개월 구금을 받아들일 것인가?**

송환을 할 수 있는가? 어디로?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위협이 있는 국가로 송환금지하는 것은 추방 자체보다 더 강력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추방을 하더라도, 난민에게 위협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여서는 안된다). 출신국이 아닌 제 3국이면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난민에게 “안전한 제 3국”이어야 함

- 입국 및 재입국 허가되어야 함
- 난민인정절차가 보장되어야 함(절차 보장에는 난민인정절차 동안 체류권과 생활보장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난민협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처우를 보장해야 함

판례 이후 정착된 “국적국 소거 방식”은 사실상 송환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면피용. 심지어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신청 한 경우 송환국 기재를 ‘국적국’에서 바꾸지 않았음.

“송환할 제 3국의 확보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지는 체류국이 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함” “송환할 국가가 없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구금된 난민들 중에, 구금만 오래 시키고 난민 인정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 제3국을 보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출입국에서 결코 “안전한 제3국”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당신의 국적으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 입국 시도해볼 수도 있다”가 최선의 협상안이었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 받은 사람의 제3국 입국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 출신국으로 송환시키고, 이 중 간혹 경유지에서 내리는 것을 묵인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출신국이나 경유지로 송환된 난민은 국경을 넘는 위험한 이주 과정을 또 거치게 된다.**

- 출입국과의 개별적인 협의로 경유지에서 내렸던 아이티 출신 난민신청자 A는 출국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난민인정이나 체류권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음. 떠돌아다니며 시간, 노력, 돈을 소진함.

난민에 대한 비호가 난민지위를 인정하나 마냐에만 있는데, 협약에 의하면 난민인정을 못해주더라도 최소한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주어 그곳에서 난민심사를 하게 하거나,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서 입국 및 체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도, 한국에서 받아줄 것도 아니면서 살 수 있는 다른 나라로 가지도 못하게 한다.

한국에 “가두어놓는” 이상한 난민제도는 인도적 체류지위가 난민지위보다 훨씬 많이 부여되고 있는 현실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인도적 체류지위는 난민인정 안되더라도 이들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충적 지위”인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오남용하고 있다. 난민인정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협약 의무 회피하기 위해 인도적 체류지위를 주어 각종 권리 보장에서

제외시킨다.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른 국가로 재이주해 난민 심사를 받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기타(G-1-6) 비자로 임시적으로 살게 된다.

강제퇴거명령의 불가피함과 그 절대성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 3개월, 1개월 매우 짧은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하고 출입국 방문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함.
- 불인정 이후에 체류기간 연장해주지 않거나, 체포 두려움으로 출입국에 가지 않아 미등록 처리 됨
- 장기화되는 심사 중에 생활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곤란으로 인해 당연하게도 취업 활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짐
- 취업을 시도하더라도 G-1비자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거부되거나, 단속 두려움으로 일시적인 일자리만을 반복함. 생계유지의 어려움은 불법적인 일 경로로 흘러가게 되는 결정적 이유.

강제퇴거명령의 절대성

- 난민신청자가 많아지면 버려지는 규범? : “2013구합13617 난민불인정 결정 후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허가기간 외에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은 행정의 확실성과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값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 >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규범적 고려를 하여 강제퇴거명령 취소한 사례가 없다.
-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보호소 밖으로 나오게 된 난민들은 출입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미등록의 지위로 살고 있다. 강제퇴거명령 자체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체류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일을 구할 때마다, 출입국에 방문할 때마다 재구금의 위협으로 불안해야 한다. ID카드도 없이, 3개월짜리 보호일시해제 연장결정서 종이 한 장으로, 당사자에 따르면, “하늘 감옥”에서 살고 있다.
- 개정법 시행으로 일정한 구금 기한이 지나면 보호해제 처리가 된다. 문제는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도, 비자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지위로 한국에 살게 될 “보호해제자”들이 새 출입국 관리 및 구금 제도를 통해 계속 생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에 있어서 '명령과 집행의 이원화'는 결국 난민심사제도와 출입국관리법의 “공조”를 의미한다. 이 체계 속에서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될 때까지 난민을 '포획'해두는 공간이다. 그리고 포획은 보호소 담당 너머로 연장된다.

II. 전쟁난민/징집거부자의 강제송환

이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는 출입국/법원: “2023구단70520판결 [걸림돌] 일반적으로 징병제 국가에서 징집 기피의 유일한 이유가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라면 이는 난민 인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징집 거부로 난민 지위 신청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구금된 난민들

- 러시아 정부에 대해 반대하며 푸틴의 정적 “나발니”를 지지한 전력이 있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보거나, 가족 친지가 우크라이나 출신이어서 전쟁을 반대하기도 함. 또한 러시아 내 소수민족으로서 송환 시 반드시 징집되고 위험한 곳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본국으로 돌아가면 전쟁을 나가거나,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

한국이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징집 거부로는 난민 인정 못해준다?

- 1) 러시아에서 징집 기피는 최대 10년의 징역 및 박해로 이어짐 2) 징집거부 난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 거부하고 있음.
- 일반적 폭력 사용 거부라는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주의적 신념) 뿐 아니라 특정 전쟁에 대한 거부 역시 난민 사유가 됨.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인식)
- **전가된 정치적 의견 역시 난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신청자가 정부에 실제로 반대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정치적 반대의 표현으로 해석” 즉, 병역거부가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간주될 수 있음.

■ “명백한 반대를 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나의 어떤 행동, 선택이 저항, 반대로 여겨진다. 정부가 나의 행동을 반정부 활동으로 “볼 것이다.”

“강제” 이주와 신념과 정체성에 따라 살겠다는 “선택”

- 이란의 히잡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난민이 “Women life freedom”이라는 타투를 몸에 새겼는데, 이를 두고 “타투를 지우고 돌아가면 되지 않냐”는 출입국의 반응.
- 출신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던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난민 심사에서 정체성으로 인해 받은 드러난 박해가 없다는 점에만 주목함. 성소수자로서 자기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삶의 궤적이나 이유,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난민 면접

한국의 외국인보호소와 난민 제도는 이들을 '포획'해두지만, 난민에게 구금의 시간은 '투쟁'이다.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과, 신념과 정체성에 따라 살기를 주장하며, 자신의 '있음'을 통해 싸운다.

한국의 난민심사는 폭력을 피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강제이주만을,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제도가 신념과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존중할 수는 없을까? 국가의 관점에서 누가 난민의 자격이 있는가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 싸우고 있는 것, 버티고 있는 자리에서 난민을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김지림 : 이종찬 변호사님께서 발제해주신 자료, 예맨의 내전 징집거부 난민인정 사건과 관련해서 유엔난민기구 사실 조회했던 사건을 <공감>에서 저와 황필규 변호사가 함께 했던 사안인데, 말씀하신대로 쪼여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들으면서 재미있었던 게,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쪼여거든요. 그동안 난민소송 진행하면서 될 것 같은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진 사안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질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는데 이 건은 예외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감하고 진행했던 사안인데 쪼여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엔 증거도 많았고 특히 당사자분이 당시 강제징집 시기에 미성자녀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판결문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종찬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 강제징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정치적 견해로서 이해가 되어야지만 난민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1심 판결문에서는 당사자가 징집 거부한 것은 정치적인 견해라고 놀랍게도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맨의 상황을 봤을 때 그전과는 다르게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그래서 당사자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을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 되어서 원고에게 설명해주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저희 사건만 진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듣다보니 징집 사건으로 난민 인정이 된 사안이 없다는 것으로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진짜 사례가 나와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분노의 코멘트를 먼저 드리며 이종찬 변호사님도 파이팅을 외치고요. 그리고 질문은 간단한 겁니다. 발제하시면서 말씀해주신 안전한 제 3국 기준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 1 기준인, 재입국허가를 그 나라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인데요. 그 부분은 오로지 난민 신청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입국을 받아주느냐 마느냐 그 얘기인 거지요? (재)입국허가는, (기존 국적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다를 것이므로) '난민신청자로서 재입국이 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이종찬 : 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신 분인 거잖아요? 그게 국가마다 여권에 도장이 찍힐 수 있고 모든 제약 조건 하에서도 재입국이 가능하고 난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재입국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개념인 것이지요.

슬 기 : 안전한 제 3국 이론을 들으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국에서 르완다에 돈을 주고 영국으로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을 르완다로 보내서 난민 신청 절차를 밟게 하고 난민 인정이 되면 거기에 머물게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근거가 바로 안전한 제3국 이론인가 생각이 들어서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제3국 이론이 영국 등에서 난민신청자를 특정 국가로 보내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하는 법의 근거가 되나 싶기도 한데, 혹시 연결될까요?

이종찬 : 앞서 질문과 두 분 모두 핵심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잘 짚어서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제 3국이 난민협약에 근거가 없는데 실무적으로 유럽에서 자리 잡으면서 유엔난민기구 기준도 나오고 유럽재판소에서 정착이 되면서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 영국을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한 제 3국에 대한 법률이 있고 안전한 제 3국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국가로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저도 이 르완다 사건이 실제로 이슈가 많이 되었고 판결문도 나왔는데요. 영국 대법원인가, 고등법원인가 판결문을 보면, 저도 전문을 다 읽은 것은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봐서 일부분만 알고 있는데요. 영국에 안전한 제3국이라는 기본적인 법률이 하나 있고요. 근간이 되는 것은 안전한 제3국이라는 이론인 것이고요. 그것 하에 르완다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르완다는 안전한 국가라고 선언한 법률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부는 그것에 근거해서 강제송환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내린 것은 안전한 제 3국이라는 이제까지 통용되는 기준들, 원래 이민법에 있었던 안전한 국가의 법리를 적용해서 르완다와 별도의 협정이 있어서 재입국 보장까지는 오케이, 즉 르완다가 난민 심사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난민신청자로서 재입국까지는 가능하나 과연 르완다에 들어가고 나서 난민 신청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결국에는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안전한 국가라고 선언했어도 결국엔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상 근거는 있고, 안전한 제3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르완다를 안전한 국가라고 정한 특별법까지 존재했으나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스터디를 하다가 못 하다가 했는데, 안전한 국가라는 기본적으로 UNHCR 기준, 이른바 4요건론에 기초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에 유럽 각 국가에서는 법률의 형태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쉽게 하려는 국가에서는 안전한 국가에 대해 리스트업하고 거기를 거쳐 왔으면 안전한 국가인 것이예요. 그래서 안전한 국가 리스트를 가지고 법률가들이 또 싸우는 상황입니다.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논쟁적이기도 하니까 그냥 개념만 세워놓고 케이스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아정 : 답변 고맙습니다. 현재 해외 사례들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난민들을 수용해왔던 독일에서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서 여권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난민들은 더 이상 받지 않은 추세로, 폴란드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를 해서 거꾸로 다시 다른 국가로 보내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르완다로 보내는 것이 안전한 제3국인 것인지, 그렇게 보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안전한 제3국이라는 이론이 안전한 이론이 맞는 것인지 다시 여러 질문들이 생기네요.

예 인 :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자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법정 싸움의 핵심은 국제법의 기준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통한 진보는 결국 비정상적으로 정의로운 판사를 통해 가능한 것인가?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번 공론장의 이름,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에서도 저는 판사의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가, 어떻게 개정되든 필연적으로 공백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질문이 좀 길어지는데요, 재판을 통한 운동의 역할과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지만요. 같은 사안을 꾸준히 소송을 통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거시적인 목표가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이 없어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인데요, 주관(외견)에 의한 난민인정이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박해 주체의 평가는 내심에 따른 것보다 더 받아들일만한 거 같고, 또 박해 주체조차도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종찬 : 두 개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운동의 방향과 관점에서 변호사는 어떤 입장인지 핵심을 간파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을 하다보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어필>은 주로 난민신청자들을 많이 만나다보니까 제도개혁이나 입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법적인 안내나 구체적인 혜택을 받는 범위가 너무 낮습니다. 국선변호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NGO 단체 등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적고 대부분 변호사나 법적인 지원이 없이 당사자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난민법 시행 이래 모든 판결문을 다 열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법원을 통해서 난민으로 승소한 케이스, 그 중에 특히 소송대리인 없이 승소한 건은 3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도 보장이 높아서 자세히 메모를 못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주소지가 피난처나 쉼터 등 활동가들의 조력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과 조력 없이는 소송 자체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고 무조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어떤 내력과 사연이 있을지라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다양한 케이스의 필요 때문에 한 분, 한 분에 지원과 조력을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속하다보면 질문자께서 해 주신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송 한 건 한 건 이기면 매우 기쁘고 좋고, 이 승소 하나로 인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인정받고 이런 것이 의미가 없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난민인정 절차가 바뀌지 않고 난민인정 승소율도 5%도 안 되지만, 특히 공항 난민 승소는 의외로 승소율이 80-90%이고 행정소송률이 이렇게 높은 승소율을 찾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난민제도는 안 바뀐다고 거지요. 왜냐하면 법률은 대개 혈겁게 되어 있고 출입국 실무 지침은 안 바뀌는 거지요. 법원에서 아무리 승소하는 상황이 많아지면 위에서 바뀌고 지침이 변하기도 할 법도 한데 법 체계와 집행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에 결국 국경관리 명분으로 함부로 들이지 않겠다는 관점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소송을 지속 반복하면서 보는 포인트인데 시작은 어떤 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도우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하다보면 결국 모든 것들을 건드리게 되고 다 하게 되더라고요. 변호사로서 소송 자체에 들이는 에너지와 시간은 물론 많지만 전체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놓고 볼 때 소송 그 자체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입법 운동이나 행정 지침을 바꾸는 운동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판결문을 보면 그것을 내린 판사의 결정으로 보이지만 그 판사 또한 주변의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결코 판사의 독단적인 결정이 내릴 수 있겠지만 3심제 안에서의 한 명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주변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판결들의 쌓인 궤적에 따라, 실무의 궤적이나 시민 활동가들의 움직임의 영향을 안 받고 독단으로 판사가 좋은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헌 결정도 3~4번의 도전 끝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재판관들의 구성이 바뀌고 성향이 바뀐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 과정 속에서 판결문도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입법으로 이어졌고요. 그런데 그 입법이 마음이 들지 않지만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사건, 그 사건의 법리와 판결들,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들과 입법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서로 연결되어 운동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관에 의한 난민 인정은 왜 안 될까? 저도 이게 대개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러시아 난민 케이스 같은 경우 직접 했으니까 저 또한 생생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증 번호가 보통은 70-80개 정도 나가는데 제 기억에 이 건에 대해서는 130개 넘게 나갔고 번역문까지 포함하면 2백 개가 넘게 나간 거지요. 판사도 서류가 많아 증거 리스트를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얘기했고 증거 설명표만 6페이지가 넘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제출했는데 법리가 일부 반영되기를 기대했던 말이지요. 징병 거부는 정치적 견해가 맞는데, 러시아 정부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판결받기를 기대했어요. 그럼 재판에서는 졌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말도 판결문에 남겨주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난민이 아닌 것 같아, 대부분 패소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종합할 때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후에 그 근거들을 열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판결문에 여러 근거들을 나열하더라도 아니라고 결정을 했더라도 어떤 부분은 남겨두는 방식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러시아 전쟁의 성격, 러시아 정부에서 징집 거부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가된 정치적 견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판단을 넘어갈 수 있고 그 단계로 가면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기엔 어렵다고 보거든요. 판사도 전체 그림 속에서 난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심증이 생기면 많은 증거를 제출해도 판단의 근거로 작동되기는 어려운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법리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심아정 : 답변 감사합니다. 예인 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예 인 : 네, 감사합니다.

심아정 : 예인 님의 고민에 공감합니다.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지더라도, 1심에서 승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여론 못지않은 압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체복무

도입 이전에 병역거부 운동을 했던 친구들에게 들었어요. 물론 2심에서 졌지만 1심의 승소를 위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도 함께 만들어낸 과정이 있다는 거지요. 하급심의 판결이 쌓여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데에 영향이 있지요. 그래서 이종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주변의 여러 움직임들이 쌓이고 조건들이 새롭게 영향이 미쳐서 변화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1심 승소를 쌓아간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가능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밀리 : 나현 활동가의 토론 중에 강제적 비행기 탑승에 항공사에서 출항을 거부한 사례가 저에게 좀 놀라웠는데요. 강제송환 중 거부하는 당사자를 폭력적으로 비행기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의사를 묻는 질문으로 출항이 거부되는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강제송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항공사 직원이 그래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고민했던 지점은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국가와 항공사의 공모로 그것을 거부당한 것이 많아서 이런 사례가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 많은지 궁금했습니다.

한나현 :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한 건 아니었지만 이 케이스는 항공사 직원이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저항이 심해서 이 분을 비행기에 태운다는 것이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공항이라는 장소가 중간 영역이잖아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고 더불어 항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적인 부분이 커서 이런 사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의미있게 생각했던 지점은, 실제로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강제되거가 이뤄지는 개정법 직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했을 때, 항공사 노조에 전화를 해서 강제되거 집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국가주권이 압도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연대하는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커지겠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심아정 : 답변 감사합니다. 슬기 님이 채팅 창에 남긴 메시지를 공유할게요. “오늘 한나현 활동가 토론 들으면서 당사자들에게 구금은 투쟁이고, 자신의 '있음'을 통해 싸운다는 말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5회 공론장이 남았습니다. 발제 및 토론 자료와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한 내용은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 님과 토론자 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안이 무거운 이슈인데 이 무거움에 압도되지 않고 함께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너스레도 떨고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농담을 하면서 버틴다고 들었습니다. 독방과 독방 사이에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감금된 와중에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 상황을 버틴다고 한 이야기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스레를 떨 힘이 아직 있다는 것, 그 힘이 있다면 무거움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앞으로 진행할 강의 내용이 태산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왔던 이야기나 질문이 다음으로 연결해가면서 함께 시간을 지내

보도록 해요.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2강**


국경에 갇힌 공항난민-관행과 불법행정을 문제화하기

사회 : 심아정(트랜스보더링랩)

발표 : 이한재 (공익법단체 두루)

토론 : 에밀리

제2강 국경에 갇힌 공항 난민
관행과 불법행정을 문제화하기(7/21) 



“A씨는 부당하게 공항에 억류돼 끼니를 거르고,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이 노숙하며, 당장 씻을 곳을 찾아 헤매야 했던 1년 2개월을 견뎠지만,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위법한 행정으로 인해 한 사람이 장기간 고통받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발표자 이한재
(공익법단체 두루)

제2강 국경에 갇힌 공항 난민
관행과 불법행정을 문제화하기(7/21) 



“공항난민은 물리적으로 공항에 도착했지만 규범적으로는 도착하지 못하는 유예상태에 놓인 ‘난민신청자’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동하는 몸’으로서 ‘공항’에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토론자 에밀리

국경에 갇힌 공항난민

발표_이한재(공익법단체 두루)

0. 들어가며

참고 영상 : 인천공항에 1년 넘게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NJAyLM18MU&t=632s>

시민들이 접근할 수도 없는 곳에 방치된 사람들. 접견도, 면회도 불가능한 곳에 구금된 사람들이 있다. 언론도, 활동가도 접근할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투쟁 끝에 현재의 결정으로(2014헌마346) 공항에 억류된 난민신청자들에게도 다른 피구금인들과 동일한 '변호인 접견권'이 인정되면서, 그나마 변호사 활동가들을 위주로 이 곳에 대한 접근과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후 10여년간 수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제도

(1) 강제송환금지원칙, '국경에서의 거부'로 해킹 당하다

'난민 보호 제도'의 핵심 원칙은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이다(난민협약 제33조). 난민과 난민신청자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51년 난민협약이 체약국(147개국)에 부과하는 핵심 의무이자, 이후 형성된 모든 국제인권협약의 모델이 된 중요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전, 즉 '비호신청자(asylum seeker)' 신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난민인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비호신청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행위, 즉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border)'는 난민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가 되고 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출발하는 국가에서부터 서류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해 난민의 출발을 막고, 국경에 벽을 세우거나, 해양경찰/해군이나 국경수비대 등이 난민이 국경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 돌려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영국 국경 수비대에 의해 발견된 난민선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한국의 실질적인 국경은 공항이다. 한국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난민은 그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그 어떤 국가보다도 난민을 ‘국경에서 거부’하기에 용이한 물리적 환경에 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난민을 잘 선별하여 틀어막기만 하면, 난민신청 제도의 진입 자체를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 난민법상 ‘출입국항의 난민신청’ 제도와 절차

난민법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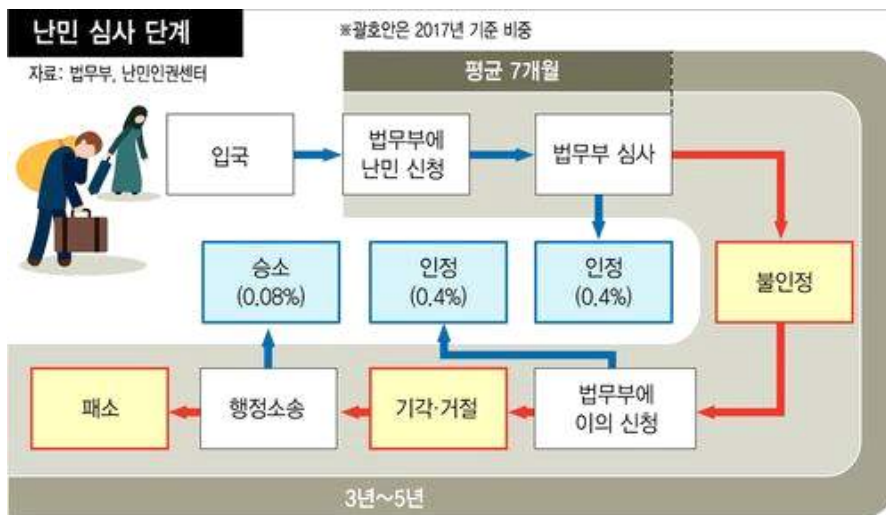
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가) 절차의 취지

- 공항에서 난민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성 심사’를 간략히 심사하는 제도.
- 7일 이내에 정해진 내용만 신속하게 예비심사하려는 취지.
- 입국 전 신속한 절차 진행하고,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남용하는 신청을 미리 방지해 심사의 효율성 제고(법원 판결 문구)



[그림 1]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 개요도



나) 절차의 순서

- 1)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난민신청
- 2) '입국재심실'로 이동하여 난민신청서 작성
- 3) '난민인정 심사 대기실'로 이동 (7일 이내)



〈그림 64〉 여성방 4호실과 5호실 사진

■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난민면접조서				
참석자	난민신청자	성명	국적	생년월일
	담당공무원	성명		
	통역인	성명	국적	
	기 타	성명	국적	생년월일
		난민신청자와의 관계		
일시	시작	2022년 10월 6일 10시 00분		
	종료	2022년 10월 6일 14시 50분		
	휴식	2022년 10월 6일 10시55분-11시05분, 11시50분-12시50분		
장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신청대기실			
사용인어	영어			
[안 내]				
<p>◆ 난민의 정의</p> <p>난민이란 전쟁,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공포를 자초할 만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국적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이 전에 거주한 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것을 꺼려서, 같은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p> <p>지금부터 [] 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기가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시작 및 장소는 2022.10.06. 10:00, 인천공항청 난민면접실입니다. ◆ 이 면담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사실만을 진술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의 진술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면담 중 진술한 내용은 모두 비밀로 유지 될 것이며, 진술한 내용을 면담 종료 후 통역인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고 신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신청자는 면담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에 대한 난민심사 면담과정을 녹음 녹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일 신청인이 면담과정 녹음 녹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난민소송에서 면접조서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녹음녹화물이 증거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주택 화재 후 이사를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당시 범인이 몇 명이었으며 협박 메시지 같은 것이 있었나요.) 저는 한밤 중에 성폭행을 당했

(성폭행 피해를 입은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나요.)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폭행 관련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한 바가 있나요.) 진술서뿐이었습니다.

(신분증에 [redacted] 민족이 기재되어 있나요.) [redacted]에 종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redacted]라는 이유로 이동에 제한이 있었다고 했는데 [redacted] 어떻게 해주었나요.) 저는 당시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은 허용이

거부할 시에는 매달 돈을 내거나,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2022 몇 월에 [redacted] 민병대가 신청인의 집으로 찾아와 신청인에게 민병대 가입을 권했나요.) 2022.3입니다. 몇 일은 기억 안 나는데, 2022.3. 초였던 것까지 생각이 납니다. (2022.3. 초 [redacted] 민병대가 신청인의 집으로 찾아와 신청인에게 민병대 가입을 어떻게 권했나요.) 그들은 와서 모든 마을 전체에 합류를 권했습니다. 모든 가족의 가장과 구역 및 마을 장과 모든 청년들에게요. (신청인은 어떻게 거절하였나요.)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redacted] 때문에, [redacted] 때문에 다같이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요. 저는 그건 군대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던 적도 없고, 평범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요. 그건 군대의 몫이라고요. 그는

4) 난민인정심사 불허부 처분 -> 송환지시서 발급

■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불허부결정번호(Non-Referral Decision No.) 2022-0037

난민인정 심사 불허부결정통지서
NOTICE ON NON-REFERRAL OF REFUGEE STATUS APPLICATION

Dear, [redacted] 귀하

1. 성명 (Name in Full) : [redacted]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 [redacted]
3. 국적 (Nationality) : [redacted]
4. 난민인정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redacted]

귀하의 난민인정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2022년 (Year) 10월 (Month) 11일 (Day)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This is to notify the decision that your refugee status application will not be referred on 2022.10.11 (yyyy/mm/dd) as your application falls under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1. 대한민국에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When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regard the applicant as a danger to the safety and publ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When the applicant's identity cannot be verified due to his or her refusal to comply with inquiries concerning personal profiles, etc.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자제 없이 자진 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When the applicant attempts to obtain refugee status by knowingly concealing fa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y submitting a false documen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f the applicant voluntarily reports such facts without delay).

4. 학대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When the applicant came from a safe country of origin or a safe third country, in which little possibility of persecution exists.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When the applicant, whose refugee application has been denied or whose refugee status has been terminated, re-applies for such status without a material change of the circumstances.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When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regard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9 of the Act as applying to the applicant.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When the applicant's basis for applying for refugee status is found to be clearly groundl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hen the application was made solely for economic reasons.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f you object to this decision, you may file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cerning the decision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notice.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Chief of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인인

발급일 (Date of Issue) 2022년 (Year) 10월 (Month) 11일 (Day)

5) 출국 대기실로 이동



6) 출국 대기실에서 '심사 불회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최소 4개월 이상 출국 대기실에 머물며 소송 진행
- 2022. 8. 부터 공항 출입국에서 출국 대기실을 운영중임(이전에는 용역)
- 인천 1터미널은 환승구역에 출입이 가능.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항은 출국대기실 자체가 완전히 닫힌 공간으로, 여전히 구금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 2014인라4결정)
- 2023. 2. 부터 '잔여 기내식 제공' 협의로 1일 2식의 기내식을 제공. 그러나 여전히 불규칙하고 사람에 비해 부족한 양으로 문제가 되기도 함.
- 의복 제공 없음. 본인의 짐도 꺼내올 수 없음.
- 따로 침대/침상 등 취침 시설이 없음.

다) 누구를 거부하는가? - '불회부처분' 대상

시행령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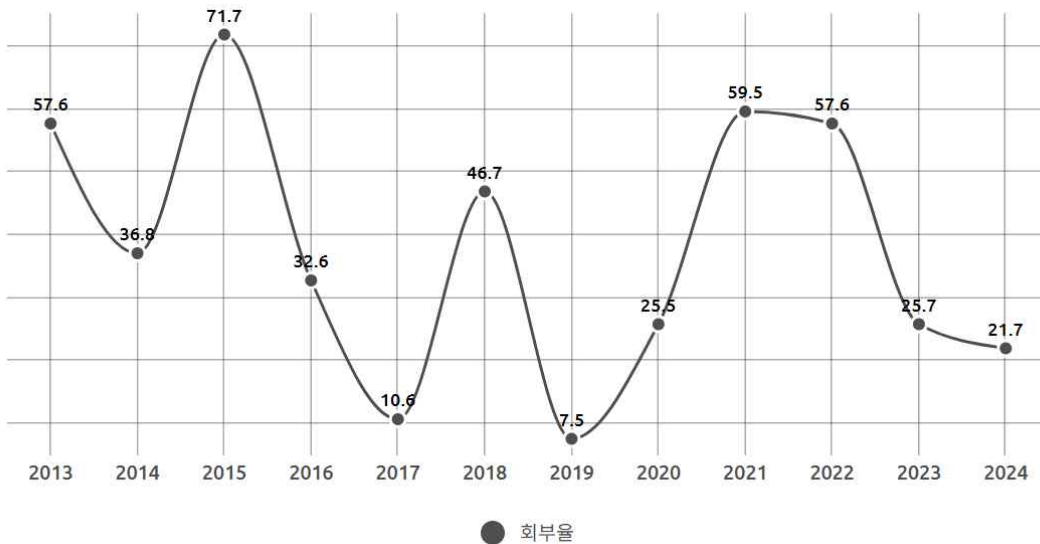
(3) 대한민국 법무부, 제도 해킹에 앞장서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항에 도착하는 난민의 약 80%에게 '심사도 해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처분을 내린다. 통계상으로도 이미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만을 걸러내기 위한 예비심사'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명백히 자의적인 기준과 절차로 운영이 되다 보니 구체적으로 누가, 왜 불회부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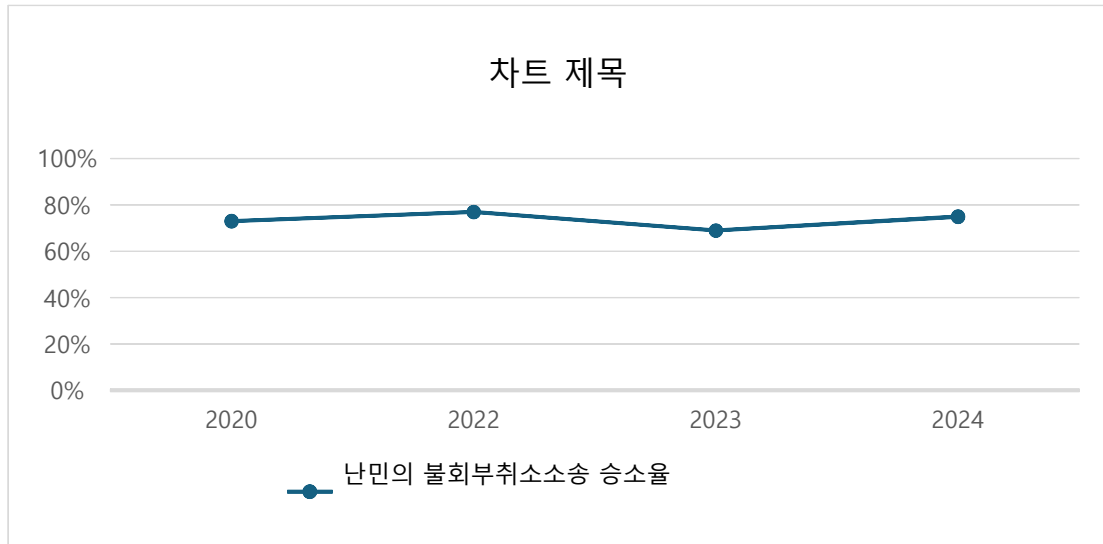
(통계 링크 참고)

[그래프13] 연도별 난민신청자 회부율 ('13~'24.12)

(단위: %)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엄밀히 말해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회부처분은 대부분 그 자체로 단순히 위법한 처분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개인의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10%정도). 그러나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공항난민의 불회부취소소송에서 난민이 승소할 확률은 70%가 넘는다. 난민이 공항에 구금되어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며, 제대로 변호사와 면담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믿을 수 없이 높은 승소율이다.



(2020년 73%, 2022년 77% 2023년 69%, 2024년 75%)

2. 제도의 변천사 - 고비마다 있었던 역사적인 판결

가. 출입국항 난민 구금 제도의 변천

출입국항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당국의 송환지시가 내려지면 이들의 송환 책임은 해당 외국인이 타고 온 교통편의 ‘운수업자’에게 송환의 책임이 있다. 즉, 공항 난민이 불회부처분 등으로 입국 길이 막히면 ‘운수업자의 송환 과정 중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2022년 8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들의 구금 등 모든 처우가 운수업자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항공사 운영 협의회의 의뢰를 받은 ‘용역 업체’에서 공항 난민들을 관리하면서 많은 비극이 만들어졌다. 법 개정으로 국가의 책임이 커졌지만, 이미 비극적으로 시작한 제도와 시설의 틀이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

(1기) ‘송환 대기실’은 2002. 2.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의 합의로 설치되었다. 2013년부터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공항 난민’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시기 송환대기실은 출입국당국과 항공사운영협의회에 의해서 공동으로 관리, 운영되었다. 출입국당국이 임차료를 부담하였으나 실제 이 공간의 관리, 운영은 항공사운영협의회가 맡았다. 이 때 송환대기실은 출입구가 철문으로 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이었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나 정상적인 침대나 침구가 없었다.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었고, 항공사운영협의회에서는 치킨버거와 콜라만 하루 2번 제공했다.

법원은 제1기 송환대기실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 없이 외국인을 구금하고 있다며, 송환대기실 내 외국인의 인신구제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송환대기실이라는 공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을 뿐 외부로의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는 수용’에 해당하며, 출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출입국 당국은 ‘송환대기실

이용신청서'에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동의서를 받는 것 이외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되었고, 여전히 구금시설로 운영되었다. 법무부는 이 때부터 송환대기실이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환송구역을 드나들 수 있어 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인터뷰를 한 모든 외국인은 빠짐없이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송환대기실 이용신청서는 그 내용조차 번역/설명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 내용도 모르고 서명을 했다.

이 시기에 시리아 난민들이 공항에 대규모, 장기간 구금을 당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잠정처분을 내렸다. 출입국 당국은 이 때 한시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음식 구입을 위한 환송구역 출입을 허가했으나, 이는 단기간 특정인에게만 이루어진 임시조치였다.

(3기) 2018년 하반기부터 장기 구금된 공항 난민들의 경우 송환대기실에 수용하는 대신 공항 환송구역에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불회부처분 취소소송을 위해 1년 넘게 환송 구역에 머문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환송구역 방치 방식 은 입국불허 외국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야기했다. 방치된 사람들은 숙식을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잠은 공항에 있는 의자나 소파에서 자야 했고 씻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 공항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다. 하루 종일 불이 켜져있는 공간에서 잠을 자다보니 불면증 등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세탁시설 없이 장기간 지내며 피부병을 호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환송구역 방치 방식 역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수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오늘의 주요 판결) 출입국당국이 환송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접수해주지 않자 신청접수 거부를 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 개월을 공항 환송구역에서 지내야했던 비호신청자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수용의 해제를 명한 것이다.

송환대기실 구금에 이어서 환송구역 방치도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수용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 맥락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2022. 8. 18.부터 시행된 현행제도가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이다.

출입국항 구금 제도의 변천사

제도 구분	기간	운영	특징	판결
제1기: 법률 근거 없는 민·관 공동 운영의 송환대기실 수용	2002년 2월 ~ 2014년 상반기	출입국당국과 항공사가 '송환대기실'을 공동으로 운영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철문으로 된 폐쇄된 공간에 구금.	인천지방법원 2014인라4 결정 (대법원 확정) :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구금이다
제2기: 송환대기실 이용신청서 작성 하의	2014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 (추정)	출입국당국과 항공사가 '송환대기실'을 공동으로 운영	법원의 위법 판단으로 '송환대기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 신청서 서명에 사	헌법재판소 2014헌마346 결정 :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외국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민·관 공동 운영			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 실질적인 운영 방식은 이전과 동일	권리가 있다.
제3기: 환승구역 방치	2018년 하반기 (추정) ~ 2022년 8월 17일	이전 송환대기실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이 이뤄지지 않음.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	공항 의자에서 잠을 자고 공중화장실에서 씻어야 하며, 식사도 제공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8. 11. 자 2020인라8 결정 : 환승구역에 머무르게 한 것도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 -> 법 개정
제4기: 국가운영 출국대기실 수용 방식 (현행)	2022년 8월 18일 ~ 현재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팀' 신설, 국가가 직접 '출국대기실'을 설치·운영	출국대기실 수용의 법적 근거가 처음 생김. 기존의 송환대기실을 그대로 출국대기실로 전환하여 시설이나 처우 측면의 개선은 미흡	

나. 진행중 과제 : 출국대기소 설치 논의

최악의 '출국대기실 장기 구금' 상황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공항 외부에 영종도 난민지원 시설과 유사한 거주시설인 '출국대기소'를 만들어 소송 진행 기간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

2022년, 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진행되었고, 정부 국정과제로 발표되기도 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흐지부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 및 정부 협의가 다시 추진 중이다.

(참고) <https://www.lawtimes.co.kr/news/183822>

3. [디딤돌] 난민신청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5348 판결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부취소등이소 (2심 승소 - 대법원 승소)

<https://www.law.go.kr/LSW/preInfoP.do?mode=0&precSeq=217029>

(1심 승소 / 인천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구합51536 판결)

<https://casenote.kr/%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5%AC%ED%95%A951536>



가. 사건의 개요와 쟁점

난민 I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 위에서 1년 2개월을 살아야 했다. I씨는 고향에서 정치적 박해로 지인과 가족들 십여 명이 살해당했다. 고향을 탈출하여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한국정부는 I씨가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했다.

그 이유는 I씨가 가지고 있는 티켓의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간 공항에서는 환승 티켓을 가지고 있거나, 입국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난민신청서의 경우 일단 접수를 하고 절차를 개시했다(이를테면, 이른바 ‘시리아 난민 사태’ 때 시리아 난민은 대부분 환승객 티켓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모두 공항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한 판단을 받아왔다. 그런데 공항 출입국은 별안간 I씨의 사안에 이르러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으므로 난민신청서를 쓸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리적으로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공항 환승구역에 있는 그를,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난민법 제5조 제1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환승객은 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상태가 아니므로 난민신청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의 소송수행자는 변론 중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일종의 ‘실험’으로 인해 한 사람이 최소한의 존엄성도 무시된 상태에서 일 년을 넘게 지냈다.

나. 법원의 판단

1)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의 정의 : 공항도 대한민국이다

출입국 당국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형식적인 출입국심사 여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공항에 미치고 그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치므로,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

에 진입한 외국인은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했다.

2) 난민법의 취지와 해석

(2)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난민법이 난민협약의 이행법률로서 성격이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난민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다.

재판부는 "난민법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난민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는 난민법이 단순히 출입국을 통제하기 위한 행정법이 아니라, 난민법이라는 주요 국제인권법의 이행을 위한 법률이라는 취지와 목적을 법 해석의 기준으로써 분명히 한 것이다.

(3)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공항 환승객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및 심사 등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중략)

심사 불회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난민법의 해석상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없다고 보게 되면, 처분청은 공항 환승객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등을 하는 대신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어서, 위 판결과 같은 법원의 사법심사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3)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실질적 보장 필요성 확인

(5)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은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이 원칙은 난민뿐만 아니라 비호신청자(asylum seeker)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난민협약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다.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방법으로도(in any matter whatsoever) 난민을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frontier)도 강제송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공항 환승객이 비호신청을 하는 이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고, 이를 국경에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결국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frontier)도 강제송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라고 판시했다. 이는 비호신청자의 입국을 거부하여 사실상 박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역시 금지된 '강제송환'의 한 형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에 도착한 비호신청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소명할 기회, 즉 난민인정절차에 접근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디딤돌] 공항에 방치하는것도 '수용'에 해당한다

인천지방법원 2021. 8. 9. 선고 2020인라8 결정 인신보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3503&gubun=44&cbub_code=000240&searchOption=&searchWord=&score_kname=

(참고 : [인신보호법](#))

인천지방법원 2021. 4. 12. 2021인카1 임시해제



가. 사건의 개요와 쟁점

공항에서의 난민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1심 소송을 승소하더라도 I씨가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실제로 위 행정소송에서 1, 2, 3심을 난민측이 모두 승소했지만 인신보호청구소송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입국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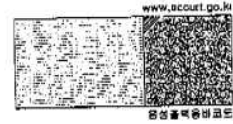
‘인신구제청구’라는 제도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수용시설에 위법하게 구금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리인단은 난민신청을 받지 않고 공항에 방치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인신구제법상의 ‘수용’에 해당한다는 모험적인 주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1심 법원은 이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는 ‘수용’이 아니라고 보아 사건을 각하해버렸다. 구체적으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사이 ‘난민신청 접수 거부’ 행정소송은 1심을 승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다. I씨는 질병이 악화되어 탈장 증세가 생겼고, 공항 안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미 1심 소송을 패소했지만 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법정 싸움을 이어나갔다.

인신보호소송 2심의 핵심은 역시 이러한 공항 방치 상태를 ‘수용’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금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가 그 다음 쟁점이었다.

나. 법원의 판단

1) I씨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임시해제 결정)



용자는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위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위 환승구역에서 사생활의 보호나 의식주와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수용자에 대하여 2020. 6. 4. 이 법원 2020구합 51536으로 '수용자의 장이 피수용자에 대하여 난민법 제6조에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수용자의 장은 위 판결에 항소하고서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신체의 위해 등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수용자의 현재의 상황과 처우, 방치된 기간 및 수용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신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공항 환승구역 내에 방치한 것도 '수용'에 해당한다.

가.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그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은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신보호법이 구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5.자 2014인마5 결정 참조).

법원은 먼저 인신보호법상 '수용'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수용'은 반드시 시설에 감금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일체의 조치를 의미한다" 고 정의했다. 이는 잠긴 문이나 철창이 없더라도,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면 이는 '수용'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1씨의 상황을 분석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환승구역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난민신청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이는 청구인에게 기대하기 어려

운 것" 이라고 지적했다. 즉,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청구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환승구역에 머무를 것을 사실상 강제당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 고 명확히 판시했다.

들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항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난민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강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다,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항고인이 난민신청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환승구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수용자 또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결정은 결국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림들] 위법한 구금,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가단5141012 판결
손해배상 청구의 소 (1심 패소 - 2심 2025. 7. 24. 선고 예정)

가.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미 1씨가 1, 2, 3심을 모두 승소하여 공항출입국이 '위법한 난민신청 접수 거부'를 했음을 인정받은 뒤에 시작된 소송이다. 그는 대한민국 출입국 공무원의 위법한 난민신청 접수 거부와 불법적인 수용으로 인해 2020년 2월 18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총 420일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되었다.

그는 두 번의 재판을 통해 국가 행위의 위법성을 사법적으로 모두 인정받았다. 첫째, 그의 난민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둘째, 공항 환승구역에 그를 방치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수용이라는 인신보호 구제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두 번의 승소는 그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를 공항이라는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러나 420일이라는 시간 동안 겪었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그대로 남았다. 이에 1씨는 국가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가의 잘못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믿음에 기반한 소송이었다.

나. 법원의 판단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선행 소송들에서 행정청의 부작위와 수용 조치가 위법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진행 중).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이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당시 난민법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난민법 제6조 제1항 중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라는 것은 난민인정신청의 전제 조건 내지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환승객은 입국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규정의 문언만을 보았을 때 환승객에도 난민인정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해석되지는 않는다" 라고 판시했다. 즉, 법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환승객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명백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일선 공무원에게 국내법을 넘어 국제 협약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은 우리나라의 여건 및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제정된 국내법인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접수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지, 난민협약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담당공무원에게 난민법을 넘어서 난민협약에서 규정하고 원칙까지 고려하거나 참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명백히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해 420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낳았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남기는 판결이다.

관행과 불법행정을 문제화하기

토론_에밀리

1. 도착에 대해서 생각하기

‘공항난민’은 (물리적으로) 공항에 도착했지만 (규범적으로)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 갇히는 ‘난민신청자’라고 정의해 본다. ‘공항’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의 교차적 나눔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2013년 4월 동료들과 해외에 나갔다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한국 국적자인 동료들의 ‘도착’은 (강제로) ‘입국’으로 이어갔고 나의 ‘도착’은 (강제로) ‘출국대기실’로 이어졌다. 내가 입국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료들은 입국을 거부하여 입국장에 갇혔고, 나는 출국을 거부하여 출국대기실에 갇혔다. 함께 ‘물리적인 도착’을 했으나 나는 입국을 거부당해서 ‘규범적인 도착’을 못한 상태에 머물러야 했고, 유예상태에 있는 나와 함께 하려는 동료들은 공무원에게 규범적인 도착(입국)을 강요받았다. 물리적인 도착과 규범적인 도착 사이에 유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함께 있으려고 해도 머물 수 없는 것은 모두 공항에 그어진 국경에 갇히는 일이다. 당시 공항이라는 장소는 비국민에게는 물리적인 구금공간과 규범으로 만든 도착 미완료라는 가상공간에 복합적으로 갇히는 일이라면, 국민에게는 연대와 관계 맺음이 허락되지 않은 공간으로 감각되었다. 그때 나와 동료들에게 국경은 공항이라는 공간이 아닌, 어떤 행위로 경험되었다. 물리적인 도착과 규범적인 도착의 격차를 만들어낸 그 행위가 바로 공항(출입국향)에 그어진 국경이다. (사실, 공항은 국경선에 위치해 있지도 않다.) 그렇게 국경은 지도에서 그려져 있는 ‘선’이 아닌, 사람의 ‘행위’로서, 누군가의 ‘몸에 구현된 규범’이란 것을 감각하게 되었다.

난민신청을 해 본 적은 없지만, 공항에서 물리적인 도착과 규범적인 도착 사이에 갇혀본 경험 때문인지, 그 후에는 공항이라는 공간에서 나도 모르게 화를 자주 냈고, 항공사 직원과 종종 싸우기도 했다. 한 가지의 기억을 나눠보겠다.

7, 8여 년 전인가 가족을 방문하려고 유아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부산에서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 편도 티켓만 구입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대만 여권소지자인 나는 탑승이 가능하나, 한국 여권소지자인 아이는 대만에서 떠날 티켓을 보여주지 않으면 체크인 불가능하다고 했다. 내가 “아이의 엄마는 나인데, 아이만 대만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묻자, 항공사 직원이 대만에서 떠날 항공권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에 도착하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거라고 설명했다. 나는 대만에 가서 입국거부를 당해도 좋으니까 알아서 하겠다고, 가는 티켓을 샀으니 그냥 타고 가겠다고, 대만에서 떠날 항공권을 이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 이 결정 더 마음이 든다고 말하면서 내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것은 대만 정부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분노로 인해 흥분했다.

내가 입국을 거부당해도 좋다는데, 님들이 뭔데 도착해서 입국을 거부당할 선택권을 미리 막는 것이냐고 물었다. 내가 이 자리에 비행기를 못 타면 그 자체로 이미 입국이 거부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입국거부를 당할 거라면 거기 가서 당하겠다고, 존재로서의 항의라도 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 여정의 결말을 우리가 정하지 않았는데, 대만 정부가 뭔데 내 동반자의 떠남을 미리 정하려 하고 난리야. 누가 알아, 도착한 자가 결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님들이 뭔데 미리 없애버리는 것이냐 말이다.

하지만 항공사 직원 중 아무도 이런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공항에 배웅하러 나온 동생과 동생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몸을 벌벌 떨면서 진상 고객이 되고 말았다. 무엇이 부당한지 깨닫고 있는 중이었다. 동생이 한참 조용히 지켜만 보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아이의 대만 여권을 그냥 보여주자고 했다. 항공사 직원은 기뻐했지만 나는 힘이 빠졌다. 대만 여권 보여주면 될 일인지 누가 몰라서 안 했나?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위화감을 겪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것이다.

‘입국’은 입국심사의 통과를 의미하는 ‘규범적인 도착’이다. 그렇게 제도는 ‘물리적인 도착’을 ‘입국’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입국이라는 사실은 항공기의 착륙으로 즉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는 왜 물리적인 도착조차 못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대만의 주권을 대만 안에서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대만 밖(부산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들 통해서 행사되는 것이냐고, 대만으로 가는 하늘도 다 대만 거냐고, 항공사 직원은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국가와 이런 식으로 공조해도 되냐고 언제나 묻고 싶었다. 적어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싶었다.

도착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을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도착하지 못하게 된다. 도착하기 위해 도착할 곳을 떠날 티켓까지 미리 사거나, 도착하기 위해 목적지를 환승지처럼 하여 실제 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항공권을 사거나 해야 한다. 국가 주권이 정하게 한 것과 개인이 정한 것, 개인이 정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생겨나는 것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권력 행사의 정당성부터 살펴봐야 한다. 주권의 절대성을 의심치 않고 모든 조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권력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비판하지 않는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소용없는 항의를 하고 분노와 창피함에 벌벌 떨면서, 나는 아이의 대만 여권을 내놓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족들의 표정을 보면서, 나는 존엄을 훼손당한 채 아이와 출국장에 들어갔다. 출발(도착)할 권리의 사용이 아닌, 그냥 ‘여권의 권력’(여권 파워)으로 이동했다.

2. 도착할 권리에 대한 침해는 선제적인 추방이다

예멘사건을 통해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외 국가 리스트가 존재해 온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예멘도 제외 국가 리스트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멘국적자가 제주에 찾아와서 난민신청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무사증 입국 불허’는 이들에게 사실상 출발선에서 미리 막는 ‘선제적 입국거부’로 감각했다. 입국할 권리(규범적으로 도착할 권리) 이전에 이미 (물리적으로) 도착할 권리조차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증 없이 항공기 탑승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물리적으로 도착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난민신청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입국을 못할 거면 굳이 왜 도착을 하려고 하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절실한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도착이라도 할 수 있어야 입국거부를 당하더라도 공항에 그어진 국경에도 간혀보고 소송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다. 도착할 권리,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권리조차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일은 가능성과 계기조차 없애버리는 구조이며, 모두의 미래를 훔치는 일에 다름없다. 이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은가?

난민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강제추방 금지의 원칙'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물리적인) 도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선제적인 추방'이기 때문에 난민의 '물리적으로 도착할 권리'를 '미리 배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선제적인 추방'은 강제추방 금지원칙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으려는 행위라고 문제제기 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는 도착할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웹사이트에서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 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연계하여 출발지 외국 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국제테러범,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승객의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밑에 나와 있는 법무부의 설명 그림에서 '선량한 승객만 탑승권 발권'이라는 말이 나온다. 난민 신청하는 행위 자체를 국익에 대한 훼손이라고 간주하는 법무부가, 72%의 높은 비율로 공항에 도착한 난민을 가짜난민으로 낙인찍고 있는데, 법무부의 눈에 난민 신청을 할 사람이 과연 '선량한' 승객으로 보일까? 심사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적이라고 생각된 것은 심사에 도입 가능한 (+검증 불가능한) 형평성 없는 가치체계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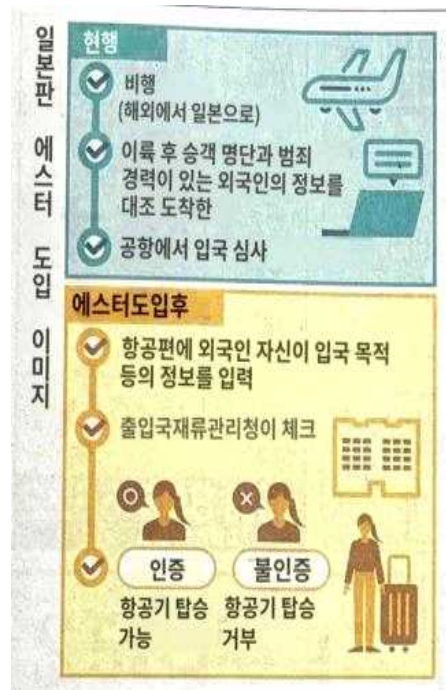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국제테러범,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이라고 한 자들은 누구인가. 이러한 명사들은 나에게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언어로 다가오지 않는다. 사회에 출현할 권리를 마구 제한해도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러한 명사들에 어떤 존재들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기

준을 설정할 권력이 국가에게 있기에 명사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 가짜 여권을 쓸 수밖에 없는 난민신청자가 외국인보호소에 억울하게 구금당한 이야기를 떠오르면서 분실 여권 소지자는 난민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느 선까지 국제테러범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빨갱이라고만 하여 다 잡아 넣을 수 있던 시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국제테러범,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과 같은 명사들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검증 가능한 기준을 알려줘야 한다.

사전 확인제도를 통해 출발선에서 ‘선제적 추방’을 함으로써 강제추방금지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전 확인 제도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다 확인하지 못했으나 미국, 일본에도 도입되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다.) 그 외에 인공지능 정보사회에서 법무부와 항공사의 이러한 연계는 이동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도 한다. 국제활동가들에게는 언제 찍혔는지 모르는 본인의 사진을 들고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몇 시간의 심문을 받는 일이 때때로 일어난다. 입국규제자였다가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받았을 때, 화면을 보다가 나를 쳐다보다가 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눈빛이 불쾌했다. 출입국심사에도 비국민을 상대로 허락된 정보의 수집영역, 기한 그리고 심사의 영역 등에 대해 알 방법과 점검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나에 대해서 무엇을 심사했는지, 나의 정보인데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 권력이 왜 국가에게 있는지 모르겠다. 출입국심사관이 심사할 때 보는 그 화면은 내 개인정보이니까 당연히 나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오랫동안 하고 싶었다. 나에 대해 뭐라고 써져 있는지도 모르고, 정보 정정 혹은 삭제 요청도 할 수 없으니, 출입국심사대는 자기결정권이 완벽히 상실된 자리처럼 느껴진다. 국가가 개인의 허락 없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 모욕적이지 않은 이동을 꿈꾸고 싶다.



출처:김설해 facebook

3.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국경에 갇히는 것은 ‘관계의 진공상태’에 놓인다는 것이기도 하다. 입국을 거부당했을 때, 인천공항 대기실에서 먹었던 밥은 대한민국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비행기의 항공사 직원이 사 왔던 것이었다. 나에게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나를 여기에 데려다준 항공사에게 지게 한 것이다. 아직은 그 항공사와 이동해야 할 몸으로 간주되고, 도착하면 안 된다는 국가의 메시지를 항공사가 전하고 있는 식으로 책임의 체계가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에게 ‘입국불허통지서’가, 항공사에게는 ‘송환지시서’가 전달된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는 나를 송환할 의무를 국가가 항공사에게 전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댄던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을 말한다)과 책임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항공사에게 전가한 책임을 통해 규범적인 도착을 하기 전에 아직 비행 중인 가상의 시간으로 몰린 느낌이 들어서 항공사 직원이 사 온 치킨버거는 마치 기내식처럼 느껴졌다.(채식을 요청했지만 계속 치킨버거를 사 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러한 책임 전가의 구조를 통해 비국민과의 관계없음을 도모하려 한다. 내가 갇혀있던 곳은 감옥이 아니라 관계의 진공상태였다. 감옥에서는 밥이 나오고 면회도 할 수 있는 반면, 관계의 진공상태에서는 국가가 밥을 주지 않고 신청에 의한 면회도 가능하지 않다. 관계없음을 선포하기 위해 만든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연대해 주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고, 당장 국경을 뚫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국경이란 관계의 진공상태는 그대로 두고 ‘감옥’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출국대기실에는 걸어가지 않고 끌려가는 것을 선택했고, 비행기 타러 가는 길은 걸어가는 것으로 선택했다. 면회를 할 수 있는 대만이라는 감옥으로, 내 발로, 강제‘추방’되었다. 대만뿐만 아니라 넓은 지구가 내게는 면회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감옥일 뿐이었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나를 만나고 싶어했던 사람은 한국에서 출국할 때마다 병무청의 허락을 구해야 했고, 언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병역거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에 놓인 나에게 국경은 복합적이었고 공통된 ‘국익에 대한 위해’라는 사유로 이어져있었다. 국익에 해를 끼칠지도 모르니 자유로운 출국이 허락되지 않는 몸과 없애야 할 몸 (국가에 입국하면 안 될 몸) 사이에 국경의 구조는 ‘분단’의 성격을 갖는다. (정상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난) 가족결합권을 해치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체계적이고, 누군가에게 짧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상황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준) 영구적인 분단체제였다. ‘분단’이라는 단어는 관계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가 겪은 분단은 관계없음의 원칙으로 펼쳐진 구조와 인식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출국대기실에 끌려가기 전에 출입국 공무원이 나의 동료들에게 ‘가족’도 아닌데 왜 같이 있으려고 하냐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

그래서인지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나에게 대한 입국거부는 2013년 4월 24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 달도 안 된 5월 22일에 해제되었다. 나와 함께 입국거부 대상이 되었다가 해제된 37명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 소통의 대상이

아닌 관계의 진공상태는 일상이었음을 다시 알아차렸다.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았다면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입국거부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모두 모르고 있다가 일본(?) 활동가가 입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입국을 시도해 보았다. 나의 입국소식을 듣게 된 어느 국회의원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입국 금지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기에 정확한 입국거부 해제 날짜를 알게 되었다. (나는 정확히 2012년 5월 29일부터 2013년 5월 22일 사이에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것을 2014년 1월에 국회의원을 통해 알았다.) 소통의 대상이 아님으로 나는 입국거부가 풀렸는데도 계속 가상의 입국거부 속에서 살았고 5년을 초과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몇 년을 더 살 줄 알았다. 나에게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다른 활동가들의 입국 소식을 알지 못했다면, 정확한 기한에 대한 감각이 없는 배제와 방임상태에 계속 놓여 있었을 것이다. 입국을 전제로 입국장에 갇힌 것과 출국을 전제로 출국장에서 갇힌 것은 ‘분단’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해제됐는데 아무런 알림이 없다고 상상해 보라. 황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4.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기

입국을 거부당했을 때, 동행했던 한국 국적의 동료가 (강제입국을 당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과 접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접견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때 출입국공무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전에 앞서 외국인들한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겠습니까? 한국에 입국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의 조력은 본국에 돌아가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공무원은 확신을 가지고 비국민에게 입국할 자유가 없다고 알려주면서, ‘헌법에서 그렇게 나와있다’고까지 말했다. 비국민에게 입국할 자유가 어떠한 이유로 빼앗긴 혹은 제한받은 상태라는 설명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런 자유는 없다고 확신하는 태도였다.

비국민에게 입국할 자유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믿음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비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오로지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고, 그런 자유를 빼앗긴 혹은 제한받은 상태라는 인식이라도 한다면 토론할 여지가 생기고 개선할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의 설정에 애로가/어려움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원천적으로 입국할 자유가 없다는 확신은 신앙도 아닐 테지만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비국민들은 상상력이 경직된 채 그러한 확신으로 구현된 국경에 이미 갇혀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국민도 입국할 자유가 있으나 사회가 아직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해결 방법은 비국민의 입국할 자유의 영구적 삭제가 아니라 사회의 점진적 변화에 달려있다는 것이 자명해질 것이다.

5. 입국할 권리에 대한 남은 질문들

‘자국민 수인의무’와 ‘외국인 수인거절권’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 인정하는 각 국가의 고유 권리이자 보편적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모든 사람의 입국할 권리를 국적국에 한정했고, 국적국에서 떠나 어디를 가더라도 주권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주권의 구조에서 난민의 비호 신청권을 예외로 두는 식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나, 나는 난민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호 신청권은 국경에 갇혔던 나를 구제할 수 없었다. 기존의 난민신청제도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다 보니 ‘입국할 권리’를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입국할 권리는 마음대로 이동할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다. 이동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 관계가 핵심이다. 떠나온 곳에 관계를 그대로 남겨두고 도망쳐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사회 진출의 기회와 기존의 생활동반자와 관계를 이어갈 기회(가족결합권)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과 관계를 맺어온 사람에게 분리/분단을 겪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가 바로 입국권이다.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으로 주권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이는 검증 가능해야 한다. 잘못되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해야 하고 수정 가능해야 한다.

심아정 : 지난 시간에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 모임 마중의 한나연 활동가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거부로 반인권적인 강제 송환이 중단된 사례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또 정반대의 사례를 에밀리 활동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손을 들어 발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먼저 말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한재 변호사님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출입국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에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꼭 집어서 가해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사람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면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밀리 활동가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공항 출입국 환승 구역에 미치는 것을 판결로 인정받았다고 했을 때 그 주권이 행사되는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비국민이나 난민 신청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권 국가의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전에 질문해 주셨던 분들이 세 분 계신데요.

사이다: 입국 '심사'해서 걸려진 부적격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내버려두기'방식을 취하는 게 다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국과 항공사의 공모로 이동의 자유를 가진 한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여찌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시키는 게 규제를 강화시키는 힘인 듯해요. 지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권력의 다른 힘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도와 규제로 통제 가능한 것은 명확하게 권력을 행사하겠지만, 애매하고 경계에 서 있거나 법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바로 공권력의 또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틈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과연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 항공사 직원 또한 시민으로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실제로 난민신청에 대한 안내라든지 공항에 구금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 함께 해결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난민신청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선례를 공유한다든가 인식과 절차를 바꿀 수 있는 등등

이한재 : 네, 뭐 대단한 답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판결문의 국가 배상을 부정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잘 몰랐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판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은 특히 국내 난민법의 최고 전문가라고 봐야 되고요. 가장 잘 알면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라든지 그 분들이 뭘 잘 몰라서 아무렇게나 했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한 예

로, 그 분들이 직접 그 소송할 때 법정에 나와서 직접 변론을 하셨는데 노골적이었어요. 국제적으로 논의가 있지만 국경에서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은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국가 안보를 위해 거부하는 새로운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일을 수행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을 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듯 해요. 이게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국경 통제 방식을 만들 것인가 혈안이거든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공항을 통해 출입하는데 그래서 통제하기 더 쉬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롭고 기발한 방법을 짜내는 외국과 달리 더 느슨한 편이기도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다르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버려두기를 통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런 일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최대한 모호하게 하려는 흐름이 출입국에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깨고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처분 때문에 공항 난민이 생기게 된 거야 하고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현재까지의 일련의 노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명확하지 않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버려 두고자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것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인지 이런 일이 왜 발생했고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를 최대한 모호하게 하려고 하는 흐름이 계속 출입국항에 강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깨고 자꾸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야 국가의 처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좁혀가는 노력을 해오는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슬기 : 갑자기 제 노트북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지금 휴대폰으로 연결해가지고 화면은 보이지 않은 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전에 사이다의 질문과 좀 연결되기도 한 것 같은데요. 공항 난민 문제와 에밀 리가 공항에서 겪은 사건들을 보면서 국경 통제라는 국가 주권의 행사가 어떻게 위임되고 하청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통해 국경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공항이라는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들어오게 하고 내쫓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에게 위임되고 그리고 이들은 이 힘에 기대서 굉장히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힘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또 이들은 이것을 항공사를 통해 관리와 통제를 하는 하청을 맡겨서 직원들이 알아서 누구를 비행기에 태울지 말지를 결정 권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항공사는 교통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인데 이 교묘하게 설계된 제도들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행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조가 작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과 더불어 얼마 전에 있었던 외국인 유학생 강제 추방 사건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국가가 외국인 유학생을 통제할 의무와 책임을 대학에 부여하고 대학은 용역을 통해서 이들을 관리하고 법무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법무부 또는 국가는 손대지 않고 이들을 쫓아내는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국경 통제는 특히 외국의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런 국경 통제와 관리가 국가 주권의 어떤 고유한 어떤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의 행사는 연쇄적인 하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구조와 시스템에 문제 제기를 국가 권력을 향해서 직접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과연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나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아정 : 채팅 창을 통해 이수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방 전의 이슬기님과 연관된 질문을 이어서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듯합니다.

이수연 : 저 또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저는 현재 대학원 생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제재하고 있는 국내법이나 국제법은 없는 건지, 국경 관리의 외주화가 위법은 아닌지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이한재 : 우선 국경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난민 교과서나 난민법 강의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에밀리님과 슬기님께서 얘기하신 게 모두 다 포함돼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국경의 확장이라 함은 원래는 물리적인 미국이나 멕시코 사이에 있는 국경처럼 어떤 국경선이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짐을 맡길 때 벌어지는 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벌어지는 일, 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국경의 확장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특히 해외에서의 비자 발급이라든지 항공사를 통한 출입국 관리 등 민간업체 아니면 민간 개인들이 이미 실제적으로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경 에이전트라고 하면 당연히 공무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청과 재하청의 구조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구조의 확장이 쉬워지고 있어서 원래 책임을 져야 하는 단위가 숨겨져 있거나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위에서 정한 지침이나 지시를 받아 역할을 하는 직원일 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안내하고 거부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큰 맥락에서 어떻게 하는 일인지 잘 모르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경의 확장이 외주화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용인하고 있는지 굉장히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에서 안내할 때 이렇게 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할 순 없잖아요. 반대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국가의 책임이 아닌 것이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문제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전에 국가가 국경을 통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던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문제 제기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실 한국보다 더 교묘하게 진화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서 국제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경 관리를 물리적 장벽을 세워서 통제하는 관리도 이미 사설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애초에 출입국 공무원이 할 일을 전부 사설 업체가 수행하고 관리 감독만 출입국이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 중단하게 할 것인가? 혹은 실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 것인가?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원청이 책임져라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국가 주권의 행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아정 : 에밀리 님의 토론 내용 중 나왔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답이 되었을 듯합니다. 난민 신청자들을 데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국경 통제가 외주화되고 민영화된 상태에서 이 난민신청을 매개로 시장이 많이 생기고 에스코트 서비스라고 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구금하고 추방하는 것까지 민영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인도법이나 제네바 협정을 비롯한 그런 국제인도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니까 그 민간 업체들이 그 구멍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상비군까지 있어서 그 규모도 크고요. 그럼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에밀리 님께서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해서 헌법 제 6조와 관련하여 채팅 창에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얘기해주시겠어요?

에밀리 : 하나의 판결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은 우리나라의 여건 및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제정된 국내법인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접수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지, 난민협약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담당공무원에게 난민법을 넘어서 난민협약에서 규정하고 원칙까지 고려하거나 참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위헌이라는 싸움을 할 수 없을까요? 헌법 제 6조5는 그렇게 힘이 없나요?

이한재 : 네, 그 헌법 소송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소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주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선고 예정인 2심 재판부에서도 난민 협약에 대해서, 한국에서 난민 협약을 시행해 온 관행과 이에 대한 해석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당연히 이렇게 해석되어야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사건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은 해봐야 알 것 같고 이후를 열어가 봐야 하지 않을까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심아정 : 네, 그래도 뭔가 싸워내고 있다는 소식이라서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채팅 창에 주원 님께서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셨는데 직접 얘기해주시겠어요?

5)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주원 : 앞선 질문들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공유해주신 디딤돌 판결문의 내적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제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건, 출입국 및 이동을 통치하는 모든 권한과 권위가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권’이라는 틀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맥락에서 떠오르는 사례로, 올해 초 있었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있는데요. 토론회 중 “개정안 반대, 나아가 구금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법체류자 추방”을 주장하는 쪽도, 결국엔 다들 법무부를 향해 말했거든요.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인데도, 모두가 법무부에 호소하고 있던 그 장면이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토론회 이후 해당 장면을 곱씹어볼수록, 이러한 구도 자체에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현재의 구도에서는 법무부가 마치 이 문제의 최종심급(주권)인 것처럼 놓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면서 ‘법무부의 윤리적 주체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려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통해 법이나 제도, 정책이 ‘개선’될 때, 그것이 도리어 법무부의 ‘선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까봐 걱정스럽거든요. 질문 드릴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를 들면 법무부가 강조하는 ‘인권친화적 보호소’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겠지요. 이 고민을 앞으로도 함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와 여러 가지 비판들을 운동으로 만들어냈음에도 결국에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그냥 법무부가 윤리적인 어떤 주체가 되어 버리는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도 않으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되기는 하지만 그냥 결국에 이 논리 속에서는 다시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가 윤리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면서 스스로를 어떤 선한 주체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이한재 : 제가 잘 이해한 게 아닐 수도 있는 듯 하지만 대충 느낀 바대로 그냥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국제인권법이나 난민법이나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다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어쨌든 대체로 국가에 한정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국제인권법 중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지만 특히 공항의 국경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아까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국가의 주권을 확장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는 거기에 주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로서는 국경을 확장하면서 주권을 넓게 투자하되 그것은 전부 다 주권의 행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국가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론자의 대만 현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든지 탑승을 거부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였어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에 사람을 밀어 넣고 굶어 죽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국가는 그것은 주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갇혔을 뿐이고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나가야 될 사람인데 말을 안 들어서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국가 주권이 미치는 것이고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판단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디딤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없었던 어떤 국가 주권을 확장시켜준 판결이라거나 그런 것을 향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국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항

공사의 잘못이라든지 등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막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아정 : 채팅 창에 두 분이 질문과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직접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비 : 저는 지금 난민 관련한 인턴을 하고 있는 이한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 찾아보다 출국대기실의 관리, 운영 책임은 국가에 이관되었지만, 외국인 송환의 책임은 여전히 항공사운영위원회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민법 5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는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항공기 좌석 확보를 위해 민간항공사에 의해 1-2일 내에 송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출입국항 난민신청은 “난민인정결정”이 아닌 회부심사 여부와 관련된 것이 때문에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2조에 정의된 난민신청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가요?

이한재 : 네, 굉장히 복잡하고 법적인 질문인데요. 질문해 주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불회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불회부 처분을 받고 나면 더 이상 난민 신청자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회부 전 난민 신청자가 대기실에 7일 동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도 난민 신청자가 아니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난민 신청자는 공항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되는 것 같은데, 지적 해주신 대로 대체로 국제법이나 심지어 국내법의 해석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인지 아닌지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었어요. 강제 퇴거를 하면 안 되는 게 가장 핵심 효과잖아요. 난민 신청자가 되면 강제 퇴거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관행상으로 출국 거부를 한다고 했을 때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일반 행정소송과 똑같이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그래서 강제 퇴거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90일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을 머무르게 해주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난민 신청자인지 아닌지가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이미 법무부도 공항에 있는 사람이 다 난민 신청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법정에서 다투기엔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전문가들이나 고위급에서는 난민 신청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아정 :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제 퇴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발령되는 것은 OK, 그런데 집행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강제 퇴거 명령 그니까 추방이죠. 추방 명령의 발령과 집행 사이에 어떤 틈새를 뚫고 구금이라는 상황이 발생했던 그런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 틈새가 너무나 힘들었던 틈새인데요. 오늘도 이 법이 실제로 어떤 관행을 통해서 집행되고 구현되고 있는가,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틈새에 끼어드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비 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오늘 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김솔비 : 안녕하세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여기 와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작년부터 난민인권

활동가가 꿈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지난 첫 번째 돌돌돌 강의에 처음 참여하면서 판례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하고 모른다는 사실에 부끄러웠고 알아듣기 어려워 엄청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민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후 진로를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들었다고 오늘은 그전에 비해 점점 무슨 말인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주 열심히 들으면서 더 많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아정 :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의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아도 되나요? 너무 감사하고요. 개근 개근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모두 짹짹! 그런데 사실은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에 대해 판례들을 소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분석도 해 주셨지만 이게 디딤돌 판결로 인정이 됐고 그 취지와 의의를 알겠지만 나한테 여전히 애매한 돌이거나 걸림돌인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고 오늘 다 나누지 못한 의견도 이메일로 추가로 소통해주면 수렴을 해서 자료집을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박수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야심한 밤에 모두에게 박수를 치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요.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3강**



1%의 가능성을 붙잡고 : 성소수자 난민재판

사회 : 심아정(트랜스보더링랩)

발표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 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제3강
1%의 가능성을 붙잡고-성소수자 난민재판(7/28)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공감)

2023년 3월 기준 유엔가입국 중 60개국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범죄화하고 있다. 그중 6개국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항이 명문화된 공식적 박해 뿐 아니라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성소수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

100명 중 1명이 난민으로 간신히 인정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로서 난민 인정을 받기란 얼마나 어려울까? 관련 판례들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제3강
1%의 가능성을 붙잡고-성소수자 난민재판(7/28)




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 퀴어팔레스타인연대QK48)


해방 팔레스타인에서는 퀴어가 자신이 사랑하는 정든 땅에서 저마다의 방식대로 욕망하고 관계 맺을 것입니다. 자기한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바다에 몸을 던지고 원하는 대로 헤엄칠 것입니다. 더욱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사회를 변혁할 것입니다. 정말 드론이 날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를 가능하고, 팔레스타인 땅의 어디든 가고, 잃었던 고향을 되찾아 오랜 그리움을 달래며 꿈길 곳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도착하는 난민과 동료 시민으로 같이 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합니다. 동시에 세상 어느 누구도 난민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퀴어 동료들과 더불어 팔레스타인 퀴어 운동의 호소를 성실히 듣고 제대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2025/6/11 팔레스타인 해방을 염원하는 선언대 기자회견)

성소수자 난민재판 돌돌돌

발표_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는 오늘 성소수자 난민과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소수자 난민 관련해서 준비해 온 발제문을 보시면 걸림돌도 있고 애매한 돌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은 어디인가 찾아보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판결문들은 좀 딱딱합니다. 그 판결문 속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난민 네트워크 활동을 하거나 공감을 통해 당사자를 만날 때 그게 참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명의 난민 신청자인 유세프, 물론 가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세프라는 사람의 난민 신청 과정을 간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방식은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여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집트
- 동성애: 이슬람에 반하는 이단적 행위 → 풍기문란죄 (최대 10년 이하 징역)
- 2017년 당시 이집트 국회 동성애자 처벌 법안 검토 (외교부 자료)
- 어렸을 때부터 성적 지향 확고, 가족에게 발각, 자신의 성적 지향이 밝혀져 가족들이 폭행 피해
- → 한국으로 피신, 난민신청

이집트 국적의 유세프

□ 이집트 국회, 동성애자 처벌에 관한 법안 검토 예정(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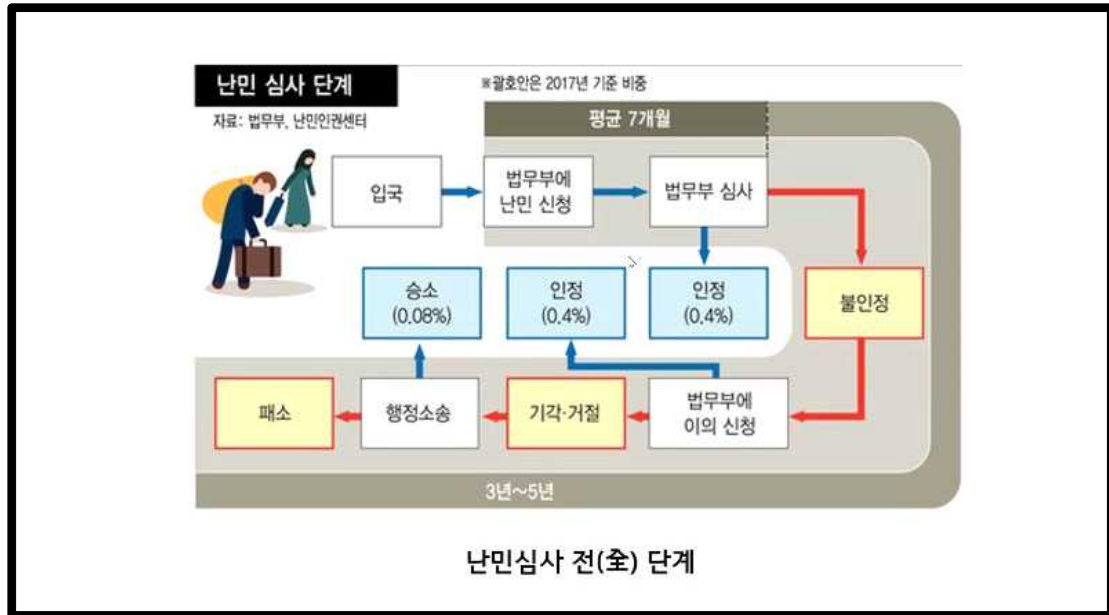
○ Rayad Abdel Sattar 이집트 국회의원은 10.24(화) 동성애자 및 관련자, 언론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 Sattar 의원은 동 법안은 △ 동성애자가 사적, 공공 장소에서 동성행위 적발시 1~3년 징역형, △ 반박된 혐의로 기소시 최대 5년형, △ 동성애에 관련된 지지자들에 3년이하 징역, △ 동성애관련 언론의 보도시 관계자 3년이하 징역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집트 국적의 유세프이고 제가 직접 만나서 대리했던 분이구요. 이름만 다르게 표기했을 뿐 여러 가지 사실 관계는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누군가를 상상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라는 것이 이슬람에 반하는 이단적 행위라고 규정이 됩니다. 동성애로 형벌에 처하는 나라, 사형에 처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집트는 동성애로 형벌에 처한다는 구체적인 법은 없으나 풍기문란죄라는 것으로 엮어서 동성애자들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집트 국회에서 풍기문란죄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동성애자 처벌 법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그 법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공식발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세프님은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자로서 성적 지향이 꽤나 확고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스스로의 성적 지향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가족에게 발각되어서 여러 번 좀 곤

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성적 지향이 나중에 외부로 밝혀져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본인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폭행 피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입혀지고 그 다음에는 본인 차례겠구나, 두려움을 안고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고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난민 심사 단계는 입국한 다음에 두 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의 트랙을 두 단계로 밟는 건데 제일 먼저 법무부를 거쳐야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법무부 심사를 통해서 불인정이 되면 법무부에 이의 신청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있는 행정 소송 1심 2심 3심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무부와 법원 단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데요. 유세프 님은 이 중에서 먼저 법무부 난민 신청 단계를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챗gpt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놀랍게도 챗gpt에 난민 신청자와 난민 조사관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나이가 있는 남성 난민 조사관과 피부색이 굉장히 검은 난민 신청자를 계속 해서 그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최대한 고친 이제 부분인데 실제 법무부 단계에서의 난민 심사 면접이 이런 방에서 아주 조그마한 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유리막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유리막을 딱히 없애지는 않더라고요. 그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컴퓨터로 조사관님이 계속 이렇게 치면서 질문을 하시고요. 여기에는 난민 신청자분이 남성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세프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앉아서 난민 조사관과 질의응답을 하고요. 유세프의 옆에 이제 통역인이 앉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이 작은 방에 지금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점에 멀리 이렇게 혼자 앉으면 됩니다. 사실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 동성애자로서 박해를 주장하는 난민을 면접하는 심사관의 질문

- 신청인은 여자처럼 화장을 하거나 코르셋처럼 여성이 착용하는 의복을 입는 행위를 한 적 있나요?
- 신청인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적 있나요?
- 처음 성관계한 상대는 이성인가요?
- 처음 성관계를 가진 상대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 신청인은 먼저 상대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나요?
- 성관계시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신청인의 생각은?
- 신청인이 동성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 신청인은 한국에 입국한 후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 있나요?
- 한국의 유명한 게이바 이름을 알고 있나요?
- 한국의 게이들은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지 알고 있나요?
- 본국이나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유세프 님이 난민 심사 면접에서 받은 질문들은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동성애자로서 박해를 주장하는 난민을 면접하는 심사관의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신청인은 여자처럼 화장을 하거나 코르셋처럼 여성이 착용하는 의복을 입는 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신청인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나요? 처음 성관계한 상대방은 이성인가요? 성관계 시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신청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있나요? 한국의 유명한 게이바 이름을 알고 있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다 싶은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여러 면접 조서 중에서 취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놀랍게도 모두 유세프 님의 면접에서 나온 질문들입니다. 어때세요? 이 중에서 이제 유세프 님의 면접에서 나오지 않은 거 두 개가 이 색깔 검은색이고요. 그 외에는 모두 유세프 님 면접에서 나왔었는데요. 실제 면접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성애자로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인데 여자처럼 화장을 하거나 코르셋 같은 의복 입는 행위를 하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 성전환 수술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성관계 시 어떤 역할을 하는 거 등등 사실 좀 문

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이게 왜 하나하나 잘못됐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제가 그 발제문에 뒤에 넣어놓은 참고 자료들을 보면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질문들이 왜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세프 님에게 한번 감정 이입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질문들을 받은 요세프 님은 법무부 단계에서 그래서 열심히 대답하셨겠죠. 당연히 이때는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을 하신 거예요. 난민 조사관도 유세프 님도 도대체 이 질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한 채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제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했고요. 아까 봤던 그 절차에 따라서 이의 신청하셨지만 역시 이의 신청도 기각되고 난민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난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봤던 이 부분입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법원의 판사가 이분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판사님이 이분 얼굴을 보고 실제 어떤 내가 지금 판결을 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만약에 당사자 신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까지 있다면 사건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웬만해서는 그냥 진술서나 변호사를 통한 서면으로 내세요라고 하고 당사자 심문을 잘 받아주지 않는데요. 유세프 님은 1심에서 졌고 2심에서 당사자 신문 기회를 얻으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를 또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법원에서도 판사님이 앞에 앉아 있고 유세프 님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원고 대리인 이제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고요 또 오른쪽에 피고가 있습니다.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 신청 안 해 준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로서 법무부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신문의 경우에는 아무리 대리인이 있더라도 원고인 난민 신청자가 제대로 이야기를 알아들어 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인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당사자 심문이 진행되는데요. 원고가 원고 대리인이니까 난민 신청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난민 신청자에게 유리한 질문들을 잘 구성해서 판사님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원고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원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언제 깨달았나요? 라는 질문을 했나 봐요. 이것에 대한 답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면요. 실제 당사자 신문 과정이 녹음된 내용입니다.

실제 당사자신문과정을 녹음한 내용	원편 신문과정을 직역한 내용
<p>통역인 : When you became aware of .. this.. like.. a. this part of your self.</p>	<p>통역인 : 당신은.. 언제...음.. 이런.. 자신의 이런 면모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p>
<p>원고 : When exactly? I can't understand that question. Nononono, you mean, first relation with A ?</p>	<p>원고 : 정확한 시기요?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는 데요. 아니아니아니. A와 처음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p>
<p>통역인 : Yeah, yeah. first relation with A.</p>	<p>통역인 : 네네. A와의 첫 경험 말이에요.</p>
<p>원고 : With A? It was between ,, when I was *-* years.</p>	<p>원고 : A랑? 그건.. 제가 *살에서 *살 정도 되었을 때 이었습니다.</p>
<p>통역인 : *-* years? from now? How long ago?</p>	<p>통역인 : 지금으로부터 *년에서 *년 전을 말하는 것인가요? 얼마 전을 말하는 거죠?</p>
<p>원고 : I mean, when I was * to * years old.</p>	<p>원고 : 제 말은, 제가 *살에서 *살 사이이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p>

변호사로부터 “언제 성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았나요?” 라는 질문을 듣고 통역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이러한 부분, 자신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나요?” 라고 물으니깐 원고가 당황하죠. “뭐, 정확한 시기요?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그 첫 경험을 했다고 하는 그 a랑 처음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라고 되물습니다. 그랬더니 통역인이 “네. a랑 첫 경험한 거 말이에요”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당사자분이 “a랑 그 경험한 거는 제가 몇 살에서 몇 살 정도 되는 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질문이랑 좀 아니 많이 다르죠. “성정체성에 대해서 언제 깨달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건데요. 갑자기 한참 얘기했던 누구 a라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a와의 첫 경험에 대한 답이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통역인 분이 “본인이 몇 살 몇 살 때부터 이런 걸 느꼈다네요” 라고 통역을 해버리셨어요. 차라리 “본인이 몇 살 몇 살 때부터 a랑 첫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라고 이 내용 그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처럼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 이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라고 심플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사자 신문 조서에 판사님이 보시는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해서 원고는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라는 것만 보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법무부가 상대방 법무부가 이 당사자 신문조서에 근거해서 의견서를 또 내겠죠.



조서 기재내용
<p>문: 원고의 위와 같은 본인의 성정체성에 대하여 언제 깨닫게 되었나요.</p> <p>답: *~*세 때부터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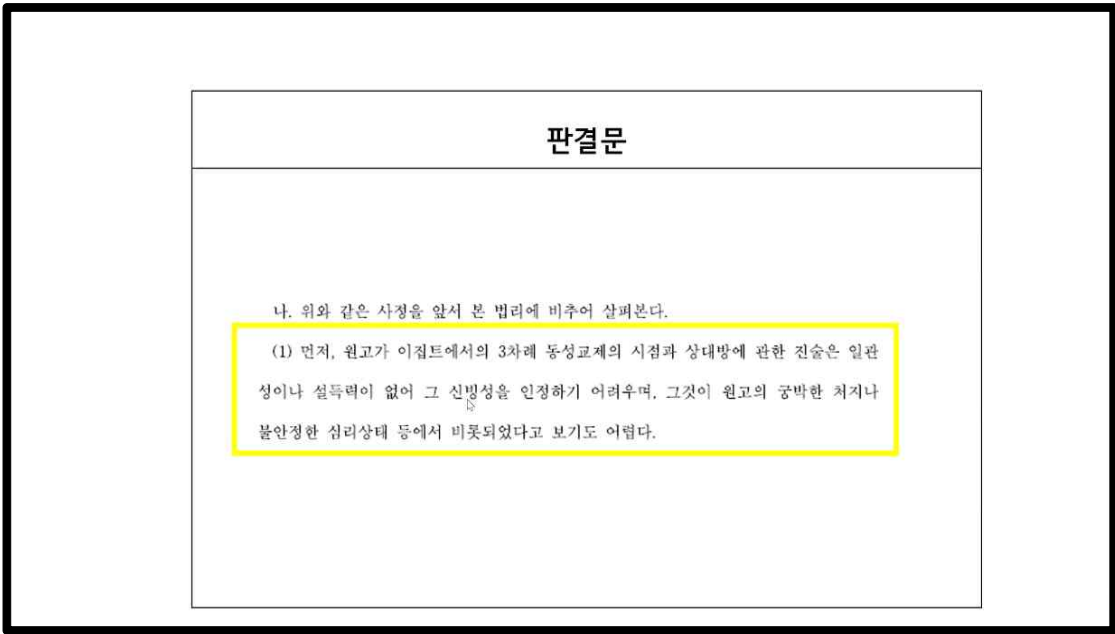
지금 보면 원고는 성 정체성을 알게 된 시기 그리고 a든지 b든지 성관계를 가진 시기 등에 대해서 난민 면접할 때랑 당사자 본인 심문할 때랑 계속 다르게 진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이야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법무부도 이 조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하면서 의견서를 내는 거죠.

법무부 (상대방) 의견서

2) 이 사건 원고 진술의 신빙성

2016. 11. 14.자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성정체성을 알게 된 시기, 성관계를 가진 시기 등에 관하여 난민면접 당시와 당사자본인신문 당시 각각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본인신문 녹취서를 볼 때, 원고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성정체성을 알게 된 시기 및 성관계를 가진 시기 등은 난민신청신청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원고가 이집트에서 이제 세 차례 동성 교제한 시점이나 상대방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이나 설득력이 없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원고의 공박한 처지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답답하시나요? 제가 너무 답답너 같이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답답하시라고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성소수자 난민뿐만 아니라 사실 난민 신청을 대리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답답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래도 영어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듣고 이거 뭐야 잘못된 거라고 알았지만 지금은 러시아어나 아랍어 등등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대리를 하다 보면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답답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발제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의 가능성을 붙잡고 : 성소수자 난민재판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유엔 가입국 중 60개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범죄화하고 있고, 이 중 6개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⁶⁾ 이처럼 전 세계에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명문화되어 공식적으로 성소수자를 박해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성소수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출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

난민 주관부처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난민인정률이 1.75%라고 한

6) ILGA(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World Database, 2023, ILGA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전 세계 160개국 1900개 이상 단체의 국제적 연합, ILGA WORLD는 매년 전 세계 성소수자 처벌 혹은 보호 법적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https://database.ilga.org/en>

다.7) 100명 중 1명이 난민으로 간신히 인정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로서 난민 인정을 받기란 얼마나 어려울까? 성소수자 난민 관련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본다.

1. 성소수자도 난민으로 인정되나요?

유엔 195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박해 사유로 정하고 있다. 모든 난민이 반드시 하나의 사유에 의해서만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다섯 가지 박해사유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중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서 인정된다.

옥야카르타 제23원칙은 아래와 같이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박해를 피해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언하였으며, 유엔난민기구는 2012년 난민 지위에 관해 발표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이하 ‘유엔난민기구 지침’이라 함)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박해를 포함하여, 어떤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고문, 박해,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해당 국가로 이주, 추방, 인도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의 경우 모두 ‘특별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① 성적 지향에 근거한 난민인정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특정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인 특성, 바꿀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박해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에서 보

7) 난민인권센터, 법무부정보공개청구 결과, 2024. 12. 31. 기준. <https://nancen.org/416311>

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 판결⁸⁾

원고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선천적 특징 및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하여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또한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국적국 정부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서, 난민법의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결림돌 대법원 2016두56080 판결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대법원의 2016두56080 사건이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① 출신국에서 이미 성적지향이 공개되고 ② 공개된 성적지향으로 인해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출신국 귀환 시 박해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제적 해석 및 판단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다른 사건의 1심, 2심, 대법원에서 인용되고 재확인되며 현재 확고한 기준으로 확립되었다.’

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은폐

8) 당사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수 기재되어 있어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원심이 인정한 xx국의 객관적 정황에 의하면 동성애자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성적지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동성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xx국에서 2011. 경 동성간 교제관계를 끝냈고 그 후 2014.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약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동성애 교제를 하거나 동성애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동성애로 인한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xx국정부나 xx당 등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대법원에 따르면, 출신국의 객관적 정황상 동성애자임이 밝혀질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성적지향을 숨김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자가 성적지향을 숨겨왔고, 장래에도 숨김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이 해외 판례와 유엔난민기구 지침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리이다.

은폐는 성적지향 지향이나 성적체성, 그리고 그 표현과 같은 개인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억압을 요구한다. 은폐는 강요된 것이다. 사실 은폐는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상응하는 전형적인 반응이며, 실상 그 자체로서 신청자의 공포가 충분히 근거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⁹⁾

성소수자가 스스로의 성적지향 또는 성적체성을 숨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혼과 출산과 같은 이성애적 사회 관념에 순응하지 않는 점으로 인하여 노출되어, 관련된 위해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기대 행동과 활동의 부재는 그들과 타인간의 차이를 확인하게 하고 위해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인이 미래에도 성공적으로 은폐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¹⁰⁾

특정사회집단의 특성을 이루는 성적지향은 인간 존엄성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은폐하고 살아갈 것을 요구받아서 안 되며, 더불어 그러한 은폐의 가부나 지속여부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은폐경험과 미래 은폐가부를 기준으로 박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특정사회집단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난민협약의 보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9) '성적지향 및 성적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 실무자 가이드', 2016. 2.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제86면

10) 대법원 2016두56080 사건에 대한 의견서, 2018. 2. 유엔난민기구, 제10내지11면, 제13내지14면

② 과거 박해 경험

난민협약 해석 상 개인의 박해가능성은 당사자가 출신국으로 송환되는 경우(미래)에 직면하게 될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과거에 성적지향을 공개하여 그로 인해 박해를 받은 경험’을 성소수자 난민인정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문제된다.

모든 성소수자 신청인들이 과거에 박해를 경험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박해를 당한 과거의 경험이 난민지위의 전제조건은 아니며...¹¹⁾

난민의 정의는 1951년 협약의 의미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공포”이라는 말은 과거에 반드시 박해가 발생했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제난민보호는 그 본질상 예방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신청인은 발각되어 박해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에 난민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¹²⁾

해당 걸림돌 판결에서, 대법원은 동성애자로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 뒤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3. 애매한돌 서울고등법원 2018누30022 판결

안타깝게도 위 2016두56080 판결은 깨지지 않은 채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재인용되며 성소수자난민인정의 확고한 기준이 되었다. 아래에서는 법원에서 기존 대법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판단 하에 난민으로 인정된 우간다 양성애자 사건 관련 판결을 소개한다.

① 긍정적인 부분 - 성소수자난민의 진술불일치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30022 판결

원고의 진술내용이 그 세부사항에서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 중략... 난민 면접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원고가 당한 폭행 등의 피해사실과 이로 인하여 젊은 여성인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처음 방문한 낯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난민면접 상황, 난민면접 당시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지위에 놓인 원고가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심리상태에서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나 여성 연인과의 성관계 경험, 성폭행 피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우간다 사이의 언어감각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진술내용

11)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신청’, 2012. 10. 유엔난민기구, 18항

12) 대법원 2016두56080 사건에 대한 의견서, 2018. 2. 유엔난민기구, 제10내지11면, 제13내지14면

의 불일치가 난민면접 당시의 통역상의 오류나 심리적 위축에 기한 것이라거나 당시 성폭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원고가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구금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이나 폭행 또는 성폭행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고 폭행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있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주민들의 협박과 경찰의 체포, 폭력 등의 박해를 겪다가 난민신청을 하기에 이른 젊은 여성인 원고가 낯선 국가에서 궁박한 심리상태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하면서 '경찰에서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추상적으로 진술한 데 그치고 경찰에 체포된 후 겪은 폭력 또는 성폭력의 상세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제1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비로소 경찰의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진술이 허위·과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성소수자난민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모순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당 판결은 특히 젊은 여성/성소수자였던 난민신청자의 심리상태를 섬세하게 고려하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② '애매한 돌'인 이유

해당 서울고등법원판결은 위에서 살펴 본 걸림돌판결에서 제시한 '① 출신국에서 이미 성적지향이 공개되고 ② 공개된 성적지향으로 인해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실제 해당 서울고등법원의 사안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았다'라는 과거 박해 경험이 원고의 진술뿐만 아니라 지역의회 소환장, 보석허가증 등 구체적인 공식 문서 증거로서 뒷받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적인 판단기준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높였다는 차원에서 애매한 돌 판결이라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트랜스 젠더에 대한 난민인정'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누*****) 역시 트랜스 젠더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례로, 역시 기존 대법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판단 하에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현재 법무부 단계, 법원 단계에서 (성소수자 난민인정 소식은 거의 없지만) 인정되는 케이스는 성소수자라는 사실로 인해 구체적인 박해경험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다.

4. 그 외 걸림돌/애매한 돌들

① 걸림돌 - ‘동성애 금지법이 있기는 하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많은 1심 법원이, 원고의 국적국에 반동성애적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해당 국적국이 반동성애적 법률을 폐지하는 시도를 하고 있거나, 그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도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박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¹³⁾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법률의 존재 자체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불관용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비정부행위자들에 의한 협박의 빌미 제공 혹은 국가에 대한 구제 요청의 장애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원고의 국적국에 반동성애적 법률이 폐지되거나 혹은 폐지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전 사회의 분위기가 일시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국적국에 대한 최신 정보를 통해 각 사례에 대한 정황 분석을 해야 한다.

동성애 관계를 금지하는 형사법이 일관성 없이 시행되거나, 드물게 혹은 실제로는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형사법의 존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인 사람들에게 박해에 준하는 견딜 수 없는 난관이 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동성애 관계를 금지하는 것은 불관용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낳고, 동성애 관계로 인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한 법의 존재는 정부기관이나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협박과 갈취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¹⁴⁾

② 걸림돌 - 대안적 국내피신 제안

법원은 동성애자로서 박해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성적지향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마을’로, 그리고 동성애자로 오인되어 박해받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동성애자로 오인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마을’로 이주하면 된다는 전제(대안적 피신 논리)하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¹⁵⁾

13) 서울행정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구단2963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단2939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구단15973 판결

- XX의 반동성애법은 XX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고 우간다에서 동성애 행위로 형법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 게다가 XX의 현 정부는 반동성애법을 폐지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XX로 돌아가면 또다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14)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신청’, 2012. 10. 유엔난민기구, ‘동성애금지법’

15) 서울행정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구단2963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8구단3830 판결 등

-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를 위협하는 주체는 마을사람들이므로 XX 내의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대안적 국내피신’이라는 개념은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의 우려가 없으며 사안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정착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국내의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인정 시 국내피신이 고려되어야 할 경우, 특정 지역을 명시하고 신청인이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¹⁶⁾

성소수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정서는 전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대안적 국내 피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주 후에 신청인이 안전을 위해 본인의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다시) 숨겨야 한다면 대안적 국내 피신이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¹⁷⁾

③ 애매한 돌 -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이 일관되면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동성애적 관계의 경험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메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한 1심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완화된 판단근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판단근거는 완화하면서도 결국 해당 사건의 난민신청은 불허하였으므로 애매한 돌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7구단8173판결

난민인정 신청인의 성정체성에 관한 주장은 성질상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진술에 일관성, 설득력이 있고, 그러한 진술에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중략...

..... 성소수자난민 관련 ‘디딤돌’ 판결은 언제..?

보인다.
- 원고로서는 원고가 동성애임을 아는 자를 피해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16)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4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국내 피신 또는 대안적 재배치’, 2003. 7., 유엔난민기구, 제6항

17)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신청’, 2012. 10. 유엔난민기구, 제53 내지54항

[참고]

(걸림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애매한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30022 판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1편 안내책자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2편 ‘성소수자난민심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신청’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 실무자 가이드

공감-외국법자문사협회,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

김지림,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의 이해, 인권연구

최계영,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의 비판적 검토, 행정판례연구

1%의 가능성을 붙잡고

토론_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 대법원 최초 판결(2017. 07. 11. 선고 2016두56080)¹⁸⁾의 그림자

국내 성소수자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 사건 판례들을 최계영¹⁹⁾, 이주은²⁰⁾, 김지림²¹⁾ 등이 비판적으로 분석한 이후 동일 명칭의 청구 사건이 적잖이 축적되었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 공개포털 웹사이트²²⁾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메뉴를 통하여 열람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사건번호나 키워드로 사건을 검색하고 요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열람은 건별 유료 구매로 가능하다.

경향 파악을 위하여 서울행정법원 최근 3년(220727-250727) 판례 가운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건을 추리고 “성적지향”이나 “동성애자”를 키워드로 범위를 좁혀본다. (성소수자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을 망라하여 검토하려면 검색 대상 법원을 확대하고 하위 키워드 역시 성적지향 성정체성 성별정체성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으로 다각화하여 더욱 살살이 뒤져보아야 하나 그와 같은 작업은 오늘 토론의 범위를 벗어나고 당장의 토론자 역량 바깥이다.) 이때 결과 목록은 각 판결문의 “주문”을 미리보기로 노출한다. 상황은 참담하다. 성소수자와 무관한 (극소수) 사건을 제외하면 그 내용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난민심사 과정을 거쳐 받은 난민지위 불인정 결정이 위법하지 않아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으로, 달리 말해, 해당 난민신청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출입국 판단에 법원이 동의한다는 판결이다.

대중없는 발췌에 가까워 보이는 요약내용을 하나씩 확인한다. 앞서 언급한 성소수자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 사건 판례 분석 논문 세 건이 공히 지적하는 문제의 대법원 판결(2016두56080)이 불인정 사유를 정당화 하는 논리로 (여전히) 거듭 인용되고 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난민법 2조 1호가 정의하는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을 만든

18) 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6%EB%91%9056080>

19) 최계영,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의 비판적 검토” (행정판례연구 22.2, pp. 351-388, 201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2309455>

20) 이주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현황 및 문제점: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8호, pp. 279-328, 2018)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270>

21) 김지림,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의 이해” (인권연구2.1, pp.35-69, 201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2679035>

22) 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

는 요소로 인정하면서도, 성적 지향을 공개하여 그로 인해 박해를 받은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향후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을 통하여 박해를 피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은폐를 강제하는 억압 자체를 박해의 상황으로 고려하기를 거절하였고, 원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 증거 자료마저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 진술 자체를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난민지위를 불인정하는 논리로 대법원이 판시한 근거는 이후 오늘날까지 만 8년간 성소수자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의 거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해 왔다. 이는 과거의 박해 경험은 향후 박해 받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가늠하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난민협약 해석 원칙에 전면 어긋난다. 성소수자에 대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부당한 사회적 제약” 쪽으로 ‘축소’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박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대립시킨다. 개별 성소수자가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경험했거나 경험할 차별과 폭력과 박해의 수위에 대한 자의적 재단이다. 성소수자가 저마다 느낄 법한 공포의 강도와 종류를 당사자의 실감과 무관하게 정리하는 폭력적인 규격화이다. 성소수자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²³⁾는 실제적 분석의 배경을 다루는 IV-A-12 항목에서 “어떤 성소수자 신청인이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신청인이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두었다.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에 의하여 차별과 폭력과 처벌을

23)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 신청” (HCR/GIP/12/09)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and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영문 개정판 2019년 2월, 최신 한글판 23년 4월) <https://www.refworld.org/policy/legalguidance/unhcr/2019/en/123881> (메뉴에서 한국어판 골라서 내려받기 가능)

*번역의 문제: sozi(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번역어 각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판은 3장 용어 8항에서 “a different gender or the same gender or more than one gender”를 “이성이나 동성 혹은 양성 모두에게”로 번역하는데 이는 둘 이상의 성별 존재 가능성을 지시하는 원문의 의도와 다르게 성별 자체를 이분법에 가두는 번역이라 곤란하다. 또한 “the sex assigned at birth”를 “타고난 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출생 시 부여받은 성(별), 또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등으로 옮겨주어야 정확한 번역이다. “sex-reassignment surgery성전환 수술”의 경우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PATH,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의 현행 «트랜스젠더-성별다양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건강관리 실무표준 제8판»을 참고하여 담론과 실천의 장에서 관련 용어와 번역어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주석 등에 반영하여 한국어판 텍스트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영어: <https://wpath.org/publications/soc8/> -> open access 배너 클릭, 한국어 번역본: <https://wpath.org/publications/soc8/translation/> -> 한국어 번역 페이지 배너 클릭 (7판 sex reassignment surgery 성전환수술 -> 8판 gender affirming/affirmation care, treatment, hormone, surgery 성별확정수술 (용어에 대한 논의 pp. 288-290)). 25항 sex work는 성노동으로 번역해야 맞다 (현재 “성매매”로 되어 있다).

당할 가능성에 따라 자신의 지향과 정체성을 숨기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에 근거한 표현이나 원하는 상대와의 교제 관계 형성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단체 활동 참여 등을 삼가야 했다면,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노골적인 차별 폭력 처벌 등의 박해는 가까스로 피하였을지라도 애초에 삼가야만 하도록 강제된 폭압적 상황 그 자체를 이미 박해로 겪고 마는 것에 다른 아님을 인정하는 지침이다. 동 지침 IV-B[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31[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의 은폐] 항목은 “성소수자들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도 지적한다.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긴 채 생활하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 온 난민신청자의 경험을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지 않은 대상 대법원 판결은 이같은 해석 지침을 제대로 참조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2012년 간행된 유엔난민기구 지침을 2017년 판결 주체가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책임 방기이다.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증명 책임은 난민신청자 당사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게 지우면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지침조차 판결에 적용할 줄 모르는/적용하지 않는 이중적 책임 방기는 이후 하급심의 책임 방기를 조장하는(정당화하는) 악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나큰 걸림돌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최근 3년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 기각 건의 요약내용에서 불인정 근거로 언급되는 사항을 다시 한 데 간추리면 대략 이렇다. 개별 사안이 특정되지 않도록 공통 요소를 합치거나 섞어서 정리한다. (몇몇 사건은 전문 열람하여 사건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가족 지인 등 비국가 행위자(사인)에 의한 박해이므로 국적국 국가 기관에/사법 제도에 보호/구제를 요청할 일이다. → 비국가 행위자의 박해는 국적국 사회 전반적인 혐오와 차별의 환경 속에서 조장되고는 한다. 국적국 사회 전반적인 혐오와 차별의 환경은 차별금지의 제도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제재 없이 기승을 부리기 쉽다.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국가의 박해를 분리하여 접근하기보다 국가 기관이 실질적으로 보호 조치 구제 조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난민신청자 당사자의 개별 사정에 근거하여 엄밀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기존 불인정/기각 이후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의미있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지 않았다). + 불인정 결정 이후 국적국 사정 변동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 1심 판결에 이 두 가지 판단이 공존한다는 점은 난민인정과 관련한 국내 재판부의 접근이야말로 일관된 기준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신청자 원고에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입체적 역동적 삶의 궤적과 기억의 오작동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그토록 자기 서사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거듭 패소하고 재신청 했다는 점에서(체류자격 만료 임박하여 신청했다는 점에서)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난민제도 남용이 의심된다 → 제도 남용 혐의를 씌우는 것은 난민을 범죄화 하는 대표적 프레임이다. 패소 후 재신청을 거듭했다는 사실은 달리 해석하면 당사자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체류자격 만료에 임박하여서야 비로소 난민신청을 하게 되는 배경-이유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난민신청을 하도록 하는 사정의 발생이나 난민신

성과 관련한 정보의 취득이 반드시 체류자격 만료 한참 전이기를 요구하는 (현행 난민법 제8조 5항 3호) 조건은 삶의 모든 사안이 언제나 예상-예비 가능하다는 비현실적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부당하기 이를 데 없다.

성소수자로 오인되어 박해 받은 것이라면 국적국으로 돌아가 본인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라 → 이미 박해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야 미래에 박해 받을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 다분한 대한민국 법원이 오인된 정체성으로 박해 받은 사실은 향후에도 박해 받을 공포에 대한 근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인으로 인한 박해라고 해서 결코 그 정도가 덜 심각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애초에 자신을 성소수자로 오인한 자들의 오해를 풀려면 오인한 자들이 오인에 이르게 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자신의 특성을 지우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에 준하는 억압으로 그 자체를 박해로 해석하여야 마땅하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피해자더러 자신의 가해자를 상대로 당신이 나를 가해하도록 한 이유를 내가 더는 제공하지 않겠으니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설득하도록 권할 수 있는가. 이는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책임을 묻는 접근에 다름 아니다.

성소수자 정체성이 공개된 바 없어/정체성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박해 (할 수 있는) 주체로부터 주목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박해 위험도 없다고 보인다. → 은폐를 강제당하는 상황 자체를 박해로 해석할 필요에 대해 위에서 언급하였다. 성소수자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는 32항에서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신청인이 출신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가 아니다. 신청인이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지금까지 피해를 입지 않고 살 수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평생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들 자신의 행동을 조심한다고 해서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연에 의해서든 소문이나 의심에 의해서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동성에 처벌법 존재하나 위헌 판결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에 의하여 박해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역시 성소수자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를 보자. 37항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성에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이 폐지되거나 다른 긍정적 조치들이 취해진다 하더라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즉시 혹은 가까운 미래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 혹은 성소수자 단체 및 관련행사의 존재와 같은 특정 요소가 있다고 해서 신청인의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태도가 법과 일치하지 않고 편견이 굳게 자리 잡아 당국이 보호적인 법을 집행하지 않을 위험이 계속 존재할 수 있다. 법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특정 사례마다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박해의 공포를 지닌 가운데서도 국적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적국 내의 (대안적) 피신을 통해 박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인다 → 트랜스젠더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성소수자 난민인정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²⁴⁾은 원고의 출신국 입출국 궤적을 난민인정 결격 사유로 보지 않았다.

24) 서울고등법원 2022누31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법률신문 판결 요지

(이성의 상대와) 결혼하고 이혼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성적지향 자기 인식에 대한 설명이나 그로 인하여 경험한/경험할 박해며 박해 공포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 동성애자를 예로 들면, 아무리 은폐를 하려고 해도 이성과의 혼인 등 기타 규범적 생활 양식을 안/못 따르는 사정으로 인하여 남들과 다른 존재로 의심받을 수 있어 설사 은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그것이 무참히 꺾일지 모른다. 한편, (현재) 동성애자(로 자신을 규정하는 자)라 하더라도 ㄱ) 이른바 혼인 적령기에 달해 불가피하여서 혹은 ㄴ) 당시에는 자신도 기꺼이 그럴 의지가 있어서 이성과의 혼인을 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지극히 협소한 성소수자 정체성 서사의 각본에 의거하여 그러한 틀에 맞지 않는 복잡한 서사를 가진 난민신청자의 이야기를 일관성-설득력-신빙성 없는 것으로 손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 →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원칙 (난민법²⁵) 제9조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각주 6번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2부[난민지위 인정절차]-B[사실확정]-(1)원칙 및 방법-196항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할 의무는 신청인과 심사관이 공유한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관이 신청을 뒷받침 하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독립적인 조사조차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진술에 따라서는 증명할 수 없는 성격인 것도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달리 불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심사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추정benefit of the doubt을 해야 한다”)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여타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현저히 떨어져 보여 진술하는 바를 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개방적으로 물어서 난민신청자의 사정을 입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현행법을 위반하였다는 결과적 사실 자체만을 두고 준법정신 결여를 구실 삼아 난민인정을 회피, 거절하여서는 정의로운 판단에 이르기 어렵다. 위 8)번 항목과 관련하여 재판부 판결 주체로서는 바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어지러운 정체성 형성-재형성, 관계 역정, 삶의 여정을 지닌 성소수자의 어떻게 보면 문란하고 난잡한 삶의 이야기를 다룰 때,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이 난민인정을 받아야 함을 증명해야 하는 난민신청자가 궁여지책으로 취했는지 모를 여러 위법한 조치를 법질서 위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삶의 부족하고 모순되고 영망인 (실은 그래서 그야말로 인간적인) 복합적 차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3268>,

“트랜스젠더 난민 인정 사건” 발제: 김연주 변호사, 토론: 나영정 활동가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자료집»,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3687&types=9&searchtype=&searchstr=,221021>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posts/pfbid0SbYwnRmeguM4Hq8fL5jEYRvypGCN1bT8SpixxzYjxf3wACF6Qb5z7qtC27oxu3vtl>)

25) 난민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9C%EB%AF%BC%EB%B2%95>

“원하지 아니하는 자”의 원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의지를 존중하자

난민협약 1-A-(2):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법 1장 2조 1항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형사 사건 피고인 심문하듯 면접하는 것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부정의다.

※ 같이 읽어봅시다

이종걸, “[179호][활동스케치 #1]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세 명의 이주민 게이를 만나고”
<https://chingusai.net/xenewsletter/645449> [끝]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1: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2017)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posts/pfbid0314SYNvydbnWxef5T1QWuGzayTAcNEg5EhnCBSPrQhQbFkqZ441q8fCyi1dVA4rKl>

https://drive.google.com/file/d/19gcjpWGcY_uqQQO7p1wMaZUJ7VbU5l5r/view?usp=sharing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2: 성소수자 난민 심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2020)
(<https://drive.google.com/file/d/1RChryKLrTKLKa1cTlSkXguQ2RJ11PqZk/view?usp=sharing>)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

질의응답

심아정 :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2020년에 마중 면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첫 면회자가 성소수자 난민 신청자였어요. 성소수자 정체성 하나만으로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기저 질환이 악화된 상태여서 보호 일시 해제를 도왔고 결국 보호소를 나와서 병원 치료를 받고 난민 인정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 패소했습니다. 패소 이유가 바로 그 대안적 피신 이론, 즉 서울에서 박해받았으면 부산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배경이었어요. 당시 난민 재판 응원단을 구성했는데 한 30명 있었고 그 재판에 20명 정도가 함께 방청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충격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분은 지금 보호 일시 해제 기간도 끝나고 재보호의 위험 속에서 일시적인 일터를 전전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5개 부처의 합동 단속의 여파와 서류 미비로 인해서 그나마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여권도 아이디 카드도 자신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입증할 어떤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IW31을 통해 조력을 해왔지만 해산되면서 몇몇이 남아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으며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법적으로 인정된 지위가 없더라도 우리가 맺어온 관계 속에서 쌓아올린 열기설기하고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단속, 재보호, 강제 퇴거, 이런 말들로 그와 우리가 맺어온 관계들이 또는 그가 힘겹게 꾸려온 소중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강탈되는 일이 없기를 매일 바라고 바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삶의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분이 성소수자라는 점에 중점을 두며 소송에 집중하며 조력을 해왔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다른 면들이 보입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고 아픈 몸이라는 점 등 다르게 취약해져 가는 상황이 조력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살펴야 하고 더 중요한 점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함께 살피면서 오늘 질의응답과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 죄송합니다. 제가 공공장소에 있어서 마이크 켜고 질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유해주실 수 있는 선에서) 김지림 변호사님께서 앞서 사례에서 언급하신 Y 님은 본국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혹시 다시 한국에 난민을 신청하실 수 있으셨나요?

김지림 : Y 님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난민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민 신청한 다음에 본국으로 갔다가 그게 성소수자든 아니든,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난민 신청 관련한 기록 같은 것이 법무부에 남아 있다면 출입국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논리를 보완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며, 다만 한다면 빠르게 기각이 되겠죠.

심아정 : 화 님의 토론문 중 9번에 대한 것인데요. 9번,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항상 패소 사유가 된다고, 현실적으로도 그것도 많이 겪어보았는데요. 그 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에서와 비슷하게 어떤 입증 책임을 당사자가 져야 되는 것이 성소수자와 상황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9번을 보면 원칙적으로 증명 책임이 신청인한테 있다하더라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심사관한테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심사관이 신청자의 어떤 난민 인정 사유를 뒷받침하는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심사관 중에 그렇게 노력을 했거나 그런 사례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화 : 난민 인정을 해주기로 결심하신 분들 중 증거 자료들의 보강을 많이 해 주시는 걸 보기는 봤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고 심사관님들 중에서도 어떤 사건은 인정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각을 한다는 건 정말 스트레스받는 일일 것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사건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 사건은 내가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저희도 놀랍게 이런 걸 찾았구나 생각되는 어떤 기사들이나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조사할 때 갑자기 보여주면서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 혹은 신청자 당신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더 설명해 줄 수 있느냐는 식의 노력을 못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죠.

심아정 : 네, 그런 심사관도 있었군요.

화 : 보통은 신청자의 증빙 자료를 반박하는 증거를 많이 찾기는 하죠.

심아정 : 연결해서 화 님도 외웠다고 하는 2016도 56080 대법원 판결에 관한 것인데요. 정말 커다란 걸림돌 판결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대안적 국내 피신 이론과 관련한 이런 대법원 판결이 계속적으로 인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나온다면 상반되는 두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김지림 : 너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국면이 있는데, 일단 배경 설명을 조금만 해 드리면,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을 하셨던 분들 중에 종교적인 의미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셨던 분이 계셨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임명되실 때부터 특정 종교인 기독교와 관련해서 너무 강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기사들을 통해 입장을 밝혔어요. 앞선 사례의 당사자인 Y 님 사건 관련해서도 이기고 올라간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 그 대법관님의 영향이라고 짐작되는데, 거기서 안 돼 하고 내려 보내졌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주심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우간다 사건도 고등법원에서 이기고 올라간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내려 보내졌는데 그때 그 대법관님이 주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확고한 어떤

신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침 고등법원에서 훌륭한 판사님들이 잘 판결을 해 주셔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잘못 만난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새롭게 마주하게 된 벽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관의 어떤 특정한 성향에 영향을 크게 받은 여러 판결들이 있었던 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의 지향이나 성향에 대해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소수자와 관련한 좋은 판결들 또한 대법관님들 자신의 성향이나 소신에 따라서 해 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언젠가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을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6년 판결 이후 성소수자 난민 관련해가지고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사건들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굳이 법무부 단계에서도 안 해줄 이유가 없어서 법원까지 가질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사실 될 만한 사건인데 왜 법무부에서 안 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1심에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심에서 될 것 같은 사건들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일이 흔하지 않아요. 대법원에서 대단한 어떤 설명을 해서 앞선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어떤 거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 증거도 없는데 진술은 정말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는 어떤 신청자가 법무부 단계에서도 안 되고 1심에서도 안 되고 2심에서도 안 되었는데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관님이 내가 갑자기 이 판결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에 굳이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앞선 판결을 뒤집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례적인 상황인 것인데 그게 어렵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에 4명으로 안 되고 전원 합의체로 올려야 돼요. 13명으로 한 판결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어떤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아정 : 그래도 1%의 가능성을 상상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붙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게도 두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에밀리 님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겠어요?

에밀리 : 저는 통역의 실수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례를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아무튼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을 거라고 예상되어요. 한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어서 너무 허술한 이 체계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통역자의 잘못이라고만 하기에는 모든 책임을 통역하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또한 아닌 것 같고요. 한 사람의 어떤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더 나은 좋은 제도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통역에 의존하는 방식이 너무 취약하고, 그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그 현실의 한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문제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이런 사례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통역자가 통역과정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판결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통역된 내용을 꼼꼼이 다시 살펴볼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김지림 :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역관 분들도 사실 다 어떤 자격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훌륭한 통역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례에서 다룬 이분도 아마 다른 데서는 훌륭한 통역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안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통역인에게 이제 잘못을 묻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소명을 하면 법원의 결과에 반영을 해 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런 소명에 대해 가뿐하게 무시를 당했었던 것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 기각한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보고 있고 통역 부분에 대해 참작이 안 돼서 아쉽다는 지점이었습니다. 다만 에밀리 님이 질문하신 통역자의 고의적인 잘못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인가, 2019년에 어떤 아랍 국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 난민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 조사관과 특정 통역인이 수십 명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고의로 잘못된 고의로 틀리게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이제 형사 고소까지 됐었던 사안이고요. 실제로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이 드러나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인정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던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중간에 흐지부지됐지만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은 됐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잘못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앞서 사례로 보여드린 사안처럼 뭔가 혼란 속에서 어떤 역량의 문제로 인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판결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아정 : 네, 답변 감사합니다. 타리 님 슬기 님 두 분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소리 듣고 들어볼까요? 두 분 의견 말씀을 듣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타 리 :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판결문 읽기를 하면서 이 협약의 내용에 얼마나 한국의 판결이 모자라고 잘못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걸 넘어서서 어쨌든 협약의 내용까지 다시 한 번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고 동시에 이런 시도 자체가 너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제자, 토론자, 진행자 모두 그간의 판결문 다시 짚어주면서 너무 중요한 지점을 얘기를 해 주셔서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감각하고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민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은 국적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심아정 : 너무 감사합니다. 난민의 개념을 확장해서 난민화까지, 그러니까 국적국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의 조건 속에서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슬 기 : 오늘 대안적 국내 피신 이론 이야기 들으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안전한 제3국

이론과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외의 어떤 지역이든 이런 식의 방식으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문제적인지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이야기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난민 심사 과정에서 가장 답답한 건, 증명의 책임의 부분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인데 사실은 이런 정체성이나 신념과 관련한 부분은 이렇게 두 겹의 증명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념이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그걸 증명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로 박해를 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또 다른 박해 위험성에 놓인 것에 대한 증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겹겹이 증명의 부담이 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 님이 토론회에서 열 가지를 짚어주시면서 이것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한 근거로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난민이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신념이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의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난민이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무능력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 역시도 사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무능력의 문제 아닌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적 영역에 대한 인식과 공사 영역에 대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법이나 제도로 이미 구분이 확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 님의 토론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사실은 난민이란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걸 사실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박해나 어떤 증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방식의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아정 : 오늘도 다양한 의견 주셨고 우리의 뜨거운 여름밤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단속을 피해 동료들의 도망을 도운 김민수의 사례 환대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 사안도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붙들고 싶은 사례라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두 분의 간단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투쟁

김지림 : 여러 자리에서 저도 성소수자 난민과 관련한 토론 혹은 발제를 했지만 사실 오늘 여기가 뭔가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하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다, 애매하다, 이야기를 할 때 다 같이 공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서 저도 훨씬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을 좀 끊이지 않고 해주신다면 아까 말했던 디딤돌 판결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심 2심, 그리고 화 님이 또 보셨던 것들 역시 또 뒤집을 수 있는 계기들은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 트랜스젠더 난민 인정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그분과 친구인 또 다른 같은 출신국 트랜스젠더 분은 인정 못 받고 계시다가 제3국 가셨어요. 떠난 지 지금 2년 됐는데 그 나라에서도 2차 인터뷰조차 안 잡혀서 계속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우리가 해준 게, 대한민국이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여기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그리워하고 하는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납니다. 최근에도 연락을 했는데 그냥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우리가 버린 사람인데 우리를 보고 싶어 해요. 그게 너무 슬프고 너무 미안하고 네 갑자기 울어서 죄송합니다.

심아정 : 큰일 났네. 나도 눈물이 나서.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잘 들었고요. 정말 저희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닌데 그 버려지는 관계가 있고, 그런 버려지는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그 한계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커다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버려지지 않는 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가 다른 말의 자리들을 만들고 또 새로운 프레임 감하지 않는 국가의 프레임에 감하지 않는 새로운 프레임들을 만들어내고 조금 더 가열차게 그런 것들을 싸워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새로운 질문이 나오는 그런 공론장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하니 울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쉽 있는 밤 되시고 다음 4강 때 뵈게요. 고맙습니다.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4강**

환대의 범죄 : 단속을 피해 동료들의 도망을 도운 김민수의 사례

사회 : 슬기(트랜스보더링랩)

발표 : 최정규(법무법인 원곡)

토론 : 김희정(성서공단지역지회장)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4강 (8/4) 

환대의 범죄:
단속을 피해 동료들의 도망을 도운 김민수의 사례




우리는 공기처럼 누리고 있어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 직장에 사표 내고 다른 직장 찾는 일 여기서 일 하다가는 병 들거나 죽을 것 같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일이 **20년 동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시 비상상태가 아님에도 이주민은 사고로, 병으로, 죽어 나간다 **이 헌법정지상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발표자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4강 (8/4) 

환대의 범죄:
단속을 피해 동료들의 도망을 도운 김민수의 사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365일 단속해도 그 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미등록으로 전락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자본에 의해 불법이 된 건설노조와 잘못된 법으로 불법화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동지적 관계다** 자본 중심의 세상을 뒤집는 것이 운동이라면 착취와 차별의 대상인 노동자들이 자본에 맞서 단결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

토론자 김희정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단속을 피해 동료들의 도망을 도운 김민수 사례

발표_최정규(법무법인 원곡)

1. 시작하며 - 선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편견

2025년 7월,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히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고, 사업장 이탈의 자유가 박탈당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실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시민들의 공분에 못 이겨 정부는 바로 그 영상에 담긴 그 피해자 구제와 바로 그 영상에 담긴 그 가해자 처벌에는 적극 나서지만, 사업장 이탈의 자유를 주는 제도적인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장 활동가와 함께 법률지원을 하는 필자도 여러 충격적인 인권침해 피해를 목격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예멘 국적 청년의 이야기다. 청년은 소년병으로 징집되기 직전 탈출해 2018년 한국에 입국했다. ‘인도적 체류자’라는 신분을 겨우 얻었고 취업 허가를 받아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서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다. “이 XX야 눈 똑바로 뜨지 마. 야 이 XX야. 총 집에 있지? 갖고 와. 너 나 죽이고 싶지? 죽여! 이 XX야. XXX이 진짜.” 따지고 따 테러리스트 취급을 당한 청년은 관리자에게 본인이 겪은 인종차별을 호소했다. 관리자는 그의 호소를 묵살하며 이렇게 욕박질렀다. “인종차별? 여기는 인종차별이라는 말조차도 없는 나라야!”

‘인종차별이라는 말조차도 없는 나라’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차별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주민 편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나 법률가들은 자신도 모르게 선주민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된다. 필자도 그랬다.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자기가 고용한 이주노동자가 밤에 몰래 회사 트럭을 몰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한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무면허 운전이라 처벌이 될텐데, 처벌수준을 낮출 수 없냐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자기가 고용한 이주노동자가 무단으로 회사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당장 나가!’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공장으로 찾아갔다. 사장님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이 친구가 외로워서 기숙사에 TV도 설치해 줬는데, 얼마나 외로웠으면 밤에 친구를 만나러 갔을까 싶다. 잘못은 했지만 이것 때문에 강제출국 당하면 안 되니 잘 변론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이주노동자가 호기심에 풍등을 날렸는데, 운이 없게도 그 풍등이 저유소 인근에 떨어져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수 백 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는 중실화죄로 입건되어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실수로 풍등을 날렸지만 저유소가 폭발한 건 저유소 부실관리가 주원인일 텐데 이주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 변호사들이 급하게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변호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의 입장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사건 결과에 따라 회사 또한 수백억 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선의 배려를 다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취업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정부에 요청하여 취업활동기간도 연장 받아 계속 일하면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출국 후에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회사의 입장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주민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김민수 씨의 사례도 나에게 그랬다.

2.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바라 본 대한민국의 출입국 단속의 문제점

2025년 8월의 첫 날,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2023년 11월 미등록 이주민을 헤드락을 걸고 체포하는 영상이 떠올랐다. 출입국관리법이라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이주민을 법원의 영장없이도 헤드락까지 걸어 체포하는 한국의 공권력이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도 이미 구금되어 있는 내란범을 구인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대한민국에서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주민에 대한 출입국단속 방식은 정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인권적이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에서의 단속방식은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까지는 출입국단속의 성역으로 간주되었던 종교행사 중 종교기관 내부에까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식당 개업식, 출신국가 가수 초청 공연장을 급습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했다. 출입국당국은 2023년 3만 8,000명을 단속했다며 역대 최고 단속이라고 자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체류자 전체 숫자는 줄어 들지 않고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걸 미등록체류자 문제는 단속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비자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입국이 그런 무리수를 두다 보니, 사적인 영역에서도 여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박진재를 비롯한 극우세력 일당이 미등록이주민을 체포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었고, 수사결과 이주민으로부터 금전도 갈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도 이런 반인권적 대열에 합류했다. 한신대학교는 유학생 23명의 비자가 말소되어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앞서 용역까지 동원하며 선제적 강제출국을 시켜버리는 일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이 헌법인지, 출입국관리법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이 만들어진 건 2009년 6월 15일, 이 준칙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2022. 8. 1.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시 주거권자 및 관리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그저 법전에만 존재하고 현실에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 주거권자 및 관리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권고에 대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등 방문조사 시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조사 개시(안 제10조제2)

- 제10조 제2항 중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를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로 개정

나. 단속활동보고서에 적법절차 준수사항 기재(안 제14조, 별지 제3호서식)

- 제14조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의2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제10조 내지 제13조의 2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로 별지 제3호서식의 "단속과정의 특이사항"을 "단속과정의 특이사항(적법절차 준수사항 포함)"으로 한다.」로 개정

3. 김민수씨 사례에서 보여 준 출입국 단속의 문제점

가. 사례개요

- 2023. 7.말경까지 대구출입국사무소에는 몇 달간 ‘대구 달성군 OO읍 소재 OO회사에 미등록체류 외국인이 일을 한다’ 또는 ‘30명 이상의 미등록체류 외국인이 대구 달성군 OO읍 소재 OO 앞에서 통근버스에 탑승하여 대구 달성군 OO읍 소재 OO회사 2공장으로 출근한다’는 등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됨
-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이 신고를 근거로 첩보를 작성하여 단속을 계획하게 되었고, 2차례에 걸쳐 사전조사를 통해 신고내용과 같이 외국인들이 통근버스에 탑승해서 ‘OO회사’ 2공장으로 출근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첩보나 신고의 진위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한 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내부결재 후 단속하는데, 통상적인 방법은 단속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단속 전 사전조사한 도주예상장소 등에 직원들을 배치한 후 단속책임자가 관련 사업자 등에게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러 나온 사실을 고지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허락을 득하고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미등록체류로 확인될 경우 단속함. 이 사건의 경우는 차량운전자에게 단속사실을 고지하고 단속함(수사기록 33쪽 피해자 손O원 진술조서 참조)
- 2023. 8. 25. 직원 16명이 차량 3대를 동원하여 단속하기 위해 달성군 일대에 와서, 그 중 아반떼 차량에 직원 2명이 탑승하고 06:58경부터 07:08경 OO 앞에서 외국인들 36명이 통근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통근버스를 미행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했고, 나머지 직원들이 스타렉스 2대에 나눠타고 OO회사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음
- 2023. 8. 25. 07:25경 통근버스가 한미에이디엠 인근 위 도로로 오는 것을 보고 통근버스 앞쪽 차선에 스타렉스 한 대(77누0000호)를 미리 정차를 시킨 후 통근버스가 다가와 정차를 하였을 때 스타렉스에 탑승하던 직원들이 차에 내렸으며 미리 도로에 나와있

던 조사계장 이00이 통근버스 앞으로 손을 흔들며 다가가 통근버스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을 밝히고 외국인들을 단속하러 나왔다’고 고지하고, 그 사이 통근버스 옆으로 미행해오던 아반떼 차량이 통근버스 왼쪽 운전석 쪽에 정차를 했고, 다른 스타렉스 한 대(72머0000호)는 통근버스 뒤에 정차했음

- 피의자가 통근차량을 후진하여 뒤에 정차되어 있던 스타렉스(72머0000호)를 충돌하여 차량을 약 2~3m 정도 밀어내고, 통근버스 앞에서 직원 6명이 손을 흔들면서 차량을 정차하라고 했는데도, 통근차량 옆에 정차되어 있던 아반떼 차량 앞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윈도우 쪽을 충돌하고 그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
- 통근버스 앞을 막고 있던 스타렉스(77누0000호)가 약 150m 정도 통근버스를 추격하여 다시 통근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다른 스타렉스(72머0000호)가 통근버스 뒤편에 정차하였음
- 피고인이 통근버스를 운행해 후진하여 뒤에 있던 스타렉스(72머0000호)를 충돌하면서 차량을 2~3m 정도 밀어낸 후 다시 도주함
- 피고인이 통근버스로 도주하면서 차량문을 열어 외국인 2명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차량문을 연 사이 조사계장과 단속팀장이 통근버스에 탑승하여 피의자에게 차량 정차를 요구하였고, 스타렉스(77누0000호)가 통근버스 앞을 막자 피고인이 통근버스를 정차함

가. 관리자에 대한 사전동의의 부존재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보호, 조사, 강제퇴거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외국인 단속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긴급보호에 대하여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과 외국인동향조사에 대하여 규정한 동법 제81조를 외국인 단속의 법적 근거로 본다.

대법원은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 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등 참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 8. 1. 개정된 법무부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절차 및 인권보호준칙」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제2항은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외국인동향조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

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출입국사무소 소속 총괄팀장 손OO과 이OO으로부터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받고, '미등록체류 중인 외국인 단속 업무 중임'을 고지 받았을 뿐 이에 대하여 동의를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원심판결문 2쪽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등록체류 중인 외국인 단속 업무를 개시한 것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나. '단속계획서'상 단속장소 미준수

영장주의는 포괄적인 일반영장의 금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 발부 연월일·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영장 기재 범죄사실 및 장소, 물건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넘어선 집행은 할 수 없다.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 만큼 그 한계가 적용되어야 하기에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5조에서 정한 단속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 단속계획서는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논의하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속계획서에 입각하여 실제 단속이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권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행의 한계를 두고 있는 영장과 같이 위 단속계획서에서 벗어난 집행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작성한 출입국사범 단속 계획서에는 장소가 “대구 달성군 OO읍 OO공장”으로 기재되다[증거순번 10번 입건전조사보고서(출입국사범 단속 계획서 제출) 중 수사기록 42쪽 참조].

출입국사범 단속 계획서	
제 2023 - 120호 (2023년 8월 25일)	결
수 신 내부결재	제
제 목 출입국사범 단속 계획 보고	홍.병.서, 박.진.우, 김.용.국
다음과 같이 출입국사범 단속 계획을 보고하오니 지시바랍니다.	
단속일시	2023. 8. 25.(금) 06:00 ~ 14:00
단속대상업체(장소)	1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5길 7, '한미adm 2공장'

하지만 실제 단속은 “대구 달성군 OO읍 도로”에서 착수하였다(원심 판결문 2쪽 등 참조). 해

당 장소는 출입국사범 단속 계획서의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위 단속 계획에 따른 집행으로 볼 수 없다.

다. 긴급성 등 영장주의예외 요건 미충족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과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과 같은 영장이 없는 압수 수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긴급성과 필요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영장주의의 예외로 이루어지는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도 미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로 단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강제력이 사용되어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제보를 받았고, 2차례에 걸쳐 사전조사를 하였다(검찰제출 증거목록 순번 9번 피해자 손O원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32쪽 참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2023. 8. 8. 대구 달성군 OO읍 도로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통근버스가 07:06 출발하여 달성 OO 공장 정문 안에서 38명의 외국인이 하차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는 동향활동보고서를 작성하였다.(검찰제출 증거목록 순번 33번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수사기록 138쪽 참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미 충분한 조사를 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갖추고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단속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운행 중인 통근버스를 멈추고 단속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단속은 매일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갑자기 정차하여야 할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업장에 찾아가 관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노상에서 사전 동의없는 단속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다.

긴급성과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속계획서의 기재와 다른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 사건 단속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사고예방노력의무 미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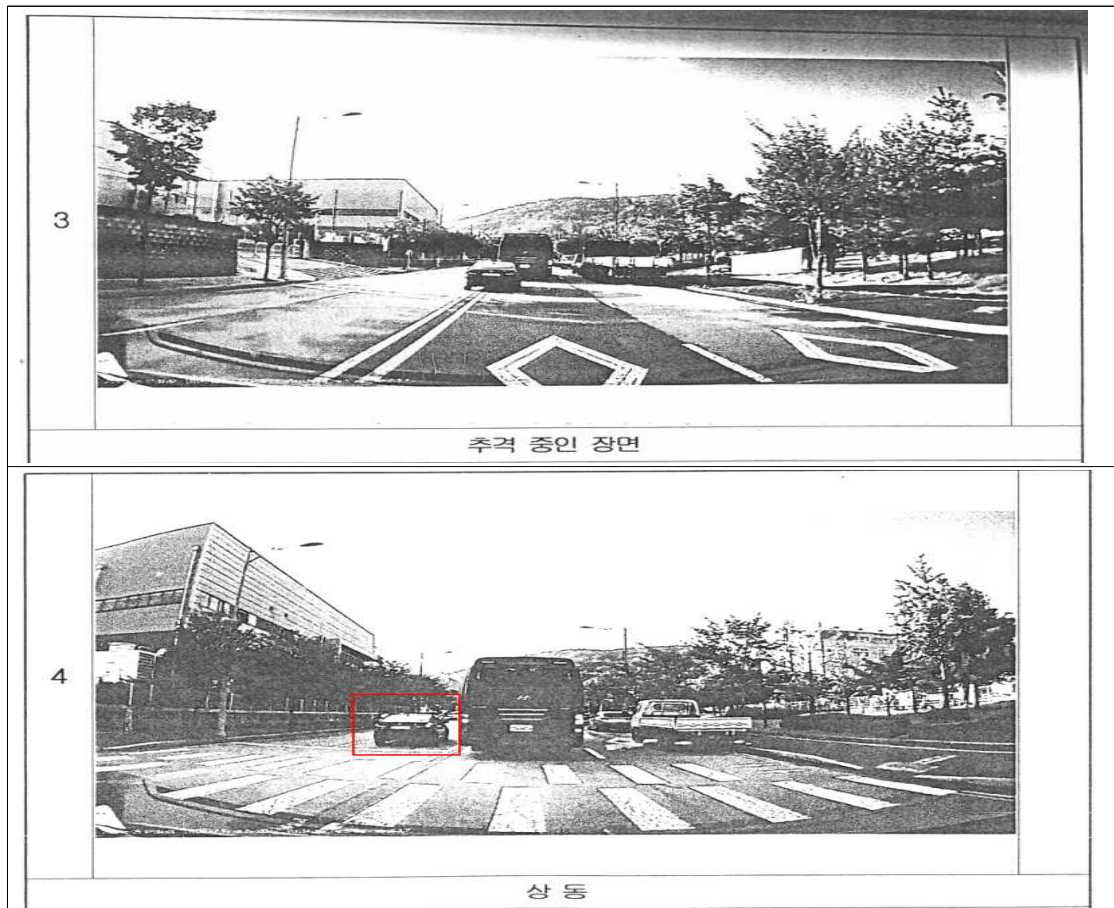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제8호는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 신체 침해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단속과정에서 이러한 사고예방노력의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통근버스를 미행하고 강제로 정차하도록 한 뒤 단속을 하였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통근버스의 앞, 뒤, 좌측을 막아섰다. 우측은 주정차 차량으로 이미 막힌 상황에서 도로를 직접 막고 단속을 개시한 것이다.

미등록체류외국인 단속은 사업장에서 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므로, 도로에서 이와 같이 단속하는 것은 특별한 필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통근버스를 막아서고 단속을 개시하고자 하는 행위는 피고인과 통근버스를 통해 출근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당시 위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과장님 도망가세요.’라고 큰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하였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백00는 스타렉스(77누0000호) 차량을 운전하여 통근버스를 추격하였고, 피단속차량(통근버스)의 출입문이 열려 도주하는 외국인을 확인하자 피단속차량의 출입문 쪽으로 밀착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검찰제출 증거목록 순번 38번 백0우 진술서 수사기록 161쪽 참조).



심지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운행하던 아반떼 차량은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통근버스를 추격하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금지하는 중앙선 침범행위를 하였다[검찰제출 증거목록 순번 22번 입건전조사보고서(72머4284호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첨부) 중 수사기록 75쪽 참조].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 1명의 쇠골뼈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검찰제출 증거목록 순번 1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수사기록 6쪽 참조).

4. 마치며

1심 징역 3년 선고 후 여러 시민단체에서 김민수 씨의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지만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징역 2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김민수 씨의 행동이 위협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보다 앞서 출입국단속이 위법했고, 위법한 행정을 피하기 위한 김민수 씨의 행동이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법은 김민수 씨에게 가혹했다.

처음 이야기했던 이 말이 다시 떠오른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만명에게 평등한가? 최근 여수출입국사무소에 구금되었던 이주민이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CCTV 앞에서 들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력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했다. 정당행위라는 이유에서였다.

공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법,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법치였고, 그 결과의 참담함은 우리가 목격했다. 12. 3. 내란사태 이후 우리는 아주 잠깐 동안의 헌법정지상태에 두려움을 가졌다. 그러나 이주민에게 헌법 정지상태는 일상적이다. 일시적인 헌법 정지 상태에 분노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건 이주민들의 일상적인 헌법 정지 상태가 아닐까?

환대의 범죄

발표_김희정(성서공단지역지회장)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강좌를 운동적으로 판례 읽기, 그리고 행동으로 현실을 바꾸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이주민들의 상황을 대할 때 몸으로 막고 싸우는 것이 일차적 대응이라면 법적 대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대응이라 보고 있다. 그것은 법으로 한번 정해지면 바꾸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기 때문이고, 전문가 소수가 움직이기보다 깨어있는 다수가 움직여 법과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민수 사례는 처음 접하기도 했고 이미 상당 부분 사건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인권팀이었고, 그때도 현 발제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자의 의견에 보탬 말이 별로 없다. 당시 김민수뿐 아니라 박진재와 자국민보호연대 문제까지 대응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빛과 소금으로, 또 다른 한 명은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었다.

아래 토론문은 김민수에 맞춘 것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불쌍해서" 출입국관리국 직원 11명 다치게 한 40대...징역 3년

이 기사를 처음 접하고 난 뒤 대구경북 이주단위는 바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언론기사에 언급한 공단,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 회사명을 찾았다. 무작정 회사를 찾아가 사장에게 상세한 사정 이야기를 들었고, 구속된 당사자를 면회하였다. 어릴 적 집을 떠나 누구보다 이주노동자의 삶과 아픔을 공감했던 김민수는 이주노동자들과 가족처럼 지냈다. 단속 당일 아침 달려달라고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은 김민수에게 과거의 자신을 향한 외침으로 느꼈다고 김민수는 당시를 회상했다. 김민수를 만나고 난 후 기꺼이 무료변론을 자처한 민변 변호인과 대경이주연대회의는 발 빠르게 대응을 시작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기금이 모금되었고, 수천 명이 석방 탄원에 동참했다. 기독교연대가 석방 기도회를 열었고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변호사비를 모금했다. 모 유명 배우는 영화로 제작하겠다고 공판기일 내내 찾아왔다.

빼앗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으로 김민수 씨는 이 시대의 의인으로 회자되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1년 감형이 된 2년 징역을 선고했고 그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그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축 처진 어깨가 어떤 모양인지 너무도 선명히 보았다. 부당한 사회에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다짐하게 되었던 날이었다.

지난 코로나19 때 20%에 가까웠던 미등록 체류자는 현재 등록이주민²⁶⁾ 총 270여만명 중 38

26) 2025.06 기준, 법무부 정책브리핑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 1253명 강제퇴거 또는 범칙금 처분 등으로 조치, 불법고용주 2263명 적발, 8592명은 자진출

만명(14%)이다. 이는 2025년 77일간 진행된 5개 관계부처 합동단속의 결과 약 2만명이 감축된 결과이며 이를 두고 법무부는 7월 30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저들에게 미등록이주민 단속은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 수를 줄인 대단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민에게 단속은 인간사냥에 다름아니다. 단속버스를 보고 도망치다 척추가 부러지고 양발이 골절되고, 옆 공장에 단속반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도망치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단속반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전기함에 숨는 연습을 하다 3도 화상을 당하고, 아이가 유산되고... 체류기한을 넘겼을 뿐인 서류미비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폭력이 인간사냥이 아니고 무엇인가.

알려진 대로 이주노동자는 1980년대 3저 호황과 정주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등으로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1994년에 가서야 관련한 법, 제도가 정비된다.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에서 제외되고 송출입 업체의 비리로 생존권마저 박탈당하자 미등록체류를 선택하기에 이른다. 그들이 일했던 곳이 대체적으로 저임금, 장시간노동, 3D업종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다. 현재에 이르러서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일정한 규모의 기업체는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자본의 유연화 전략으로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조조정되고 있으며,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더욱 선호되고 있다. 그것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정주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선 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리를 잡고, 등록 이주노동자가 기피하는 일자리에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주노동자가 없다면 1차, 2차 산업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한참 되었다. 한편 미등록자 다수가 오랜 기간의 체류로 일정한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로, 사업주들이 나서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그 필요에 의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²⁷⁾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²⁸⁾ 발표 2025년 5월 기준 새로이 미등록이 된 숫자는 2334명, 6월은 1553명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미등록 전환은 고용허가제(E-9) -> 유학생(D-2,D-4) -> 기타비자(G-1) 등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 도입의 대표적 비자제도인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학비와 생활비, 숙소비까지 감당해야 해야 함에도 일주일 20시간 이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유학생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조선업 E-7, 계절근로 E-8과 같이 법무부가 자본과 밀착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게 설계된 제도의 경우 미등록체류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입국 당시 브로커 비용이 1000만원 이상

국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참여.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07.30

27) 물론 저임금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를 위한 도구로,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최근 들어 플랫폼, 건설, 플랜트, 조선 등에서 한국인 정주노동자들의 일자리 위협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한다. 여기서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28) 아래 표의 "F-6"는 F-6-1~F-6-3 및 F-2-1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며, G-1(기타)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단기(B-1, B-2, C-3) 등의 자격에서 난민신청, 체불임금 중재, 산재보상 등의 목적으로 변경한 자격이다. <2025년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신규 발생 현황 및 추이>

소요되고 임금까지 압류당하는 현실은 1990년대 산업연수생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당시 미등록비율이 85%가 넘었다.) 이 표에서는 빠져있지만 E-8(계절근로)의 미등록 전환은 93명에 이르고 C-4와 같이 단기취업비자의 미등록 전환자는 정책본부 통계에서는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 단속추방의 위협 속에서도 미등록체류를 선택하는 사람들, 미등록체류를 선택하는 것 이외 더 이상의 방법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죽을 수도 다칠 수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 달에 1,500명 이상이 미등록체류자로 전환되고 법무부가 단속하는 상황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체류자를 계속해 양산하고 폭력적 인간사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유명한 학자는 “단속을 해서 불법체류자 모두를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속을 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단속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라 말했다. 등록노동자는 죽을만큼 힘들어도 참고 일하라는, 미등록 노동자는 더 열악한 곳으로, 더 저임금이 있는 곳으로, 한국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숨죽여 살아가라는 것이다. 기초질서 지키기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친자본 의식 고취를 목표로 한다면, 서류미비자를 향한 폭력은 법이 가진 힘, 법을 어긴 자는 어떠한 것이라도 처벌받을 것이니 국가의 관리 통제 아래 질서를 지키라는 것을 의식화시키고 있다.²⁹⁾

법과 제도의 문제

발제문에서 제기한 것처럼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하 보호준칙)은 단속을 시작하기 전 사업장 대표 혹은 관리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단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속을 당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인데, 사실상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법무부의 무법적 단속행태는 공개되지 않고, 이를 관찰하거나 처벌할 관계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6월 대구출입국의 단속으로 7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중경상을 입은 A정밀의 경우 대구출입국 단속버스가 회사 마당에 주차하는 것을 본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반원이 배치되지 않은 뒷 공장 펜스를 넘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해당 사업장의 단속계획서, 보호명령서, 긴급보호서, 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범 결정통고서 등 단속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누계	24년동기
총계	1,781	1,448	1,732	1,758	2,334	1,553	10,606	10,632
D-2	146	65	75	41	766	59	1,152	964
D-4	216	56	210	306	29	155	972	1,342
E-6	9	7	5	6	8	3	38	59
E-7	47	46	48	39	44	62	286	363
E-9	472	490	467	486	577	450	2,942	2,649
E-10	102	107	102	72	65	97	545	719
F-1	93	50	83	113	161	125	625	596
F-6	61	41	50	45	60	56	313	354
G-1	248	285	285	216	259	251	1,544	1,566
H-2	35	41	45	35	42	49	247	303
기타	352	260	362	399	323	246	1,942	1,717

29) 광장의 투쟁이 종종 폴리스 라인 안에 갇힐 때 선을 넘지 못하는 우리를 한탄하게 된다.

거부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무법적 권력기관으로서 법무부의 행태를 잘 보여준다.³⁰⁾

대구출입국은 단속 당일, 회사 마당에 단속버스를 주차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단속을 통보했다. 이 경우 단속을 진행한 것인가, 단순히 단속을 준비하는 단계인가? 이러한 방식의 단속을 두고 이주단위와 대구출입국의 큰 입장 차이가 있다. 이주단위는 단속버스 그 자체가 단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구출입국은 보호준칙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무부가 단속 시 부상 등을 대비하여 삼성화재에 가입한 보험금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기도 한데, 최소 2천에서 최고 10억까지 지급요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튼 이 건과 관련하여 출입국과 삼성화재는 4천만 원을 지급 결정했다. 척추가 부러진 노동자의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가 2천만 원을 넘겼고 1년 이상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그 이상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출입국은 화재 보험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없고, 다친 이들에겐 출국유예조치를 해주며 기타비자(G-1)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등록 체류기간 동안의 벌금을 모두 납부하라 한다.

2017년 건설현장의 단속으로 숨진 미얀마 탄저테이 씨 사건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요령”을 만들었다.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단속을 피하기 위한 준비나 교육을 진행하고, 단속이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미등록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취소 혹은 고용제한 사유가 되는데, 이는 1-3년 동안 이주노동자 고용을 취소당하거나 제한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원청들은 파견업체로 미등록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고, 최근 들어 미등록고용을 이유로 한 벌금까지 계약에 포함시키면서 관리는 원청이, 책임은 파견업체가 떠안고 있다.³¹⁾ 평소 단속이 오면 도망가라 교육을 했더라도 원청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파견업체는 원청의 눈치를 살피느라 산재 신청을 쉽게 하지 못한다. A정밀의 경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다수가 입사한 지 수일이 되지 않는 신규자들로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래된 베트남 노동자가 관리자였던 것이다.³²⁾ 결국 노동자들은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은 이주노동자, 사업주, 출입국이 가진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국가의 단속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요건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A정밀의 문제로 대구출입국 앞에서 약 3개월 동안 1인 시위와 매주 1회 집회를 진행했다.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출입국 앞에서는 적어도 주 1회 이상 1인 시위가 전개되었다. 소위 불법체류자의 양산은 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즉 국가의 불법성의 생산³³⁾의 결과라는 것, 따라서 A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하는 이주민 모두의 문제이며, 정주민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 결과이다.

30) 사업장 단속에 들어가기 전 사업주나 관리자에 동의를 얻으라'는 인권준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쟁점이 남게 될 경우 출입국과 사업장 사이에 오가는 커넥션이 있다.

31) 원청이 나서 파견업체를 여럿 만드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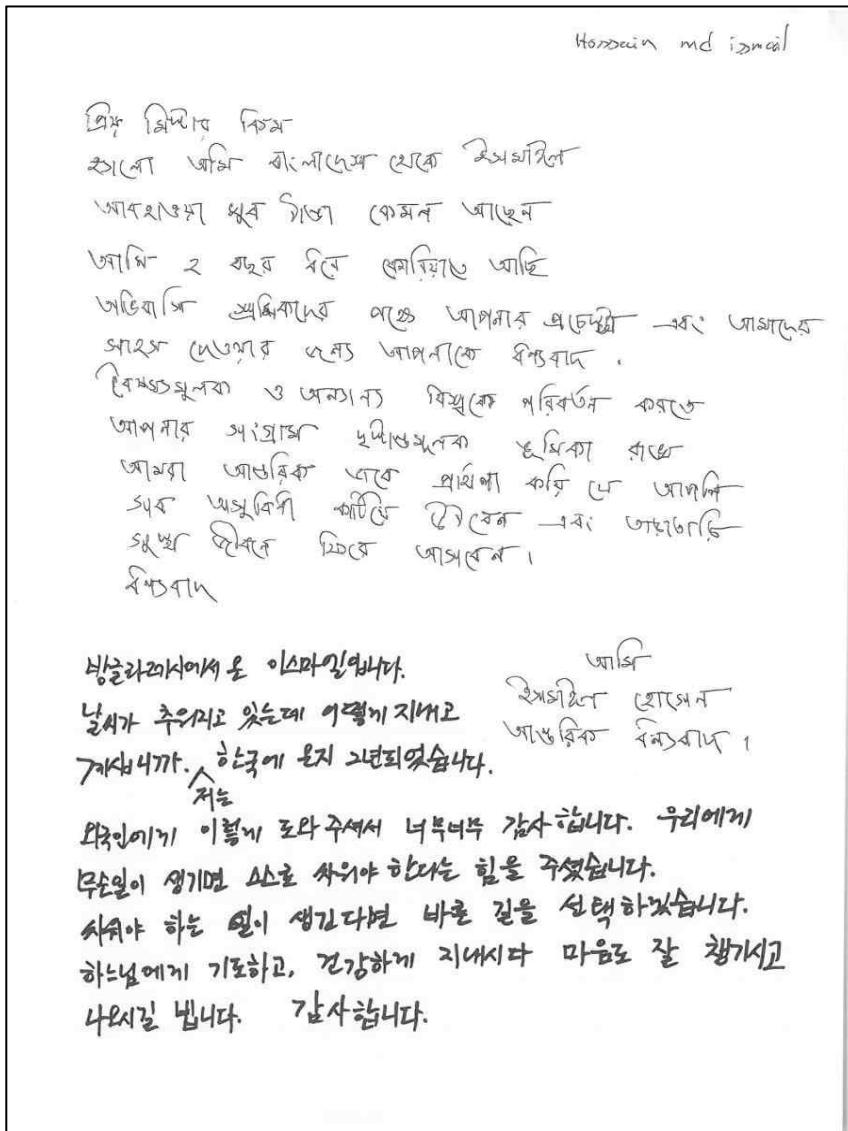
32) 단속의 책임을 떠안은 파견업체들 사이에 단속을 피하기 위한 내부 방침

33) 한준성,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 분석-

한편, 서울, 경기, 대구경북, 부울경 등 기존에 존재했던 이주차별을 대응하는 연대체들이 광주전남, 전북에서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경험했던 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각성된 이들의 일상적 활동이, 탄압 시기에도 준비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주민 300만 시대를 앞두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민수의 희생이나 박진재의 폭력성이 전국으로 알려지며 전국적 대응을 가능했던 것 또한 지역 연대체의 역할이 컸다.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12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대구경북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김민수 씨에게 편지쓰기를 진행했다. 편지는 김민수가 있던 대구교도소로 보냈으며 김민수 씨에게 한줌의 따스함이라도 안겨 주었기를 희망했다.



이주노동자는 당신의 희생이 끝이 아니라 자신들 또한 김민수가 되겠다고 말한다. 김민수 한명이 아니라 다수의 김민수가 만들어지게 한 것! 그것이 바로 김민수 씨가 해낸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판을 깔고 대응하고 때가 오길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다.

질의응답

이슬기 : 여러분들 이제 함께 질문과 의견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채팅창에 에밀리 님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자, 법무부라고 글을 남기자 최정규 변호사님께서 그 가운데 법무부의 문자를 없애 '무(無)'자라고 써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말장난이라 즐겁게 봤습니다. 더불어 에밀리 님께서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네 혹시 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에밀리 : 아까 토론을 들으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형량을 줄일 것인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했다는 말이 좀 기억에 좀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겨요. 사실 어떻게 봐도 무죄인데, 제대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가 만든 폭력적인 상황인데 그게 너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을 앞두고 무죄와 양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더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화가 납니다. 솔직히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단순하게 볼 때 이것은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희정 : 실제 잘못된 것이 없고,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도움 게 죄라면 죄였던 분이지요. 더구나 출입국관리국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문제적이기 때문에 2심에서는 무죄 주장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주장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을 운동의 맥락에서 판단하기보다 김민수라는 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가족들과의 관계라든가 생계유지라든가 등등 김민수 삶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결과적으로 2심의 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했고 이후 3심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은 이유도 같은 이유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례로서 좀 더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사람을 남기는 것이 컸습니다. 김민수를 남기고, 김민수가 그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우리를 탄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실을 이주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무언가 더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아정 : 오늘 발표와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을 다 듣고 나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심장이 아픕니다. 실제로 심장이 아프네요.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수원 출입국에서 롯데 택배회사를 덮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하는 과정에

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와서 컨테이너에 숨어 있던 3명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한 분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 팔이 부러진 채로 수원 출입국 보호소에 갇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수원 출입국에 연락을 해서 단속 중 팔을 부러지게 했던 공무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보험도 없다면서 다친 사람 병원비를 걱정하는 거예요. 100만 원도 넘게 나올 거라고. 제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지금 병원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등, 제가 가장 저열한 방식으로 그 공무원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순간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분은 병원에 가게 됐고 지금은 팔이 부러진 채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이송되어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국가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요. 사실 희정 님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김민수 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는데 금방 전에 찾아보니 가석방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석방되기 전에 김민수 님을 조력하고 지원하면서 면회를 이어오셨던 분들이 계신지, 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최정규 변호사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단속이 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나 고용주 중에서 미리 도망쳐라 이렇게 귀뜸해 주거나 언제 단속이 들어온다더라, 그러니까 일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없는지, 이걸 사업주 고용주가 도망을 도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들켰거나 발각됐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출입국 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5조에서 정한 단속 계획서 단속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단속 계획서에서 벗어난 집행을 자행한 출입국 공무원은 처벌을 받기는 하는지, 공무 집행 아무리 폭력적이라도 공무집행 중에 발생하면 처벌을 잘 안 받잖아요. 그런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한 출입국 공무원의 폭력 행태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런 위법한 행정에 대해 법으로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은 걸림돌 판결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디딤돌이라고 느껴져서입니다. 이게 판결로서는 걸림돌일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커다란 디딤돌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슬기 : 그러면 먼저 김희정 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최정규 님 다음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 : 김민수 씨는 가석방 이후에 잘 지내고 있던데요.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김민수 씨는 다시 일하던 공장으로 돌아가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에 다른 분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자신이 돌아가면 그분이 해고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만났을 때는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직장을 구해서 새로 시작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민수 씨 면회는 계속 진행했었어요. 가족들과도 기회가 되면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대구 경북 종교인들과 이주민 단체들과도 계속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했어요.

최정규 : 어찌 됐든 출입국 단속 관련해서 사용자들이 이주민을 돕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주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형법상의 범인 도피죄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도피를 시켜야 되는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범인도피죄, 예비음모죄가 따로 처벌되지 않아서 단속 왔을 때는 도망가라 이런 정도의 지시만으로는 그 자체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명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김민수 씨 사례처럼 단속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막는 행위를 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희정 동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산재랑 연결이 이상하게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피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이 되고 도피에 대한 어떤 지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들이 실재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사업주는 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한 것 자체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건데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따로 뭔가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사실상 단속을 하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7년인가 8년도에 의정부에서 무리한 단속 과정 중 노동자가 위협을 느끼니까 옆에 있던 칼을 좀 휘두르다가 출입국 공무원이 칼에 찔리는 불상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님이 형사 변론을 맡아서 진행했고 결론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를 받았어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방해해도 된다는 결론이었어요. 다만 칼로 찔른 것에 대해서 정당방위라고 보기에 너무 과잉된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로 처벌을 받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위법한 행정이 들이닥쳤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여기까지는 정당방위고 이걸 넘어서면 과잉 방어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분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피하는데 어느 정도 저항은 인정하는데 그 이상을 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 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사전 동의라든지 단속 인권 보호 준칙을 벗어난 무리한 행정 및 단속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폭행은 고의였을 텐데 수사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을 처벌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몰라도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위법한 집행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충분히 폭행이고 그것으로 인해 다쳤다면 상해죄도 성립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국가배상을 뛰어넘어 공무원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희정 : 대구, 경북을 넘어 경주의 담당 출입국이 울산이거든요. 경주 외동공단에 울산 출입국관리자가 자주 찾아옵니다. 경주 외동공단은 산 위에 위치해 있어서 단속이 있을 때 도망치다 태국 여성이 8주 된 아이가 유산되기도 하고 계속 떨어져 죽고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몇 년 전에는 울산 출입국에서 스리랑카 분이 다리가 부

러진 적이 있었고 당시에 항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면담 투쟁을 진행했었습니다. 출입국 문을 밀고 2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이 선택했던 결과가 뭐였냐면 그 해당 단속반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직을, 전근을 시키더라고요. 다시는 이 지역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거나 상황을 이렇게 무마시키는 적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토론문에도 적기는 했는데, 단속 계획서 가 사실상 공개되지 않고 민사소송 정도 해야 그나마 그걸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부분 처벌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처벌받았다는 얘기 못 들었고 국가 배상도 거의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미등록 노동 이주민 자체가 불법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화된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출입국과 법무부가 처벌 대상라고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하고, 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법을 넘어선 투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법으로 우리가 처벌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을 좀 더 더 모으고 미등록 노동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롯데 택배 건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단속하는 과정에서 척추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업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출입국이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치료를 받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동안 일상적인 대응을 해왔던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원에 데려다주고 이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묻고 그 다음에 처벌 문제로 가는 것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전국 지역의 단체들이 좀 더 연결되어 실천적인 연대체가 만들어지는 게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도중에 최정규 변호사님께서 채팅창에 관련된 사례들 올려주셨거든요. 판례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리 :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랑 딱 연결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단속반원이 나올 때 업주가 피하라 미리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나서 말을 청했습니다. 제가 아는 미등록 이주민을 10년 이상 고용해서 가족처럼 지내는 사장님도 계시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고용하는 것이 실제로 출입국 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채용 자체가 그래서 사업주 처벌하는 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법에 저촉이 되는 건데 그 사람한테 피하라고 하면 산재로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합법과 불법/비법 사이에 이런 것들이 정말 모순적이고 일관적이지 않고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조금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최정규 : 일단은 출입국 관리법 자체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 특히 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주들도 벌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게 약간 기준이 있더라고요. 몇 명을 고용했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고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의 기준표가 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실제로 2천만 원 벌금을 내시는 분도 봤어요. 그렇다고 실형이 선고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망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게 산재와 연결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정 동지도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지요. 노동부의 기준이 바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오히려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런 지시를 좀 내렸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든요. 현실에서는 산재라도 인정받아야 어찌 됐든 다친 경우에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거나 휴업급여도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모순적이고 복잡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슬기 : 지금 채팅창에 남은 질문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한 10분 정도만 더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지금 살펴보니 최현숙님께서 미담을 전해 주신다고 해서 이왕이면 마지막에 희망찬 이야기를 듣고자 마지막에 부탁을 드리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슬로우 리턴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수연 님 그리고 최현숙 님 순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슬로우 리턴 : 최정규 변호사님과 김희정 지회장님 오늘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찾아 온 많은 분들이 난민이나 이주 노동자 문제에 관련되어서 활동하고 계실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쓰이고 관심이 있는 정도여서 공부할 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주 기초 기초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님께서 맨 발표문을 보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그것이 사업장 이탈의 자유를 주는 제도적인 변화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업장 이탈의 자유를 제한할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김희정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등록 이주는 무엇일까? 외국인 체류자들이 미등록으로 전환되는 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고용허가제도, 유학생 기타 비자 등의 순이고 그중에서 고용허가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글을 보면 사업장 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미등록 체류자들을 많이 양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그렇다면 사업장 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만약에 그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 또 사업장 이탈의 자유가 허가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면 죄송합니다.

최정규 :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얼마 전 지게차에 묶인 외국인 노동자 영상이 이슈가 되고 이어 대통령 한마디 하고 뒤이어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고 그리고 도지사까지 등장하니깐 결국에는 사업장이 바뀌었다고 하죠. 사실은 이른바 VIP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사업장 못 바꾸고 그냥 이탈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거

나 아니면 미등록으로 전락하거나 하는 등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이미 박탈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고용노동부가 지정 알선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업장에서 이탈하는 사유를 그리고 이탈할 횟수를 지금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사유,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도 모든 임금 체불은 안 되고 몇 퍼센트 이상 2회 이상 체불돼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사용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이탈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세팅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의 이익을 위한 부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그런 이익이 과연 문명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이익인가예요. 자본의 입장에서 열악한 환경이든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든 임금을 좀 안 주더라도 이탈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사업주의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갑자기 중소기업에서 뛰쳐나와서 대기업을 간다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국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뻔한데, 그러면 이 사업장을 이탈한다는 게 중소기업 전반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도 꼭 반대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탈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게 얼마나 반문명적인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허용되는 이익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어찌 됐든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조금 한다고 하니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21년 동안 고용 허가 제도는 이탈하는 자유를 박탈하고 유지해 왔던 반문명적인 제도였고 점점 이제야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정 : 한편으로 노동부가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을 막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실제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의 상당수가 노동자들이 일을 기피하는 업종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이주민들의 저임금을 통해서 노동력을 더 많이 쥐어짤 수 있다는 것이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기술력은 젊으니까 더 많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계속 옮기지 않고 기술력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건 자체가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이 뽑고 4년 10개월 이후에는 돌려보내거나 그러니까 4년 10개월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겠죠. 고용허가제 제도라는 것 자체가요.

이수현 : 미등록이주민이 체포당하는 상황에서 출입국사범 단속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경우 단속반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좀 그 사이에 조사를 해봤는데 실은 요구는 할 수 있는데 단속반에서 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참여자 여러분들 모두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단속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주자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교육하는 일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는지 여쭙보고 싶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혹시 아는 게

게시다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현숙 님의 미담 어서 듣고 싶네요.

타 리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곧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슬기 : 그와 관련해서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에서도 단속 중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외국인 보호소와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나중에 채팅창으로 또는 메일로 관련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 : 미담 하나를 전하고 싶었어요. 아까 심아정 님도 이것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측면으로 보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온 20대 노동자 한 분이 고열 상태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한국인 노동자들은 너무 고열이었기 때문에 1시까지 일하면 되는데 이주 노동자들은 5시까지 일을 했다고 그래서 해당 당사자가 화장실 앞에서 아마 쉬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었어요. 공유한 것을 보고 아마 조계종 쪽인가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 쪽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장례의 장을 만들어 놓고 페이스북에 알렸어요. 저도 안타깝워서 올렸었고 그런데 제 페이스북을 본 폐친 한 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돈을 좀 보낼 테니까 이분과 관련된 어떤 곳에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저기를 뒤적뒤적하다가 사회노동위원회에 전화도 하고 등등 하다가 성서공단 노조가 이주 노동자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찾아내고 혹시 김희정 지회장님과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돈만 보내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통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후원금을 보내드렸어요. 저한테 돈을 보내신 그분께 마음 써줘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언급한 분이 바로 김민수 님이었어요. 이주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오히려 어려움을 같이 겪고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 자신이 이 정도 작은 돈을 보내는 게 부끄럽다고 하면서 잘 전달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아마 지회장님과 통화를 하고 그걸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김민수 씨 건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 기사를 읽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제게 돈을 보낸 한명석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마음도 움직였고 여러 정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 :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채팅창에 많이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김솔비 님께서도 이제 초등학교에서라도 초중고교에서도 이주민 인권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항상 피상적으로 세계시민이 되자 라는 문구만 접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정 님께서도 폭력적인 단속 사례들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 연합/연대가 절실하네요. 이 부분 오늘 와주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직접 말씀을 청해 듣지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잘 진행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직접 더 많이 듣고 이야기 나눌 수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5강**

<체류가 아닌 삶, 성원권을 인정하라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과 함께 사는 미래


사회 : 슬기(트랜스보더링랩)

발표 :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토론 : 강슬기(의정부 엑소더스)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5강 (8/11) 

체류가 아닌 삶, 성원권을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과 함께 사는 미래




인권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인권이 후퇴하면
다른 분야의 인권도 함께 후퇴한다
따라서 모든 존재의 권리에 대해
전반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발표자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5강 (8/11) 

체류가 아닌 삶, 성원권을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과 함께 사는 미래



국적으로 인해 생기는
차별적인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뭔가 새로운 것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정책의 대상을
국적자로 한정하지 말고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자 강슬기(의정부 엑소더스)

체류가 아닌 삶, 성원권을 보장하라

발표_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체류가 아닌 삶, 성원권을 보장하라 - 이주아동·청소년과 함께 사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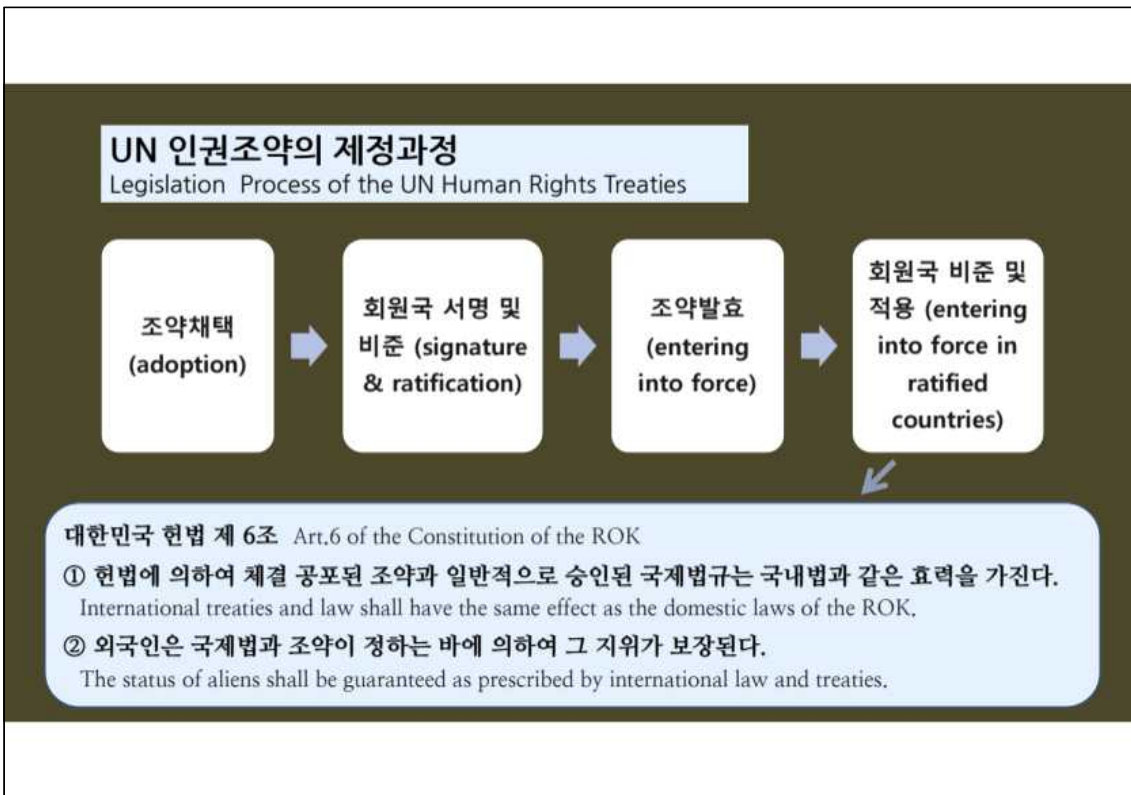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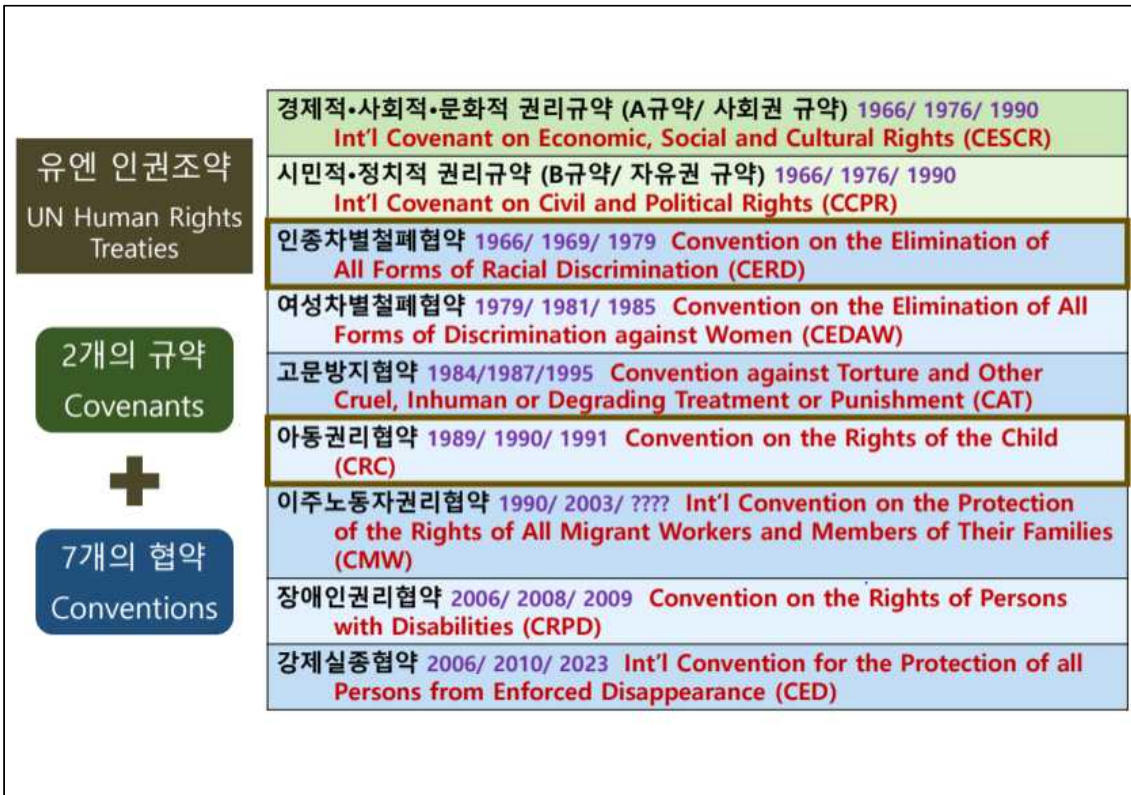


이주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한국 국적 없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18세 미만)과 청소년(9세~24세)

이주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상황

- 국내 출생 vs. 중도입국
- 등록 vs. 미등록
- 외국국적 vs. 무국적
- 보호자 동반 vs. 보호자 미동반
- 미취학 vs. 재학 vs. 학교 밖
- 국내 성장 vs. 해외 성장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두 가지 원칙

1. 비차별: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 국적,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2.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

1. 생존권: 출생등록을 할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2. 보호권: 학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과도한 노동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4. 참여권: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사생활 보호 등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 운동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2014.4.3.)**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20
----------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발의
(2014.12.18.)**

발의연월일 : 2014. 12. 18
 발 의 자 : 이자스민·심상정·김성곤·
 우상호·양광영·이한성·
 정병국·김영우·윤명희·
 장윤식·송영근·심재철·
 이정현·강창희·홍일표·
 이인재·이만우·인재근·
 이병석·박영선·김태년·
 황인자·홍문종 의원
 (23인)

제안이유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6천여 명에 이르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 [1913120]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자스민의원 등 23인)



• 심사진행단계



•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1913120	2014-12-18	이자스민의원 등 23인 제안자 목록	의안원문	제19대 (2012-2016) 제33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6천여 명에 이르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열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생등록조차도

Membership

Meeting of States parties/Elections

Upcoming elections for all treaty bodies

Basic documents

Convention

OP on Sale of Children

OP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CMW-CRC Joint General Comment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n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MW) have issued their Joint General Comment (JGC)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Joint general comment will seek to provide guidance to States parties to both Conventions on the situation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cluding:

- Children that migrate with their parents who are migrant workers;

Meetings and deadlines

Sessions

Calendar of country reviews by

Universal human rights index

Publication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작성을 위한 제안서 제출 공고
(2015.12.)**

제안 배경: 이주아동들이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국가들의 법과 정책에 이중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주민 또는 출입국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 아동을 배려하는 시각이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동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 이주아동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States parties reports

List of issues (LOIs)

Replies to LOIs

Concluding observations

child labour).

Following a call for submiss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zero draft, the Committees have decided to hold consultations to ensure that the perspectives of States, United Nations agencies and entit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with respect to this issue are raised, discussed and reflected in the draft for further consideration by both Committees.

conflict

SRSG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UNICEF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작성을 위한 제안서 제출
(2016.2.29.)

Submission for the CMR-CRC Joint General Comment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Brief Summary

The Network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Migrant Children in Korea (hereinafter "Network") is composed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public interest lawyer groups that have been working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migrant children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by conducting research, calling for policy improvements and legislative changes, and engaging in public litigation. The present submissio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migrant children living in the ROK, identifi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preventing the full real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nd includes proposals and sugges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drafting of the Joint General Comment. The Network hopes that the Joint General Comment can urge all States Parties, including the ROK, to take practical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principles.

February 29, 2016

Network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Migrant Children in Korea



CMW-CRC
공동 일반논평
- 일반 원칙
(2017.11.16)

United Nations

CMW/CGG3-CRC/CGG2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istr.: General
16 November 2017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Joint general comment No. 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2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general
principle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 Introduction

1. The present joint general comment was adopted at the same time as joint general comment No. 4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untries of origin, transit, destination and return. While that general comment and the present one are stand-alone documents in their own right, the two complement each other and should be read and implemented together. The drafting process included a series of global and regional consultations held between May and July 2017 with representatives of key stakeholders and experts, including children and migrant organizations, in Bangkok, Beirut, Berlin, Dakar, Geneva, Madrid and Mexico City. In addition, the Committees received more than 80 written contributions from States, United Nations agencies and entit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other stakeholders from every region of the world between November 2015 and August 2017.

CMW-CRC 공동 일반논평 - 일반 원칙

전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가는 이주아동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아동으로 대해야 함2. 국가는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이주아동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비차별2.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 고려3. 심문 청구의 권리 보장4. 의견표명 및 참여의 권리 보장5.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보장6. 강제 송환 및 집단적 추방 금지

CMW-CRC 공동 일반논평 - 당사국의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1. 18세 미만으로 판명된 아동은 아동으로 보호, 18세 이상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호2. 아동 또는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아동을 범죄자 취급, 처벌, 구금하는 것 금지3. 모든 행정적, 사법적 과정에서 아동친화적, 인권 기반의 방법으로 적법절차 준수, 사법접근권 보장4. 출생 즉시 등록되고, 이름을 갖고, 국적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5. 가족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아동이 가족과 분리되지 않도록 보호,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반해 가족의 재결합 보장6. 착취, 아동노동, 납치, 인신매매 등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7.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 최저연령 및 아동에게 허용되는 노동조건 준수, 사회보장 권리 보장8.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보장9.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보장10.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 보장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재 21 **사람이야기**

2000.04.20

불법체류자 자녀들 학교에 갑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들도 국내 학교에 정식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이들 자녀들의 학교 입학을 관행적으로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은 사설학원을 전전하거나 학생이 아닌 '청강생'의 자격으로 겨우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학교와 교육부를 오가며 동분서주했던 정금자(31·전 성남외국인 노동자의 집 간사)씨의 노력으로 얼마 전 불법체

류자의 아이들도 정식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됐다.

'외국인 자녀들이 입학할 때마다 학교쪽은 서류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 등)를 요구했는데 불법체류자이다보니 서류증명서가 없어 늘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법전을 뒤지다보니 두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해도 입학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 정씨는 이런 규정을 근거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고, 지난 3월 '입학시킬 수 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런 정씨의 노력으로 '청강생'이었던 경기 성남시의 아이 5명은 '학생'이 됐고, 서울에서도 한명이 정식으로 입학하는 기회를 맞았다. 정씨는 활짝 웃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참 잘했구나'란 생각을 했다고 한다.

UNITED NATIONS 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 GENERAL
E/CN.4/2001/SR.9
20 June 2001
ENGLISH
Original: FRENCH


COMMISSION ON HUMAN RIGHTS
Fifty-seventh session
SUMMARY RECORD OF THE 9th MEETING
Held at the Palais des Nations, Geneva,
on Friday, 23 March 2001, at 10 a.m.

32. Mr. CHUNG Eui-Yong (Republic of Korea) Migrants were very often the target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in a number of regions. Illegal migrants were the most vulnerable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must work in intolerable conditions. Since coming to power in 1998, President Kim Dae-jung had made the defence of human rights one of his priority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e rights enjoyed by legal foreign workers had been extended to undocumented workers to provide them with a social safety net and the children of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had been allowed to attend primary school.

UN 사회권 위원회 회의 (2001.03.)

한국 정부 대표 (정의용):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 보호를 국내외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 그 결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UNITED NATIONS 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 GENERAL
E/C.12/2001/SR.12
31 January 2002
ENGLISH
Original: FRENCH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wenty-fifth session
SUMMARY RECORD OF THE SECOND PART (PUBLIC)* OF THE 12th MEETING
Held at the Palais Wilson, Geneva,
on Monday, 30 April 2001, at 3 p.m.
Chairperson: Mrs. BONDAN-DANDAN

CONTENTS

CONSIDERATION OF REPORTS

(d)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tinued)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42. Mr. CEAUSU noted furthermor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agreed, “for humanitarian reasons”, to enroll the children of foreign workers in primary school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ights of children were, regardless of their parent’s status, rights erga omnes, in other words universally binding obligations, which meant that any State was obliged, from the moment it became aware of a child’s presence on its territory, to guarantee that child the protection and enjoyment of all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venant. Therefore, there was no reason for the State party to refer to humanitarian reasons; it was simply fulfilling the obligations it had incurred under the Covenant.

UN 사회권 위원: “모든 국가는 그 영토에 아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 아동이 유엔의 인권조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보호받고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들먹일 이유는 전혀 없다. 이는 단순히 조약 비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35호, 2008. 2. 22., 일부]

초등학교 입학 법적 근거 마련
(2008.2.22.)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2.>

②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42호, 2010. 12. 27., 일부]

중학교 입학 법적 근거 마련
(2010.12.27.)

제75조(귀국학생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귀국학생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관해서는 귀국학생등의 초등학교 입학 등에 관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는 "중학교"로, "제17조 및 제21조"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2. 27.]



2010.09.07.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지원방안

□ 초중학교 재학중의 불법체류 아동 : 묵시적 체류 허용

- 단속 자제 및 본인 희망시 최장 만15세 또는 중학교 과정 수료시까지 강제 출국유예

※ 단속·보호된 부모는 출국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일시해제 등을 활용하여 한시적 체류허용

□ 교육공무원의 통보의무 적용 유예

-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교육현장에서의 성공적 시행 및 UN아동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유예



불법체류 아동 학습권 관련 설명자료

- 법무부는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초·중학교 학생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는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10. 9. 7.)」 지침을 고등학생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고,
- '12. 10. 5. 출국한 몽골 고등학생 Davaadorj Bilguun(18세, 남)에 대하여도 국내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허용하기로 함.

■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보장 확대

- 초·중학. 경우에도 **그러면 다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졸업시까지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을 고등학생에 대하여도 적용
- '12. 10. 15.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초·중등학교에서 불법체류 학생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84조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한 이후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시행 예정



“저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난민 아동입니다.
장애인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는 못 나가고 있어요.”



“아빠는 고문 후유증으로
어깨 수술을 받았어요.
엄마는 동생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를 데려다
줄 수 없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타법개정]

-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된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3. 「재한외국인 최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 1. 26.]

난민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목 :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드리는 질의

수 신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발송일자 : 2016년 6월 7일(화)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서 발송
(2016.6.7.)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 공문 및 질의서는 난민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의 22개 시민사회단체와 법률가단체가 공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 장

원 고 발로츠 미르 (Baloch Meer)
부산 사상구

피 고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2017.2.24.)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게 한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17.4.26.)

제 목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난민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장애인이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에 난민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바람.
2. 난민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 유

1. 권고의 배경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보장 현황 모니터링'에서, 뇌성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급여 등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는 장애인 등록 신청 대상자의 범위에 난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법」 제31조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장애인이 실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난민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라 「난민협약」이라 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등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장애인 등록 제도와 활동지원 사업의 개요

부 산 지 방 법 원

1심 패소
(2017.6.9.)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0683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 발로츠 미르 ~~구합20683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피 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부 산 지 방 법 원

1심 패소
(2017.6.9.)

제 2 행 정 부

판 결



“난민인정자에게 구체적인 입법조치 없이 [난민법 제31조와 같은 일반규정만으로] 장애인 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가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일부 외국인에 대하여만 우선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48
----------	------

발의연월일 : 2017. 6. 12.

발 의 자 : 권미혁·김종민·김종대
남인순·박재호·윤소하
윤관석·강훈직·박경미
표창원·김상희·인재근
안호영·정춘숙·한경애
백혜련·송옥주·최운열
서형수 의원(19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17.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각종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그 등록 대상을 외국국적동포와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및 결혼이민자로 한정하고 있음.

부 산 고 등 법 원

2심 승소
(2017.10.27.)

제 1 행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22336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7구합20683 판결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9.자 장애인등록거부처분과 2017. 1. 26.자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심 승소
(2017.10.27.)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난민은)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한 피해자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 인해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피해자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규정, 위와 같은 난민법 취지에 부응하여 돌아갈 고향과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난민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고 권고하고, 국회에서도 장애인 등록 범위에 난민인정자와 가족을 포함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난민 인정자에게 난민법 제30조, 31조에 기한 구체적 권리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침 개정 (2018.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활동 지원급여 제외 대상임.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KOR/CO/5-6

Distr.: General
24 October 2019

Original: English

장애가 있는 이주아동에게 교육, 보육, 보건의료 서비스, 건강 보험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생계와 주거에 대한 지원을 할 것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C/KOR/CO/2-3

Distr.: General
6 October 2022

Original: English

장애가 있는 이주민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사회보장에 접근할 권리

다양한 복지서비스 복지로서
복지 복지로서
 한번에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월 7일(목) 회의 종료 후 보도

배 포 일 2018. 6. 7. / (총 4 매)

보건복지부	과 장	정 경 실	전 화	044-202-2710
보험정책과	담 당 자	유 미 란		044-202-2706
법무부	과 장	이 덕 롱		02-2110-4055
체류관리과	담 당 자	김 명 훈		02-2110-4062
국무조정실	과 장	진 재 훈		02-3703-2054
부패예방감시단	담 당 자	정 진 필		02-3703-2055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

-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시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

이주민 가입자 차별

-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전년도 평균보험료 중 높은 쪽 부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제외)
-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을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
- 미성년 세대주에게도 보험료 부과
- 보험료 체납 시 즉각 급여 중단, 출입국 심사 불이익





“한 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키웠어요. 출입국에서는 추방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보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건강보험도 따로 들어야 하지만 괜찮아요. 대학도 보낼 거고, 성인 되면 귀화도 신청해볼 거예요.”

납부의무자 김

납부자번호(전자납부번호) 3011-11

납부할 금액 (세+공) 3,930 원 납부 기한 2019.01.10. 까지

구 분 건강 보험료(세) 장기요양 보험료(공)

보 험 료 3,660 원 270 원

연체금대상할 금액 0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2019년 2월 건강 보험료영수증 (납부자용)

Contributor 김 [redacted] 문의전화: 1577-1000

납부의무자 납부자번호 3011-11

Contribution Due 납부할 금액(세+공) 226,100 Won Due date 납부기한 2019.01.25 까지

Health Contribution(세) 건강보험료 (1) 208,380 Won

Long term Contribution(공) 장기요양보험료 (2) 17,720 Won

Place of Payment: Bank, Postoffice, NACF(Nonghyup), NFO(Saehui), KPOC, NACUFOK, Security Company, Payment by Website(www.giro.or.kr)

납부장소: 각 은행, 우체국, 농·수협(농협조합 포함), 세무실 금고, 신협, 증권사, 인터넷(www.giro.or.kr)

In case that contribution payment is not made by the date, you can call our call center (033-811-2000). We acknowledge receipt of the amount above.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전화(033-811-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Year Month Day 2019년 01월 10일

수납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자동이체신청 납부자번호: 3011-11

**전국 68개 인권노동이주 단체들,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 ◆ 6월 7일 발표,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하는 이유
 -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하면서 가입 요건은 강화
 -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규정 유지로 저소득층 또는 실직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은 여전히 유지
 - 건강보험 지역가입의 공백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허가, 당면가입 사업장이라도 감독 및 제재조치가 없는 현실에 대한 개선 대책은 없어
 - 지금도 구비할 수 없는 서류 요구로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본국 외교부 확인까지 받아야
- ◆ 재재 조치와 처벌 강화보다 실질적인 건강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요구
 1. 직장건강보험 당면가입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여부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고용허가 발급 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
 2. 결혼, 유학 외에도 장기체류가 확실한 체류자격 보유자에 대해 입국 혹은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라!
 3.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서 내·외국인간 차별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라!
 4. 이주민이 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개약방안 반대 성명서 발표 (2018.6.18.)

**제목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드리는 질의**

수 신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 보건복지부 장관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법무부 체류관리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사단
 발 신 : 이주와 인권연구소 외 70개 시민사회단체
 발송일자 : 2018년 7월 12일(목)

3.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 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하면서, 체류기간 요건은 강화하고 차별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하는 한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체납해 주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안은 오히려 이주민의 의료보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서 발송 (2018.7.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제2018-556호	예고기간	2018-08-29~2018-10-08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제2018-557호	예고기간	2018-08-29~2018-10-08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보건복지부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18.8.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 개악반대 공동행동

10.08. ACTION DAY!!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2018.10.8.)

 보건복지부		<h2>보도참고자료</h2>	
배 포 일	2018. 10. 26. / (총 15매)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과 장	정 경 실	전 화	044-202-2710
담당자	유 미 란		044-202-2706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연장(3개월→6개월), 지역가입자 동일 세대 구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 외국 공문서는 해당국 외교부 공식 발생 문서만 인정 -

- 보건복지부(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2018.10.26))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에서 건강보험 개정안 문제 제기 (2018.12.3.~4.)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C/KOR/CO/17-19

Distr.: General 10 January 2019

Original: English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2019.1.10.)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특히,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자격,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가입 허용

이주민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결과

Table with 3 columns: 개정안 내용, 제출자의견요약(수정안), 검토 결과. It details the proposed changes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committee's findings regarding foreign residents and children.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2018.12.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결과

개정안 내용	제출자 의견(수정안)	검토 결과
나.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안 제61조의2)	○ 개정안(최소 체류기간 연장 반대) - 필요 거주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부당함 - 6개월로 변경시 최소한 3개월의 건강보험 공백기간 생김 - 늘이기 보다는 3개월 이상 거주 할것이 명백한 이주민에 대해서 입국한 날 지역가입 허용하고 그 외는	○ (불수용) 국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고 가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하여 진료만 받고 탈퇴 하는 사례 빈번 - 고액 진료일수록 체류비용 대비 진료 가입 시 급여 혜택이 커 진료목적 일시입국 방지에 한계 - 지역가입자 최소 체류기간 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2018.12.11.)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1) 「개선방안」이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이주민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 이유로 제기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일시 가입하여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한 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보험가입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및 지급된 보험급여비는 얼마나 되는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분리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등 건보적용 실태점검(국무조정실 합동) 결과 확인된 주요 사례 참조

적발 사례	보건의료부장관 질의서(2018.07.12)에 대한 회신 (2019.1.14.)
외국인 (지역가입자) 진료목적 가입	외국인 건강보험 상실 (59000만원 공담부담에 반세)
외국인(피부양자) 진료목적 입국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 가입 27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공포 (2019.1.15.)
⇒ 시행 (2019.7.16.)**



○○ 보육원에서 생활 중인 김△△ 군(만 9세, F-1)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 2018년 12월 고지서

납부자번호(전자납부번호)	3011	11
납부할금액 (국·보)	3,930 원	납부 기한 2019.01.10. 까지
구 분	건강 보험료(국)	장기요양 보험료(국)
보 험 료	3,660 원	270 원
연차관리상환		
연 체 금	0 원	0 원

* 납부할 금액은 당월보험료와 잔월보험료, 자의납부로 일괄계산된 연체금의 합계입니다.
 *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한 경우 지연입수에 대한 연체유은 다음 달 보험료에 포함하여 고지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수납인

• 2019년 2월 고지서

2019년 2월 건강	Contribution Receipt for a pair
Contributor 김	납부자번호 3011 11
Contributor No. 김	납부번호 3011 11
Contributor (Health Contribution) 226,100 원 (₩)	Long term Contribution (Long term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17,720 원 (₩)
Health Contribution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208,380 원 (₩)	Long term Contribution (Long term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17,720 원 (₩)

* Place of Payment: Bank, Postbox, MACH Hospital, NETS/Inquiry, VCC, WAC/POK, Security Company. Payment by Website: www.gni.go.kr
 * 납입소: 은행, 우체국, MACH 병원, NETS/문의, VCC, WAC/POK, 보안회사. 인터넷 납입: www.gni.go.kr
 * 납부기한: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은 2019년 01월 10일입니다. (국·보)
 *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연체(033-811-2000)로 문의하십시오.

2019년 01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수납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 2019. 7.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18

[별표 2] <개정 2019.7.11.>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제6조제2항 관련)

3. 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 가.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난민인정자의 가족 자격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
 - 나.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거주(F-2)(「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
 - 다.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지역가입자로서 영 제76조의4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그 출국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할 때까지 단독으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그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2.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 이후 최초로 부담해야 하는 달의 보험료액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③ 법 제109조제9항 단서를 적용받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미성년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OPINION

김사장의 는

건강보험 이주민 차별, 현재로 간다

김사장 이우와 인문연구소 연구위원

— 12월 — 13월 —

올해 7월부터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미 직장가입은 의무였으니, 이번 조치는 사실 직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지역가입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건강보험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청직 당사자인 이주민들은 전혀 반기는 눈치가 아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지역보험료 때문이다.



내국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지역보험료로 부과된다. 그런데 이주민의 경우 이렇게 계산된 금액과 전년도 평균보험료 중 높은 쪽이 부과된다. 올해 기준이 되는 전년도 평균보험료는 11만3050원이다. 지역가입 대상이 되는 이주민 대부분은 직장이 불안정하고 소득도 낮은 노동자들이다. 실직 상태에 있는 이들도 있다. 당연히 보험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함께 사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묶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개인으로 하나의 세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헌법소원 제기 (2019.10.11)

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위원회국공공포럼특별위원회

국회토론회 (2019.10.30)

개정된 무엇이 문제인가?

11월 30일 10:30(이) 10:30
장소 국회이화여대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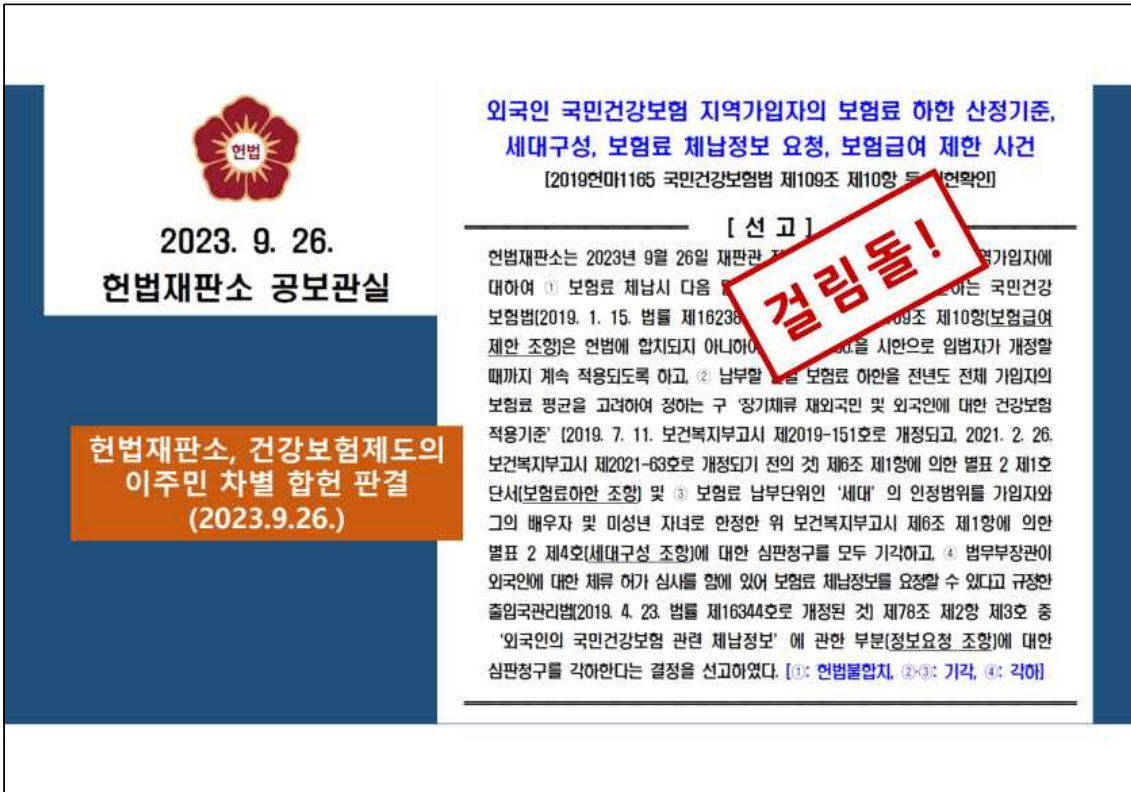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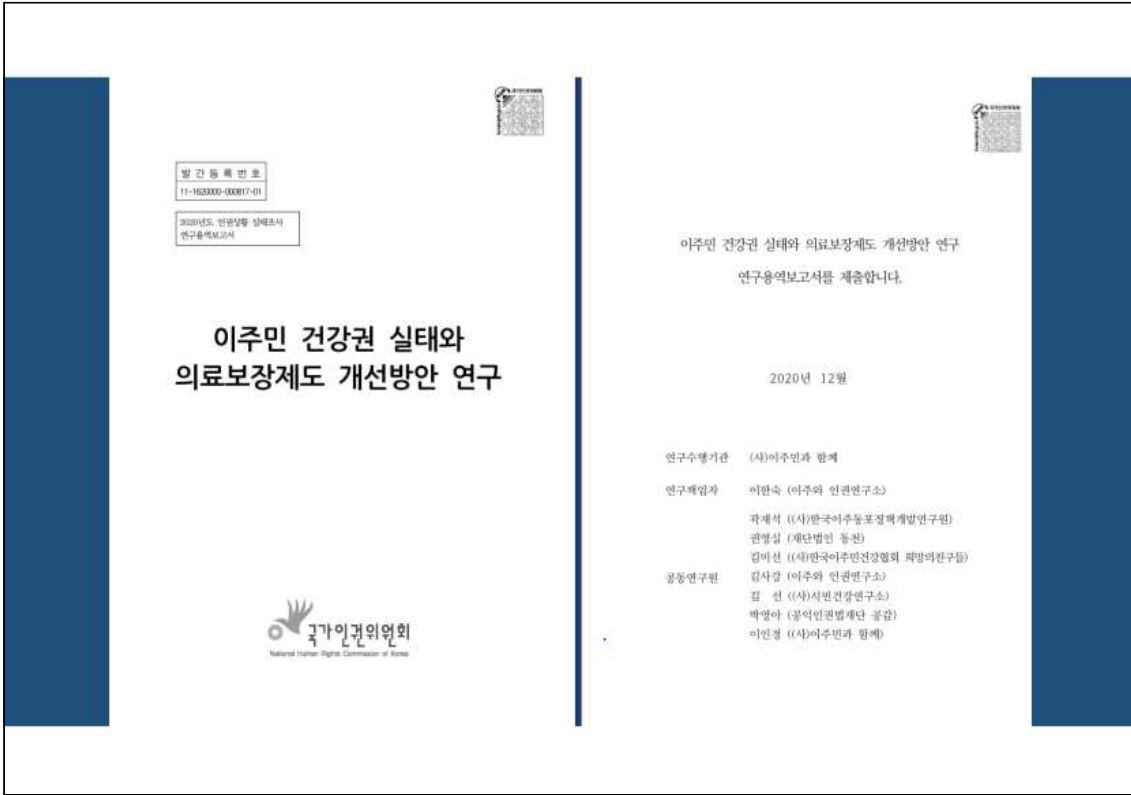
건강보험제도

11월 30일 10:30(이) 10:30
장소 국회이화여대 대회의실

-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 피해사례 -



박지현, 김진영, 박옥산, 김사강, 광채석, 권영순, 김민철, 성백길, 김민철



보험료 하한 차별 합헌: “외국인은 국내에 소재한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여 내국인 등 지역가입자와 같은 기준으로 파악된 재산과 소득에 근거하여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실제의 경제적 형편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보험료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실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 외국인은 비록 국적을 선천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처럼 국적이나 체류자격은 연령·인종처럼 불변하는 생물학적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으므로 보험료하한 조항이 국적 내지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취급을 하였다든 이유만으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대구성 차별 합헌: “내국인은 세대주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거를 이전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의 가족과 동거인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은 개인별로 외국인등록을 한다. 따라서 현재 구비되어 있는 제도로는 외국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 입법자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확한 가족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족구성의 일반적인 형태[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소가족]에 따라 유형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등록제도의 미비점, 한정된 행정력의 한계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

보험료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2] <신설 2025. 4. 15.>

보험급여 제한 예외 체류자격(제76조의6 관련)

체류자격(기호)
1. 기업투자(D-8)
2. 교수(E-1)
3. 연구(E-3)
4. 기술지도(E-4)
5. 전문직업(E-5)
6. 거주(F-2)

비고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스무살이 넘었는데 아직 고등학교에 다녀요. 연년생 동생도 성인인데 고등학생이고요, 중학교 다니는 막내만 미성년자예요. 부모님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라 저희 셋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건강 보험료 독촉
Contributor No. [redacted]

Payer No. 납부자번호 [redacted]

Contribution to Pay 납부 금액 (₩) **549,520** Due date 납부 기일 **2025.06.25** 까지

Contribution	Health Contribution (H)	Long term Care contribution (L)
Health Contribution (H)	472,680 ₩	61,150 ₩
Arrears	13,920 ₩	1,770 ₩
Arrears for disposition (Arrears for disposal)	0 ₩	0 ₩
Total	486,600 ₩	62,920 ₩

Overdue period 납부 기일: 2025. 01 - 2025. 06 (6) 2025. 01 - 2025. 06 (6)

납부 QR 코드

Using QR code, the payment is available via Kakao Pay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자동이체신청납부자번호 : 30283005299

Contributor Receipt for a payer

납부 기일: 2025년 06월 10일

납부 금액: 549,520원, 총 체납개월: 6개월

No: B7980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에 따른 재산압류 진행 통보】

-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병·의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각종 체류허가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체납되어 부득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예금통장, 임금,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며 예금압류 시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개월 수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나고 자란 곳에서 살아갈 권리







2017년 4월 13일
나이지리아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F씨
충북 청주시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에 적발,
강제퇴거명령 받고
청주외국인보호소 구금

F씨 인적 사항

1999년 서울 출생
2011년 서울 ○○ 초 졸업
2014년 순천 ○○ 중 졸업
2017년 순천 ○○ 고 졸업

고교 재학 시 용접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 취득

수 신 : 법무부 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참 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발 신 :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항소자제요청서
(2018.5.28)**

요 청 서

존경하옵는 법무부장관님께,

최근 법원에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한 취소 결정 (청주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구합2276)을 받은 [redacted] 와 그의 가족의 사정을 살펴 주시어, 귀부가 항소를 자제해 주시길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설명 자료]

- 법무부는 [redacted] 군 사건(소송)과 관련하여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18. 6. 9.자로 등 사건은 확정되었음.
- 이번 결정은 [redacted] 군 개인의 특수한 제반사정 - [redacted] 군의 경우,
 - ①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아무런 법위반 없이 장기간 합법체류 중 있었던 점,
 - ② 9년 이상 합법체류하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사유(父의 강제퇴거)로 불법체류가 된 점,
 - ③ 국내에서 출생한 후 지금까지 한번도 외국(나이지리아 포함)에는 출국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친척을 만난 적도 없고, 나이지리아의 고유 언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점,
 - ④ 국내에서 초·중·고를 졸업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규범, 지식, 문화를 습득해 온 점,
 - ※ 초등학교 재학 시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리수 음수대 돌보미 어린이 홍보대사」로도 활동했고, 후견인이었던 초등학교 양호교사는 [redacted] 군이 매우 단정하고 문벌력이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학생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순천남산중학교 재학시에도 예외가 비르고 선행사실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받았고, 순천공고 재학시에도 공영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수회 받고 **외부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으며, 특히 3년 내내 개인하여 **개인상을** 받은 사실도 있음.

**항소포기 설명자료
(2018.6.9)**

- ⑤ 고등학교 재학중 **3개의 국가기술자격증**(특수응용기능사, 컴퓨터응용산업기능사, 용접기능사 등)까지 취득하는 등 매우 성실하게 살아온 점,
- ⑥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방황하거나 나쁜 길로 가지 않았으며, 3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에서 알 수 있듯이 **독자적인 생계유지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점,
-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천식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등 인도주의적인 고려도 필요한 점,
- ⑦ 출입국관리법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체류실태가 비교적 건실한 점(순천△△클럽 회원 및 순천△△교회 교인, △△초등학교 교사 등 **수백명의 국민들이 [redacted] 군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여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
- ⑧ 지금까지는 한국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본인의 굳은 각오가 있는 점,
- ⑨ 국내에서 12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증까지 취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한 [redacted] 군을 무척정 내보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경청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특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이번 결정은 [redacted] 군 개인의 특수한 배경과 요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억제, 단속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불법 고용주 및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처벌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불법체류억제 및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적법하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가 그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체류자격을 잃게 된 사람에 대한 **인권적·인도적·경제적 관점에서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원고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오직 대한민국만을 그 지역적·사회적 터전으로 삼아 살아 온 사람을 **무작정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내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대한민국은 국내에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원고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12년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성장한 원고를 이제 와서 내보내는 것은 그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감안할 때 [국가적인] 큰 손실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원고와 같은 사안에서 **국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 필요성이 크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

보 고 서



**실태조사
(2019.5.~11.)**

contents

- 000 목차
- 006 여는 글
- 009 I. 사업 개요 및 진행경과
 - 010 1. 사업개요
 - 011 2. 진행경과
 - 017 3. 실태조사 내용 요약
- 045 II. 실태조사를 통해 본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현실
 - 046 1. 미등록 이주아동과 청소년
 - 112 2.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의 부모
 - 164 3. 유관기관 및 단체 종사자
- 205 III. 미등록 이주아동 정규화 관련 해외 입제도 현황
 - 206 1. 해외 입제도
 - 256 2. 국제규범
- 265 IV.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 271 함께 한 분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703100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인권위 진정 결정
(2020.3.31.)**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들과 같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되,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직접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적절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법무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법무부 구제대책 발표
(2021.4.19.)**

특시 보도

총 6쪽 / 사진 없음

4. 19. (월)

(02-2110-4075)

담당부서

담당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사무관 박수완 (02-2110-4082)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정부 체류자격 부여 - 국내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경우, 4년간 한시 시행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범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
-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원벌칙금액 및 납부시기별 벌칙금액 >

납부시기별 부과 금액	출국기한 이내			불법체류 전액*		
	원벌칙금의 70% 감경	원벌칙금의 60% 감경	원벌칙금의 50% 감경	원벌칙금의 30% 감경	감경없음	
	통지일 -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 1년 이내	1년 초과 - 출국기한 이내	출국기한이 지나 자진출국 시	단속 시	
1개월 미만	20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40만원	200만원
1-3개월	300만원	90만원	120만원	150만원	210만원	300만원
3-6개월	400만원	120만원	160만원	200만원	280만원	400만원
6개월-1년	700만원	210만원	280만원	350만원	490만원	700만원
1-2년	1,0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3년	1,500만원	450만원	600만원	750만원	1,050만원	1,500만원
3-5년	2,000만원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1,400만원	2,000만원
5-7년	2,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1,250만원	1,750만원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2,100만원	3,000만원

제 목 :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드리는 질의

수 신 : 박범계 법무부장관
참 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일 자 : 2021년 5월 17일
발 신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1. 안녕하십니까. 본 질의서는 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이주아동 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질의서 발송
(2021.5.17.)**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
진정사건에 대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
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마련 이전이라도 현행 법·제도상 가능 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
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3. 2021년 2월 22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출생 장기불법체
류아동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으로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중·고
교 재학 중 또는 고교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아동의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한정
했습니다.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관련 ‘이주아동 네트워크’ 질의에 대한 회신

’21. 6. 4.(금) 법무부 이민조사과

1. 시행방안의 취지

이번 대책은 한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아동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국내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자칫 아동이 불법이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법체류에 대한 국민의 범감정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것입니다.

법무부회신
(2021.6.4.)

이를 위해 정책 대상을 국내 출생으로 한정하고 15년 이상 국내체류를 요건으로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이 불법이민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 신청요건 관련

아동의 국내 출생 입증서류나 유효한 여권은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이나, 부득이하게 이러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 출생 사실과 그 신분을 소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주간경향 OPINION

2021.06.07 | 주간경향 1430호

[오늘을 생각한다]미등록 이주아동 대책 재고해야

지난 4월, 법무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강제퇴거를 유예한다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암묵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받아왔다. 하지만 학교를 벗어나자마자 강제퇴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암울한 현실 아래서 살아야 했다. 그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번 구제 대책이 반가워야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 국내 출생, 15년 이상 거주,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구제 대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스물아홉 살 청년 A는 다섯 살 때 한국에 왔다.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한국에서 마쳤고, 25년 가까이 한국에 살았다. 그러나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번 구제 대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주아동 B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B는 곧 만 열다섯 살이 돼 가파스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때지만 초등학교 동생들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반면 두 살 때 한국으로 이주한 스물한 살 청년 C는 한국에서 태어나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생들만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에 장기간 거주한 이주아동은 한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돼 있고,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유대관계도 없어 본국에 돌아가면 적응이 어렵다. 무엇보다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체류자격 없이 살게 된 것은 아동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구제 대책 시행의 배경이다. 그렇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할 대상이 반드시 국내 출생 미등록 이

칼럼 기고
(2021.6.7.)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인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법무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아동 구제대책 시행 관련 간담회 개최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에서 '21.4.19.부로 시행 중인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1. 7. 27.(화), 15:00 ~ 16:00
- 장 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1동 513호)
- 참석자 : 시민단체 대표 등 4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참석인원을 4명 이하로 최소화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간담회
(2021.7.27.)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윤유 지원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나는 이들에게서 운명을 마주하는 힘을 배웠다."
『쓰기의 말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윤유 신작!

Chapter 4
살아갈 권리

<https://youtu.be/KeRk7LSseqw?si=CsbFv8KxvcnPd3d>



법무부 보도 자료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법무부 구제대책 개선안 발표 (2022.1.20.)

특시 보도	총 4쪽(붙임 2쪽) / 사진 없음
2022. 1. 20 (목)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5)	담당자 사무관 주재봉 (02-2110-4082)

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 국내출생자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입국자 등도 대상에 포함, 체류기간 요건도 15년에서 6년 또는 7년으로 완화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2. 2. 1.부터 2025. 3.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 (확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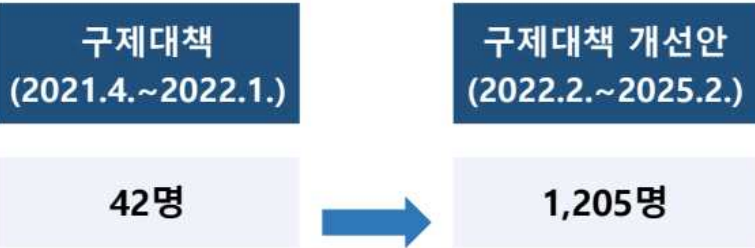
-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아이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Gqn9udioXxA&t=26s>

구제대책으로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



2021년 기준,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 **3,196명** 고교졸업자를 포함해 체류자격을 받은 이주아동 **총 1,247명**

→ 교육부 추산 3,200명 (재학생), 법무부 추산 3,434명 (18세 이하), 이주인권단체 추산 10,000~20,000명을 감안할 때, 70~90%은 여전히 미등록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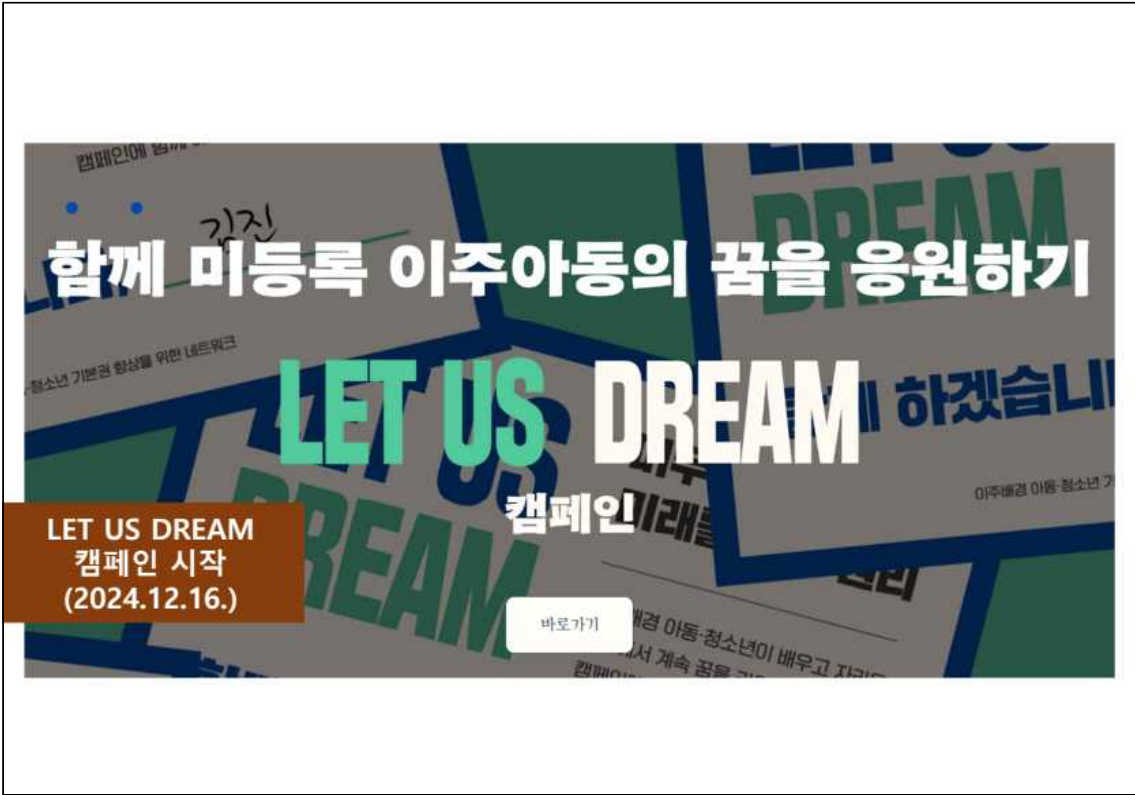
| 일시 | 2024. 11. 04(월)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제1회관 1층)
| 주최 | 국회토론회, 이주인권단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시간	세부 일정
14:00~14:10 (10분)	개회식
14:10~14:30 (20분)	1.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과 문제점 소개 및 해결방안 발표 (이주인권단체 대표) /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ICEF) 소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14:30~14:50 (20분)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ICEF) 소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ICEF) 소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14:50~15:10 (20분)	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ICEF) 소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ICEF) 소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15:10~15:30 (20분)	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ICEF) 소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 8.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ICEF) 소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15:30~15:50 (20분)	9.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ICEF) 소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 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ICEF) 소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15:50~16:00 (10분)	종료

국회토론회 (2024.11.4.)

당사자 기자회견 (2024.11.16.)





**법무부 구제대책
관련 비공개 간담회
(2025.2.27.)**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법무부

민생·법치행정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관련 간담회 참석 요청

1. 평소 출입국·외국인정책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 '25. 3. 시행 종료 예정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대한 제도 연장 여부 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자 명단을 '25. 2. 25.(화)까지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장소: 2025. 2. 27.(목) 15:00,정무과전충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1동 717호)

참석

-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주*책, 이민조사과?체류관리과?이민통합과 사무관, 수도권 체류업무 담당자(서울?인천?수원?양주) 등
- (관계기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도 교육청(수도권), 인권단체(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등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5.3.12.)**



**법무부, 구제대책
연장 및 국내 성장
청소년에 대한 취업·
정주 방안 발표
(2025.3.20.)**

법무부 보도자료 *당시 대한민국! 이토록 국민의 아너*

보도사건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3. 20.(목)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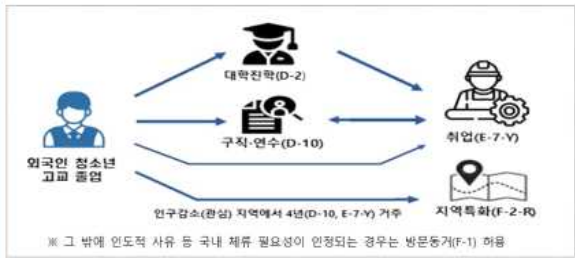
1.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정주 허용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다 -
2.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 '25. 3. 31. 종료 예정이던 제도를 '28. 3. 31. 까지 연장 시행 -

□ 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정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먼저,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 발표 내용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우선, ①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②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③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합니다.
 - *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할 예정
-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연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ERD/C/KOR/CO/20-22

Distr.: General
9 May 2025

Original: English

ADVANCE UNEDITED VERSIO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2025.5.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twentieth to twenty-second periodic reports of Republic of Korea*

1. The Co
of Republic of
3150th meeting
3160th meeting

당사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비시민권자의 장기 체류자격 및 귀화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

미등록 체류 중인 이주민에게서 태어난 아동과 청소년에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로를 제공하여 체류자격 또는 귀화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장기체류 비등류 이주아동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제 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하였던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 동
 - 가. 국내의 학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재학 중인 사람
 - 나. 국내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다. 국내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 중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 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해당 시험을 준비하려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모.

3.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황환경 또는 가족관계를 고려 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의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받은 체류자 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의 심사기준은 법무 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23조”를 “제23조 또는 제24조의2”로 한다.

제10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3(벌칙금의 연기·분할납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5년의 범위 내(다만,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중 5년의 범위 내)에서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할 벌칙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벌칙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제2항 중 “나이의 환경”을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의 유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

함께 해주십시오. letusdream.campaignus.me



※ 추가 참고

공유한 영상자료 및 기사

<https://youtu.be/KeRk7LSseqw?si=XUAKC6M8FmFqkLqN>

<https://mihu.re.kr/activities/taivan-obituary-24111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70517/84394866/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517/90136259/1>

강태완님이 체류자격을 얻기까지, 그리고 결국 산재로 사망하기까지의 기사 공유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5516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63748.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200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200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66921.html>

결에서 바라본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현재

발표_강슬기(의정부 엑소더스)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을 만나오며 현장에서 겪은 같이 고민하고 싶은 문제점들을, 특히 발표문에서 다룬 장애를 가진 이주아동 그리고 구제대책을 신청한 또는 신청과정에 있는 이주아동의 사례를 통해 공유

사례 1.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제도에서 배제된 미등록 이주아동

▶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선정배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보호자의 장애인정에 대한 거부감, 경제적 부담, 심리적 어려움 ↳ 담당교사: 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판단, 한국어수업 안내
---------	---

▶ 특수교육 활동지원 및 관련 서비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근거/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음)

특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교(또는 유치원) 내 특수학급 •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사 수업 • 특수학교 배치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만 5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파견? ↳ 치료진행이 어려운 아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 교사의 000에 대한 두려움 ⇒ 천주교 운영 아동무로돌봄시설에서 진행(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가서 받는 방법도 있었으나, 차량 25분 거리)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등 교육 관련 비용 전액지원? ↳ 일반유치원의 경우 수업료는 여전히 ⇒ 특수교육 포기
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월 15만원? ↳ 치료 월 4회 기본, 1회 치료비 5만원 시작 ↳ 발달단계에 따른 복합적이고 맞춤형 치료가 필요 ⇒ 언어치료 1개만 받고 있음 • 치료비 마련하면 갈 수 있나? ↳ 통학버스 없는 심리상담연구소 ↳ 치료시작 시간 14:10, 학기 중 학교 픽업 > 연구소 이동 / 심

	<p>글맘 가정, 어머니 업무로 인해 픽업 어려움</p> <p>⇒ 1년 째 센터 자원봉사자와 활동가들이 동행 중</p>
<p>통학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통학버스 이용? ↳ 학교에 배정된 예산에 따른 버스운영,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 담당교사의 희생(수업 마친 후 버스운영시간까지 개인 돌봄)

사례 2. 구제대책, D10/E7-Y 관련 어려움

▶ 신청의 어려움 (OO출입국에만 해당)

<p>본국 출생등록에 대한 증빙, 서류준비의 어려움</p>	
<p>여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이 없거나 만료되었다면 발급 또는 재발급 필요 ↳ 난민아동인 경우 ↳ 어린 동생들의 경우 ↳ (나라별로) 출생등록 확인서 요청하기도
<p>가족관계 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증명서 ↳ 보호자의 이름이 여권과 출생증명서 상에서 다른 경우 ↳ 여권발급장소 표기가 다른 경우 ↳ 재혼가정의 경우 ↳ 입양가정의 경우
<p>신청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의 소요기간</p>	
<p>소요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부터 1년 이상 ↳ 생계유지는 어떻게(신청 중에 취업한 경우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부과) ↳ 신청인이 특성화고 2학년에 재학 중이라면
<p>신청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p>	
<p>체류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체류 6-7년이 되지 않는 경우 ↳ 중도입국 자녀 고등학교 졸업하고 1-2년 후 7년이 된다면?

▶ 보호자와 자녀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

<p>신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미등록체류, 출국기한유예, 보호일시해제 중이었던 사람들 ↳ 취업의 어려움 > 가정의 빈곤 > 생계유지 우선 > 자녀교육 지원 기반마련? ↳ 구제대책 범칙금 마련 ↳ 외국인등록이 되어도 취업의 어려움 ◇ 이주아동의 한 달 용돈
<p>지원정책 (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교통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 > 외국국적 청소년에게도 확대 ↳ 지역화폐로 지급 • 청소년 교육비(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외국국적 청소년/청년 배제

▶ 고등학교 졸업 이후

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출국 현실 ↳ 출국 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체류자격 연장 가능? 	
대학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능력입증 ↳ 장학지원은 없이 민간지원만 • 대학교에서 노숙
	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 체류 > 불안, 우울 • D10/E7-Y로 가기 전 구제대책을 먼저 신청해야
	졸업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7-Y 실제 취업의 어려움(24세 이상 신청X) • (D10/E7-Y 신청요건이 되는)G1-6의 경우 • 대학원 진학 고려

⇨ 신청 시 서류 완화의 필요성

⇨ 이주아동/청소년을 위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청소년당사자, 도의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요청됨. 기존의 한국 정부에서 마련한 아동/청소년 정책의 개편 필요. 대상을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에서 더 넓혀갈 필요가 있음.

⇨ 그나마 체류자격을 가질 기회의 길이 열렸음. 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현실. 이미 취약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서 출발. 직업교육이나 기술 자격증을 갖는 등의 기회는 얼마만큼 이들에게 열려있는지도 살펴봐야 함. 이런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비, 생활비 등의 지원제도가 같이 가야 함.

이러한 길을 걸어온 이주아동이 한국사회에서 소속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 2024년 11월 기자회견,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만든 피켓

내가 만난 이주아동, 어렸을 적부터 한국사회로부터 배제와 낙인, 소외와 차별을 경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일상에서 매일매일 겪고 있는 미세차별로 피로하고 정체성의 혼란도 느낌. 국내 성장 아동이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한국사회의 경계인으로(교육, 임금,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에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어릴 적부터 누적) 사회적 위축을 경험. 하나가 해결 될수록 더 많은 상황에 봉착하는 상황. 이미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위축된 삶을 경험해왔고, 보호자의 지위가 자녀의 지위가 됨. 이주배경에 따라 계속 주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가 어려움.

이주아동/청소년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한국사회에서 스스로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체류자격의 안정화뿐만이 아닌 더욱 세심한 정책적 고려와 사회안전망이 함께 주어져야 할 것.

서로가 '당신'과 '우리'로 분리되고 격리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램.

질의응답

이슬기 : 현재 채팅창에는 질문보다는 의견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이야기들이 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앞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소회나 생각들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에밀리 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에밀리 : 제가 막 분노에 분노하면서 국적 취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제 신상과 관련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꼭 국민의 자리를 강요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이런 댓글을 남기면서 한편으론 스스로 너무 한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있지만 아무튼 저한테 되게 중요한 현실이고 문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우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으면 국적을 취득하지 왜 안 하느냐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을 못하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은 사실 제가 겪는 모든 불편함이기도 하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겪으면 안 되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적을 취득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과 행정,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는 불편함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라는 권유를 하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슬기 :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이름을 언젠가는 ‘사회건강보험공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썼군요. 아마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에밀리,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순남 선생님과 최현숙 선생님께서도 채팅 창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직접 얘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김순남 : 이 강의를 듣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 공부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토록 복잡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자 체계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도 출생 증명서와 출생 등록은 다른 거잖아요. 아까 강슬기 선생님께서 출생 증명서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또 이주민 같은 겨우 미등록된 상태 자체가 출생 등록하기 힘든 상태인데, 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만 출생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 신분이 된다는 것이 이주민에게 출생을 등록하는 순간부터 일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자본주의와 인종 차별의 논리가 결합되어 서슴없이 강행되는 의료시스템, 의료보험이나 수급제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행위로 포장되어 이야기되는 방식 또한 분노의 게이지를 높이고 있네요. 이 자본화된 인종 차별 논리들을 접하게 되면서 김사강 선생님의 건강보험에 관한 부분을 주요하게 싸움의 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커플의 의료보험 소송과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확장하는 여러 소수자의 의제가 연결되고 있는데 그 고리 중 하나가 의료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는 자리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덧붙여 이런 건강보험의 싸움이 어떻게 좀 더 교차적으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지 오늘 들은 지점과 만난 게 중요하게 느껴져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더 듣고 싶습니다.

김사강 : 이주민 건강권 관련해서 활동을 진행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기 시작했던 게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한 것이었어요. 이주민에게도 건강보험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의무화가 되면서 이렇게 사람 잡는 건강보험이 될 줄은 몰랐죠. 건강보험이 없었을 때도 그렇지만 건강보험이 생긴 이후에도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안 내면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내야 해요. 하지만 막상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병원비 낼 돈이 없어지는 거지요.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을 더 내야 하잖아요. 애들 분유 사고 기저귀 사야하지만 일단 건보료를 먼저 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타깝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 이주민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무화를 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 세수, 즉 재원 확충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주민을 가족 전체로 묶어서 가지 않고 가능한 각각 개별 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이 보험료 수입이 낮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공단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 이주민이 자기 소득만큼 보험료를 내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가 너무 작다 보니 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라고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공단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보험 재정을 확충해야 하고 케어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장성을 높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그 보험료를 몇 프로라도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생길 테니까, 이주민들을 의무 가입을 시키고 보험료를 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소득이 별로 없는 가족 단위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 별 수입이 안 되니까 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개별로 부담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의무화 이전까지 이주민 건강보험 관련 재정은 적자였다가 19년 의무화 이후로 수입이 5천억이 넘었고 지금은 거의 6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은 6조, 7조, 8조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인구의 등록 이주민이라고 하면 2%나 3% 정도 되려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8조 적자에 5천억 흑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건강보험 가입을 더 확대시켜 달라, 미등록 이주민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건가? 이 보험료 내려다 이 사람들 허리 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 또한 어찌할 바 모르는, 진토양난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의무가 발표 이후에 건강보험 차별 대응하는 공동모임이 생겼고 같이 연구도 진행하고 토론회와 기자회견도 하고 싸울 때마다 빠지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현재 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 안 되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법무부보다 복지부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

기들 월급에서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조그마한 틈새가 만들어지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건보도 얘기할 때 복지부 사람들 만나면 댓글을 가져와서 보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어떻게 더 확대하고 이 사람들에게 소득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내라고 하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이주민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건 복지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복지부의 그 첫 번째 보도 자료의 제목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혐오를 조장한 거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면 요즘 사람들이 무슨 조장을 한다고 조장이 되나요? 되돌아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핑계 대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조금씩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정말 오래 더디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주 아동 체류 문제 9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넘게 걸린 거거든요. 사실 건강보험도 의무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의무화 이후로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고 그런지 아직 4,5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앞으로 10년 이상 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이라는 원칙까지 무시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라면, 게다가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혐오를 이용하는 분위기에서는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언제나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슬기 : 말씀해 주시는 사이 에밀리 님이 채팅창에 글을 남겼습니다.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한국에서도 내고 국적국에 또 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국가 간 행정적인 협력을 그렇게 게으르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혹시 이외에 또 이야기 나눠주시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남수리 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듯 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실까요?

남수리 :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권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유아나 아동들에게도 어떤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지, 그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라면 원비가 부담될 텐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김사강 :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과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이것도 오랫동안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유아 학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인가 3년에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어쨌든 교육부에서 유아 학비도 지원을 하자라고 결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후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입장은 다릅니다. 지자체에 따라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도 하고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기도 하고. 유아 학비가 지원되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이주민들도 많다고 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폐합되거나 폐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주 아동은 지원이 안 되니 아마 유보 통합론과 함께 논의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주민의 영유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어린이집 지원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전액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에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 기초에서 전체적으로 한 2-30만 원 정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양육자가 부담하게 되어요. 만약에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보통 어린이집 보내면 보통 40~50만 원 정도 부담해야 해요. 그것도 어린이집에서 할인해주어서 그 정도 내는 거고 대략 아이가 둘이면 100만 원 정도가 되니 사실은 못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현재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같은 건 없었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과 안 보내는 비율이 5:5이거나 4:6으로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국적의 아이들의 경우 90%이상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이주민의 경우 40~50% 정도밖에 다니지 못한 현실이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본 적 있습니다. 지난 국회나 이번 국회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는 되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보건복지부가 담당이라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슬기 :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유보 통합에 대한 것까지도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지점에서 제도나 정책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김지림님께서 조금 일찍 나간다고 하면서 채팅 창에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강제 추방되었다가 구제 대책 대상이 되어 간신히 돌아오고 결국 불안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성인 이주 노동자로서 다시 위험한 현장으로 몰려 결국 산재로 돌아가신 태화 님의 삶에 우리 사회 이주민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 그 모든 과정에 더해진 사강님과 활동가들의 노력도 함께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두 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고 이야기 나눠 주셨습니다. 사실은 대강 알 때도 화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더 너무나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 다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마침 지금 채팅 창을 통해 백숙희님께서 “이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경로 알려주시면 오늘의 슬픔과 분노를 담아 후원을 보내겠다”고 어떻게 활동에 동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두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사강 : 일단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백숙희 님의 이야기에 답을 하자면 후원도 감사합니다. 실은 변화를 위한 활동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줘야지 그나마 조금씩 이렇게 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주민을 혐오하는 사람들이나 이주민 인권 같은 것은 제일 나중에 고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현재로서는 훨씬 더 큼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훨씬 크게 체감되고요.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법이 발의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뭉치는 사람들 또한 혐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핑계 삼는 의원들도 겁을 먹고 철회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든 힘을 모으는 것도 그 사람들입니다.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우리가 반대편의 그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나? 그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법안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서로 연결되어 연대하여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더 많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자리가 돌돌돌 판결문에 관한 자리였지만 제가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별로 안 했지만, 솔직히 물론 좋은 변호사나 판사들도 많지만 이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이주민들은 자신의 체류, 즉 삶을 걸고 싸우거든요. 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난민 인정자들 또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가 난민 인정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가지면서도 용기를 내서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내서 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슬기 : 김사강 선생님께서 너무 멋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같이 연대해서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을 주셔서 좋았습니다. 이주민 운동을 하면서 한 이슈로 저희끼리만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모두의 연결과 연대가 필요한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 이주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 등 많은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큰 연대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주민 및 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때 그들의 목소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자리도 너무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기 :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주의 위기, 여성의 위기, 여성 난민 신청자의 몸과 삶>에 관한 이야기 자리가 진행되니까 다음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6강**

이주의 위기, 여성의 위기 -여성난민신청자의 몸과 삶


사회 : 슬기(트랜스보더링랩)

발표 : 김연주(난민인권센터)

토론 :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공간지킴이)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6강 (8/18) 

**이주의 위기, 여성의 위기
여성 난민신청자의 몸과 삶**




여성 난민 인정자 대부분은 배우자를 따라와 가족으로 결합된 사례이다
여성이 독자적인 젠더 박해 사유로 난민임을 인정받아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발표자 김연주(난민인권센터)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 6강 (8/18) 

**이주의 위기, 여성의 위기
여성 난민신청자의 몸과 삶**



난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저 한국에서 살도록 허락하는 것만이 아니다
재난적 상황에 봉착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가 있다

발표자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이주의 위기, 여성의 위기_여성난민신청자의 몸과 삶

발표_김연주(난민인권센터)

1. 들어가며- 여성난민신청자의 이주와 젠더박해

(1) 의미와 쟁점

젠더란 각 성별에 사회적·문화적으로 부여된 정체성, 지위, 역할, 책임 등에 기초해 형성되는 개념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가리킨다. 반면, 성별은 생물학적 결정에 기반한다. 젠더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불변의 것이 아니라, 규범과 의미가 변화하는 가변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난민신청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난민신청에 있어 젠더 관련 사유는 남성·여성 모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박해 유형의 특성상 여성에 의해 더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³⁴⁾에서 젠더박해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난민신청자는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특수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강제 가족계획, 여성할례, 사회적 관습 위반에 대한 처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젠더 특유의(gender-specific) 폭력이 '젠더박해'로 정의된다.³⁵⁾ 이러한 폭력들은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국가의 반응이 미흡하거나 적극적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여성에 대한 박해는 강간, 강제 임신, 여성할례, 강제 결혼, 명예살인, 특정 복장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³⁶⁾

법적 해석 측면에서 젠더박해가 난민의 정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젠더가 구체적 난민사유로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전통적으로 난민협약(1951)은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의 5가지를 난민사유로 열거하며 젠더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기 난민 심사는 남성 경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의 박해가 간과되거나,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으로 난민의 정의는 남성의 경험을 반영해 해석되는

34)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젠더와 관련된 박해> (이하 'UNHCR 지침'이라 한다) 3항

35) 민지원,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의 '젠더'박해: 북한여성의 난민자격 가능성을 중심으로, 2003 여성학논집 제20집 (2003), 10면

36) 오승진, (2009). 난민여성의 보호 - 난민협약상 사회집단의 구성원개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33(1), 434-435면

경향이 강했고, 그 결과 여성과 성소수자의 난민신청은 인정받기 어려웠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국가 관례, 판례, UN, 학계의 연구를 통해 성별과 젠더에 대한 인식과 법적 해석이 발전하고 있다. 젠더는 난민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신청인이 겪은 박해와 피해 유형 및 박해의 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난민협약의 정의를 성인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젠더 관련 난민신청도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³⁸⁾ 일부에서는 젠더를 명시적으로 난민협약의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단일 카테고리에 환원시키며 오히려 주변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과 적극적 해석을 통한 확장적 접근이 대립하고 있다.³⁹⁾

여성에 대한 폭력과 박해는 대부분 사적 영역에서 발생 하지만, 국제법의 보편적 인권 개념에서는 이러한 사적 영역의 권리침해가 배제되거나 은폐되는 문제가 있다.⁴⁰⁾ 많은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및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위반보다는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⁴¹⁾ 실제 난민 중 여성과 아동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난민협약 체결국에서의 인정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여성 난민 신청자 수의 저조함과 더불어, 난민협약 및 각국의 국내법이 여성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⁴²⁾

국제난민법과 정책 역시 젠더 관련 난민신청의 긍정적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 발전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취약하다.⁴³⁾ 국제사회는 인권법과 기준을 위반하는 유해한 관행이 역사, 전통, 종교, 문화적 근거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⁴⁴⁾ 앞으로 젠더박해에 대한 법적·정책적 해석을 심화하고, 여성난민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는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37) UNHCR 지침 5항

38) UNHCR 지침 6항

39) 오드리 맥클린 (Audrey Macklin)은 젠더를 박해의 이유에 첨가한다면 여성에 대한 모든 박해가 젠더의 문제로 환원되어 결과적으로 주변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법문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주장했다. 민지원, 위의 논문 5면

40) 민지원, 위의 논문 6면

41) 오승진, 위의 논문 435면

42) 오승진, 위의 논문 435면

43) 유럽의회 정책 브리핑(EPRS), “The gender dimension of asylum claim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25.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67209/EPRS_BRI\(2025\)767209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5/767209/EPRS_BRI(2025)767209_EN.pdf)

44) UNHCR 지침 5항

(2) 젠더박해의 주요사례

젠더박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국제사회는 여성폭력철폐선언을 통해 젠더 특유의 폭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왔다. 선언에서는 강간, 성고문, 여성성기훼손(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강제낙태, 강제불임, 배우자 강간,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 심각한 차별 등을 대표적 젠더박해로 지적한다.

특히 성폭력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로, 성희롱과 강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1995년 '난민에 대한 성폭력 가이드라인'은 성폭력을 '모든 형태의 성적 위협, 공격, 방해, 착취'로 규정하며, 이는 가혹하고 비인도적·굴욕적인 처우 금지 및 안전권, 생명권 등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⁴⁵⁾

가정폭력 역시 심각한 젠더박해로 인정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며,⁴⁶⁾ 친밀한 파트너가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폭력의 유형이기도 하다.

또한 법이나 관습 위반에 따른 박해적 차별도 젠더박해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강제결혼은 가족, 공동체의 관습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가피하게 강요되며, 특정 복장 규정 위반에 따라 심각한 형벌(대표적으로 이란법의 차도르 미착용에 대한 채찍질 등)이 가해질 수 있다. 여성성기훼손(FGM) 자체도 국제적으로 박해적 관습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강제불임, 강제낙태는 정부 정책 목적과 무관하게 인권 침해의 박해로 간주된다.⁴⁷⁾

또한 법이나 관습 자체가 박해적이지 않더라도 실제 적용이나 집행 방식에서 차별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해당 법의 집행과정에서 젠더박해가 발생하기도 하며, 본질적으로 박해적이지 않은 법 조차도 젠더박해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⁴⁸⁾

45) UNHCR, Sexual Violence Against Refugees: Guidelines on Prevention and Respons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1995. 3. 8.

1.1 성폭력의 정의 및 본질 : 성폭력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무력 충돌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서 인정하는 개인안전권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성폭력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폭력은 피해자와 그 가족,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입히며, 일부 지역에서는 난민 이동 등 강제 이주의 원인이 되고 있다. (1993년 제73차 집행위원회 결의 제44차 본회의 전문) (중략) 본 지침에서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모든 형태의 성적 위협, 공격, 간섭, 착취를 포괄하는 데 사용하며, 이는 '법정 강간'과 신체적 피해나 삽입 없는 성추행도 포함한다.

4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호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7) 민지원, 위의 논문, 13-14면

48) 민지원, 위의 논문, 15면

2. 젠더박해와 난민 요건 검토

(1) 난민요건 일반

첫째, 난민 신청자는 국적국 밖에 있을 것. 이는 난민 신청자가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거나 무국적자여야 함을 의미한다. 박해로 인하여 출국해야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 체류 중 국적국의 상황 변화로 박해 우려가 발생해도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난민 보호의 취지는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받을 박해에 대한 미래지향적 보호에 있다.

둘째, 박해는 난민협약상의 5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해야 한다. 이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이다. 여기서 '국적'은 단순히 시민권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통해 규정된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므로 '국적 또는 민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은 협약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난민을 포함할 수 있는 유연한 개념으로 보며 성소수자, 젠더박해를 피해 온 여성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셋째, 난민협약상의 사유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박해'의 정의는 없지만, 국제인권문서가 위해의 심각성 및 유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박해를 받을 우려'는 난민이 과거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사람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미래지향적 보호 개념이다. 따라서 과거에 박해를 받았더라도 국적국의 상황이 변하여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박해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한다. 유엔난민기구와 해외 판례는 난민 신청인이 두려워하는 해악이 실제로 발생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즉, 신청인의 두려움이 합리적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법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번역되어 있고, 난민들에게 박해의 우려를 '충분히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난민은 급히 피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젠더 박해의 경우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여 문서화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엄격한 입증 요구는 난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난민인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난민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심스러울 경우 신청자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국적국의 보호가 부재할 것**을 요한다. 이 요건은 난민협약의 취지가 ‘대체적 보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박해의 주체가 국적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미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것이므로 이 요건은 쉽게 충족된다. 그러나 비국가 행위자가 박해의 주체일 경우에는 국가가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젠더박해 사례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난민요건

1) 박해사유

가. 난민협약상 박해사유와 젠더 관련 난민신청

난민협약이 명시한 박해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젠더와 관련된 난민신청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박해의 사유가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사회나 종교적 관행 위반에 근거한 박해는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의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UNHCR 지침 23).

인종 박해는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해자가 남성인 경우 해당 인종 집단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살해, 불구, 감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여성인 경우 인종이나 종족적 정체성을 전파하는 존재로 보아 성폭력이나 생식통제 같은 방식으로 박해를 가할 수 있다(UNHCR 지침 24).

종교 박해 역시 성별에 따라 역할과 행동 규칙이 다르게 부과된다. 여성은 자신에게 부과된 종교적 규율을 따르지 않으면 종교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UNHCR 지침 25). 특히 젠더 관련 난민신청에 있어 종교와 정치적 의견 사유가 겹치는 경우도 많은데, 종교 교리에 반하는 행동이 정치적 의견으로 간주되어 박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종교, 국가기구, 법률, 교리 구분이 모호한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UNHCR 지침 26).

나. 특정사회집단구성원신분

난민협약은 젠더를 명시적 박해 사유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난민협약의 5가지 박해 근거 중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은 젠더,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한 박해사유를 포괄하는 역할을 해왔다. UNHCR의 집행위원회는 사회 관습 위반으로 비인간적 처우를 받은 여성 난민신청자가 '특정 사회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젠더 관련 신청은 보통 이 범주에서 다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 사회집단 사유에만 집중해 종교, 정치적 의견 등 다른 사유 적용 가능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즉, 특정 사회집단 사유에 근거한 해석이 다른 사유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UNHCR 지침 28).

특정 사회집단은 박해 위험 외에도 공통된 내재적 특성이나 정체성을 공유하거나 사회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는 개인들의 모임이다. 이 특성은 보통 불변이거나 핵심 정체성, 신념, 인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UNHCR 지침 29), 성별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은 내재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하위집단의 한 예로, 남성과 달리 흔히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여성은 사회에서 독립된 집단으로 인식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법적·사회적 기준이 적용된다(UNHCR 지침 30).

대법원은 특정사회집단을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꿀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박해를 난민 인정 사유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은 말레이시아인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본국에서 형사처벌 등 박해를 받은 사건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을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보았다. 여성 할레 피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성 할레가 여성의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주는 위해행위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정 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국적국 보호의 부재

가. 사인에 의한 박해

난민 인정을 위해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난민 신청자가 자신의 국적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젠더박해의 경우, 박해 행위자가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 같은 사인(私人)인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의 보호 가능성 여부가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난민 정의에 따르면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모두를 박해의 주체로 인정한다. 전통적으로 난민법은 국가에 의한 박해를 주로 다루었으나, 젠더박해는 가정폭력, 명예 살인, 인신매매 등 주로 사적 영역에서 사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사인에 의한 박해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적국이 해당 박해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국가의 묵인, 무의지, 무능력 등을

포함한다.⁴⁹⁾

서울행정법원은 우간다 여성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남편의 폭력이 사인에 의한 폭력이므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에 의해 폭력에 대한 처벌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되는 사적 영역에서 사인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난민 인정의 '박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나. 실질적 보호가능성

국가의 보호는 단순한 법적·제도적 존재뿐 아니라, 그 보호가 실제로 효과적이고 입증된 경우에 한정된다. 국가 보호 가능성은 법률과 제도의 존재 유무가 아닌, 그 보호가 피해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유효하고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피해자가 국가 기관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법률은 있어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사회적 차별과 낙인 등으로 보호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민 인정 요건 중 국가 보호가능성은 단순히 해당 국가에 법률이나 제도가 존재한다는 형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한 국가가 (예를 들어, 여성할례와 같이) 박해의 성격을 지니는 관행을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가 현재에도 그러한 관행을 묵인 또는 허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는 경우 그 관행은 여전히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해의 성격을 지니는 특정 관행을 금지하거나 규탄하는 법률이 도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난민 신청이 정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UNHCR 지침 11).⁵⁰⁾

국제연합난민기구(UNHCR)의 국제보호 지침과 유럽연합(EU) 난민 인정 지침, 그리고 다수의 판례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국가 보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보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 국가 기관에 접근하여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젠더 관련 박해의 경우 직접적 가해자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드물지 않은

49) 박해는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현지 주민이나 개인이 행하는 심각한 차별이나 다른 위법행위에 대해 당국이 고의로 용인하거나, 당국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박해로 볼 수 있다(UNHCR 지침 19).

50) 국가가 정책적 또는 관행적으로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심각한 학대에 대해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차별적인 보호 제공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박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또는 성적 지향의 차이로 인한 학대 사례 등을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UNHCR 지침 15)

데, 이 때 여성이 처한 박해상황은 가족 간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고, 이는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면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난민신청자가 실제로 처한 위험을 간과하기 쉽다. 난민신청자가 경험한 폭력이나 위협이 해당 사회와 문화에 뿌리 깊게 박힌 성차별적 관습이나 관행에 기반을 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확인은 추측이 아닌 객관적 국가정황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제결혼이나 여성할례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성차별적 관행에 기인 한다면 사법기관이 그러한 사회적·문화적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추정은 오히려 픽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과 법률에서 남녀평등을 규정하거나 여성할례나 강제결혼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험에 처한 여성이 실제로 사법기관에 접근하고 실효적 구조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실제로 처벌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법 집행력이 낮고, 부족 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또는 관습적 규범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 법률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거나 박해의 위험이 없다는 결론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⁵¹⁾

대법원 또한 튀르키예 난민 신청 사건에서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폭력 금지법이 제정되었더라도 "여성 폭력에 대한 보호의 구조적 한계 등이 남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존재한다"고 밝혀, 형식적인 법 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다.

다. 국적국 내 대안적 피신가능성

'국적국 내 대안적 피신가능성(Internal Flight Alternative, IFA)'은 난민 신청자가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이다. 이는 난민협약에 명시된 요건은 아니지만,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대안적 국내 피신이 유효하려면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난민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박해 우려가 없어야 하며, 셋째,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보호 수준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법원은 대안적 국내피신 가능성을 판단할 때, 피신 가능한 해당 지역을 주장하는 행정청(출입국)이 특정하여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 판례

51) 박영아, "여성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놓였지만 국제적 보호는 요원하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4. 2. 22.

에서 국적국 내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는 행정청(출입국)의 막연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현저히 낮은 국가의 경우, 박해하는 가족이 여성의 유일한 생존 자원이 될 때가 많다. 설령 조력자가 있더라도 대체로 일시적이다. 따라서 여성 난민이 박해자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피신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여성 난민이 자신이 속했던 사회 관계망을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피신 후에도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성착취 등의 상황에 처한다면 이는 국제적 보호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볼 수 없다.⁵²⁾

3) 박해

여성과 남성 신청인이 동일한 형태의 위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성별에 특수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법은 성폭력 등 특정 행동을 해당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행동이 박해에 이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자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을 비롯하여 지참금에 관련된 폭력, 여성할례,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 젠더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이며 박해의 한 형태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UNHCR 지침 9항).

여성에 대한 어떤 위해가 박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A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및 B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다양한 여성관련 협약 등 국제인권문서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여러 국제문서는 젠더박해와 관련한 핵심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협약들이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79)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대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1949)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1952)

52) 박영아, 위의 글

「결혼한 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ationality of Married Women, 1957)

「혼인에 관한 동의, 최소 연령 및 혼인등록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onsent to Marriage, Minimum Age for Marriage and Registration of Marriages, 1962)
 →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할 권리, 최소 연령에 달하기 전에는 혼인하지 않을 권리 보장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3)

이러한 국제협약과 선언에 명시된 본질적 인권의 침해나 부인은 모두 박해에 해당하며, 난민 인정 여부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⁵³⁾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명예 살인 위협에 처한 파키스탄 부부 사건에서 강제결혼 자체를 '박해'로 인정하며,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강제로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침해"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례는 '박해'의 개념을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 침해 등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기본권 침해까지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4)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판단 : 신빙성평가

박해에 대한 우려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에 크게 좌우된다. 난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난민 신청자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난민 신청인의 진술 신빙성 평가와 관련하여 진술의 세부 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불일치나 과장은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 난민 신청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 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여성 난민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서 남성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는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며,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53) 민지원, 위의 논문, 9-10면 참조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도 난민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중요한 사실에 관한 누락이나 생략이 없어야 하고, 그 자체로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해야 한다. 신청인의 주장이 신뢰성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주장에 반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의 ‘위원장 지침 제1호’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박해받는 여성 난민 신청자는 강간외상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이나 피학대자증후군(battered trauma syndrome)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원장 지침 제9호’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진술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며, 출신국에서 경험한 사회적 고립, 부당 대우, 지원 결여 등으로 인해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불안, 자살경향, 해리, 신뢰 저하 및 기타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진술에 불일치가 있으면 문화적, 심리적 또는 기타 장애 요소를 확인하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판단은 피해야 한다. 피해자가 정부 관계자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워 인터뷰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⁵⁴⁾

우울증 및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날짜나 구체적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진술에 불일치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남성 면접관이나 정부 관계자 앞에서 젠더 정체성이나 성폭력 경험을 숨길 수 있다.⁵⁵⁾

정부기관은 난민 인정 시 엄격한 문서적 증거를 요구하지 않지만, 출신국의 관습 정보는 사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젠더 관련 신청에서는 일반 난민신청보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성폭력 발생 보고서나 통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유사 피해 여성의 진술, 비정부기구(NGO), 국제기구, 독립기관의 보고서 및 구두 증언 등 대안적 자료가 중요하다.⁵⁶⁾

(3) 젠더 관련 난민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젠더 기반 박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여성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일부 국가는 젠더 관련 난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난민심사관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난민 신청을 평가하도록 돕는다.

54)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 Chairperson’s Guideline No.1 및 No.9

55) 민지원. (2019). 난민자격으로서 젠더와 성적 지향의 교차성: 우간다 난민신청자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136-138면

56) UNHCR 지침 37항

1990년 대 초부터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은 난민심사에 대한 성인지적 해석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고 유엔난민기구도 ‘UNHCR 지침 제1호’를 2002년에 발행했다. 이러한 젠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난민 정의가 제한된 가운데 난민 인정 결정권자들에게 법해석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UNHCR 지침 제1호’에서도 “법률에 법해석을 위한 지침이나 절차적 보호조항을 포함”시키거나 “난민 인정 결정권자를 위한 정책이나 법적 지침을 마련”하는 방법을 권고해 왔다.⁵⁷⁾

1951년 난민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젠더인지적 해석을 취하는 것이 모든 여성에게 자동적으로 난민지위가 부여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호신청인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⁵⁸⁾

1) 유엔난민기구 가이드라인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젠더 관련 박해를 난민 인정 심사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왔다. 2002년 발간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1967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젠더와 관련된 박해>는 유엔난민기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을 보완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지침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1951년 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에 포함된 난민의 정의를 젠더인지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난민 인정 절차에서 여성신청인이 적절히 고려되고 다양한 신청들이 젠더와 관련된 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관례를 제안하고 있다.

난민 정의 전체가 젠더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젠더는 박해의 유형이나 이유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는 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난민신청자의 경우, 여성 면접관과 통역관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며, 아동이나 부양가족과 이동해야 하는 여성, 임신이나 수유 중인 여성의 경우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구금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박해의 보호기준에 대하여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박해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성에 공통적인

57) 민지원, 위의 글, 136면

58) UNHCR 지침 4항

박해가 있고, 각 성에 특유한 박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들이 관행이나 정책적인 이유로 특정한 권리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심각한 학대로부터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보호의 차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해를 입는 반면,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박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국가 또는 당국에 의한 행위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또는 개인의 행위도 정부당국이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박해가 될 수 있다.

난민 인정 절차를 진행하며 난민의 정의 상의 기준을 적용, 평가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사건에 대한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호신청인의 성격, 배경, 개인적 경험에 대한 전체적 상황과 더불어 출신국의 고유한 역사, 지리, 문화적 정황에 대한 분석 및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⁵⁹⁾

2) 캐나다⁶⁰⁾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의 <위원장 지침 제4호: 이민난민위원회 심사에서의 젠더 고려사항>은 젠더 고려사항이 포함된 심사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젠더 기반 폭력과 트라우마에 관련된 신화, 고정관념, 잘못된 가정을 피해야 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생존자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즉시 신고할 것이라는 기대, 학대적인 관계를 즉시 떠날 것이라는 가정, 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이 젠더 기반 폭력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는 믿음 등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기억과 증언 능력에 트라우마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재트라우마화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캐나다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젠더, 장애, 인종, 종교, 연령,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정체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독특하고 복잡한 형태의 차별, 학대 또는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수 민족 출신의 레즈비언 여성은 젠더, 성적 지향, 민족성이라는 교차적 특성으로 인해 복잡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신빙성 평가 시에는 폭력의 순환과 강압적 통제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트라우마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불일치, 누락, 모호성 등)을 이해하고, 문화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비합리적인 판단을 피해야 한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인지하여,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의 경우 증언 자체가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전문가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9) UNHCR 지침 7항

60)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의 '위원장 지침 제4호: 이민난민위원회 심사에서의 젠더 고려사항'(Chairperson's Guideline 4: Gender Considerations in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원문 <https://irb.gc.ca/en/legal-policy/policies/Pages/GuideDir04.aspx>

3) 미국⁶¹⁾

1995년 <Phyllis Coven 메모>는 미국 이민국 국제업무국의 Phyllis Coven 국장이 작성해 발표한 문서로, 여성의 난민 신청 심사 시 젠더(성별) 기반 박해를 공식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침을 제시한 최초의 내부 문서 중 하나이다. 이 메모는 기존 난민 정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여성 특유의 박해 문제, 예를 들어 여성성기훼손(FGM), 강간, 가정폭력, 강제 결혼과 같은 성별 기반 폭력과 차별을 난민 인정 사유로 명확히 포함시키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 젠더 기반 박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던 시기에, 여성 난민들이 겪는 특수한 피해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심사 환경 측면에서, 여성 난민 신청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피해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여성 심사관과 여성 통역사 배치, 민감한 질문 시 배려와 심리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성만을 이유로 특정사회집단구성원(Particular Social Group)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여성할례, 성폭력, 강제 결혼 등 다양한 젠더 기반 박해 유형을 난민 인정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 기준에서는 남성과 동일하게 박해 또는 박해 공포를 입증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국가가 직접 가해하지 않아도 사적 가해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보호의 한계까지 인정하여 난민 자격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 절차적 차원에서도 개별 상황과 국가별 문화·법률 정보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며, 남편 신청서에 포함된 여성이라도 독립적 심사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 메모는 1996년 Matter of Kasinga 판결에서 여성할례에 기반한 난민 인정을 가능케 했고,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젠더 난민 심사 기준의 표준이 되며 난민 보호 체계에 성인지적 시각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 내 상황변화로 법적 판례와 행정 명령은 젠더 기반 난민 인정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Phyllis Coven 메모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거나 전면 개정되지 않았으나, 예를 들어, 2025년 이민 항소위원회(BIA)는 성별만으로 특정사회집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Matter of K-E-S-G)를 내놓았고, USCIS는 생물학적 성별 기준을 강화하며 비바이너리 성별 표현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젠더 박해를 이유로 한 난민 심사는 예전보다 까다로워지고 보호 문턱이 높아졌다고 비판받고 있다.

61) Considerations For Asylum Officers Adjudicating Asylum Claims From Women (Memorandum from Phyllis Coven,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to AI INS Asylum Officers HQASM Coordinators, May 26, 1995).

4) 호주⁶²⁾

호주 정부가 1996년 발표한 <Refugee and Humanitarian Visa Applicants Guidelines on Gender Issues for Decision Makers> 지침은 난민 및 인도적 비자 신청 심사에서 여성 등 젠더 기반 박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행정 문서이다. 이 지침은 당시 일반적인 난민법 해석이 여성에 대한 성별 특유의 폭력이나 차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성별 기반 박해 인정 기준) 지침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여성성기 훼손(FGM), 강제결혼, 가정폭력, 명예살인 등 다양한 젠더 특유의 박해 유형을 난민 인정 사유로 다루고 있다. 지침은 ‘여성’ 자체가 특정 사회집단(Particular Social Group)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받는 집단에 속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침은 박해는 단순한 차별을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어야 하고, 국가가 해당 피해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난민 인정을 고려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개별 사건의 심사 과정) 심사관은 피해자 여성 신청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여성 심사관 및 여성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절차적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 경험을 진술할 때 문화적·심리적 장벽, 피해자 특유의 수치심과 두려움,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박해 인정의 실제적 요건) ‘박해’의 심각성, 즉 신체적·정신적 위해, 사회적 배제, 생활의 심대한 제약 등이 존재하는지 평가한다. 국가가 직접 박해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가해자(가족, 공동체, 부족 등)가 국가의 묵인 또는 방임 속에 행동하는 경우 박해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피해를 피할 수 있는지(내부 도피 가능성)도 함께 판단하지만, 현실적으로 도피가 어렵거나 기대할 수 없으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 동기 및 사회집단 연결성) 피해가 여성이라는 성별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여성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과 연결된다.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나 범죄 피해와 달리 피해의 원인이 성별과 관련된 사회적 차별, 전통적 성역할 강요, 권력관계 등 젠더 기반 구조에서 기인함을 입증해야 한다.

(신빙성 평가) 피해자가 겪은 피해 사실이나 두려움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문화적, 심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세심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피해자가 과거에

62) Refugee and Humanitarian Visa Applicants Guidelines on Gender Issues for Decision Makers(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Australia, July 1996)

피해사실을 잘 표현하지 못했거나 숨겼더라도, 수치심과 두려움 같은 젠더 특유의 요인을 고려해 이를 경시하지 않아야 한다.

5) 소결

젠더인지적으로 난민법, 특히 난민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 자체에 법 해석을 위한 지침이나 절차적 보호조항을 포함시키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결정권자를 위한 정책이나 법적 지침의 마련을 선호한다. 유엔 난민기구는 아직 이러한 접근법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난민법과 그 절차의 젠더인지적 적용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며, 이와 관련해 각 국가들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⁶³⁾

3. 주요 국내 판례

(1) 여성성기훼손(FGM)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가나의 난민캠프에서 출생한 만 14세 여성이고, 원고의 어머니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어머니와 원고의 할아버지는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라이베리아 전통단체인 산데 부쉬(Sande Bush)에 원고 어머니가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결국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 할아버지에 의하여 강제로 산데 부쉬에 가입한 후 할례를 받기 전 도망하였다. 원고의 할아버지는 원고 어머니를 위 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체의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사망이 자신의 탓이라는 이유로 친척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Sande Bush School'에 들어가 여성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63) UNHCR 지침 38

언급하지 않은 채, ‘원고의 어머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도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꿀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어머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행정청과 그에 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으로서, 원고의 나이와 성장 환경, 출신 부족, 원고의 국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할례의 현황, 원고 어머니가 국적국을 떠나게 된 경위, 국적국 정부가 여성 할례를 없애기 위하여 실효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되는지 등 원고가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의 위험에 노출될 개별적·구체적 위험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광주고등법원 2020누*****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전통종교단체인 '본도 소사이어티(Bondo Society,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의식을 치르는 집단)'의 핵심 구성원인 어머니로부터 할례를 강요받았다. 기독교 신자인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종교단체 사람들은 원고를 끌고가 할례를 받고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며 폭행하고 협박했다. 원고는 이를 피해 친구의 집에 피신해 숨어 지내다 같은 해 한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명분으로 단기상용(C-3)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법원판단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본국 사법기관에 보호 요청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이주해 정착할 수 있어 박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원고의 진술은)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해당 국가에서 여성 할례는 공동체의 압력으로 강력하게 시행되는 사회적 규범 전통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비록 해당국이 2015년 여성 할례 종식을 촉구하는 마푸토 의정서에 비준했지만 여성 할례는 계속되고 있고 금지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공포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한지 23일 만에 난민 신청을 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력이 없으며 여성 할례를 피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입국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여성 할례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으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케냐의 000족 출신으로, 케냐에서는 2009년 기준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중 할례를 받은 여성의 비율이 27.1%에 이르고, 특히 원고가 속한 000족의 경우 여성 할례 시행률이 무려 73.2%에 달한다. 원고의 남편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할례를 강요하였고, 원고는 0000 경 남편의 고향마을인 000에 방문하였다가 마을사람들로부터 야간에 강제로 할례를 당할 뻔하였으나 겨우 도망쳐 국적국을 출국하였다.

나. 법원판단

기)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등 참조).

나) 케냐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중 할례를 받은 여성의 비율이 21% 정도이고,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여성 할례를 받은 여성의 비율이 오히려 소수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적 격차가 커서 서부 지역에는 0.8%에 불과한 데에 반해 북동부 지역에는 97% 이상에 달하고, 수도인 나이로비 지역은 8% 정도이다.

다) 한편, 케냐 헌법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유해한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2001년 아동법(Children's Act)이 제정되어 18세 미만 여성에 대한 할례가 금지되었다. 또한 2011년 여성할례금지법(The Prohibi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이 제정되어 모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할례가 범죄로 규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최소 3년의 징역 또는 200,000실링의 벌금, 할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이에 따라 강제 할례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등 위 법률이 비교적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뿐만 아니

라 케냐 정부와 여성단체, 국제기구는 할례 금지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 원고는 할례를 행하는 비율이 높은 000족 출신이라고는 하나, 7세경부터 000족의 거주지와는 무관한 수도 나이로비에서 자랐고, 결혼 이후에도 남편과 함께 나이로비에서 거주하였으며, 난민면접 당시 남편 이외에 원고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남편으로 인해 남편의 고향마을인 0000에 원고가 할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알려졌고, 0000. 경 마을사람들이 원고에게 강제로 할례를 하려고 하여 겨우 도망쳤으며,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남편과 마을사람들이 다시 원고에게 할례를 강요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마을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원고의 진술은 다소 작위적이어서 실제 원고에 대한 강제 할례의 시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남편이나 위 마을사람들이 원고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경우 자국 정부 등에 요청하여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 등의 사법적 구제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케냐 내의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주장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케냐 000족 여성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000족 계모와 재혼하였다. 원고 계모의 민족인 000족의 000 그룹은 이전부터 원고에게 여성 할례를 강요하고 원고와 가족을 위협하였다. 원고가 종전 사건에서 패소확정된 이후에도 위 그룹의 원고와 가족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는데, 위 그룹은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딸들이 000 관습을 따르게 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가족이 이를 따르지 않자 0000. 원고의 고향마을 집을 불태워버렸다. 원고는 귀국 시 위 그룹에 의하여 강제로 할례를 당하거나 고문당할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원판단

가) 여성 할례를 이유로 한 원고의 박해 주장은 종전 사건에서 이미 배척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그룹에 의한 여성 할례 요구와 그에 대한 거절에 따른 방화를 새로운 박해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확정된 이

후에 위 그룹이 갑자기 원고의 아버지에게 딸들의 여성 할례를 요구하고 집을 불태우는 등 위협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작위적일 뿐만 아니라 급조된 것으로 보여 믿기 힘들다.

다) 설령 원고가 위 그룹에 의하여 위협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64)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W)의 어머니(Y)가 속한 000족은 여아가 출생하면 여성 할례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의 어머니도 출생 후 여성 할례를 받아야 했다. B국에서 여성 할례는 공식적으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거의 모든 여성에게 할례가 가해지고 있다. 원고의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낳은 딸인 원고도 B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여성 할례를 피할 수 없는데, 원고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여성 할례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성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소속 학교 등 모든 사회관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경찰 등 국가기관 역시 여성 할례에 동의하고, 공공연하게 여성 할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도움을 구할 수 없다. 원고가 국적국인 B국으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

나. 법원 판단

가)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64) 박영아, 위의 글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B국은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다. 15-49 세 여성 중 할례를 받은 비율은 전국적으로 94.5%에 달한다. 여성할례를 받지 않은 여아와 여성은 사회적으로 배척 당한다. 법은 여성할례를 금지하고 있지만 높은 여성할례율이 방증하듯 전혀 실효성이 없다. 독일정부가 발간한 B국 국가정황정보에 따르면 가족의 지원 없이 고향 외 다른 지역에서의 정착을 기대가능하게 하는 최저생계의 유지는 홀로 사는 여성에게 거의 가능하지 않다. (중략) 법원의 판단은 B국 여성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실효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여성에게 가족의 지원 없이 고향 외 다른 지역에서 홀로 정착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는 국가정황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특히 여성할례 비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Y가 속한 부족은 그 중에서도 여성할례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자신의 강제결혼도 막지 못한 Y가 딸의 할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W가 여성할례를 당할 개별적·구체적 위협이 없다는 판단은 무모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등 참조).

나) B국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15세부터 49세 사이의 여성 중 할례를 받은 여성의 비율이 94.5% 정도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형법 및 아동법은 여성 할례를 금지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B국 정부는 여성 할례를 근절하고 의료 종사자, 공무원 및 시민에게 관행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기 위하여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6세부터 14세 사이의 여성 할례 비율은 2015년 이후로 6%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여성 할례 가해자가 체포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다) 원고의 어머니 국적국인 B국에 여성 할례의 관습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할례를 금지하는 B국의 국가정황에 더하여 원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성 할례에 반대하고 자녀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별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에게 B국의 일반 여성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를 넘어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정폭력

1)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000 NGO에서 일하다 남편과 결혼했고, 첫째 아이 출산 후 직장 복귀를 시도하자 남편의 강한 반대와 함께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남편의 폭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진료 및 지방의회에 신고될 정도로 심각했고, 남편은 원고에게 복종을 강요했으며, 폭력을 반복할 시 경찰에 인계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원고는 남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시도하다가 다시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남편의 폭력은 반복되었다. 이에 결국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집을 떠나 000 사업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남편은 원고에게 위협적인 전자메일을 보내며 보복을 예고했고, 원고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원고의 가족들까지 폭행과 괴롭힘의 피해

를 입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나. 우간다에서의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의 상황

우간다는 남성 중심적 사회로, 결혼 시 '신부값'이라는 관습이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화는 여성에게 가사 노동 부담, 상속권 제한, 불순종에 대한 가정폭력 등 불평등한 법적·문화적 규범을 만들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선택권과 정치적 발언권도 크게 제한된다.

우간다에서 결혼한 여성의 직업활동이 적은 이유는 기회의 부재가 아니라 남편의 허락이 없기 때문이고, 많은 남성들이 아내가 전업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조사되었다. 아내가 전통적인 성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49세 사이의 결혼한 여성 중 56%가 남편에게 신체적·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사법기관의 대응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의 집 밖 활동이나 직업활동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불륜으로 몰리거나 폭행 위협에 노출된다.

우간다 국민 대다수는 가정폭력을 법적 문제보다 가족 내 사적 문제로 인식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여성은 사회적 비난과 괴롭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효적인 법적 보호도 미흡해,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실제 집행된 예는 거의 없고, 경찰과 사법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를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많다. 신고된 젠더 기반 폭력 사건 중 일부만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그마저도 결론 없이 지체되는 등 법집행의 공정성 또한 부족하다. 그 결과 여성들의 사법 접근성은 극히 낮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 법원 판단

가) 유엔난민기구에서 작성한 '난민 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에 따르면 젠더는 '각 성별에 부여되고, 사회적·문화적으로 형성 및 정의된 정체성, 지위, 역할, 책임 등에 기초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의미하며(위 지침 제1호), 생물학적 개념인 성별과 구분된다. 젠더와 관련된 난민신청에는 '성폭력, 가족/가정폭력, 강요에 의한 가족계획, 여성할례, 사회적 관습 위반에 대한 처벌,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 등이 포함된다(위 지침 제1호).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신분은 선천적 특성으로, 특히 **결혼한 여성은 남편에게 무조건적**

으로 복종하여야 한다는 사회환경에서는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 내지 사법기관에 의해 폭력에 대한 처벌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남편의 폭력 및 우간다 정부 내지 사법기관 등의 대처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내용에 부합하는 의료기록 및 지방의회 출석요청서 등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인 0000.경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인 0000.경까지 남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폭행을 당했는데, 그 폭행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구타하고 상처를 입히거나 전깃줄로 채찍질을 하며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드는 등 고문과도 같이 잔인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부터 원고의 남편은 원고의 가족들이 원고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원고의 아버지는 이를 피해 이주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은 000 지역까지 쫓아와 원고의 여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원고의 여동생들은 안면 부위의 멍, 복부 통증 등으로 00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0000. 00 지역 지방의회에 원고의 남편을 신고하였다. 이후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남편을 피해 00 지역으로 다시 이사하였으나 0000.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또다시 후두부와 복부를 가격당하는 등 폭행을 당하여 00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재차 00 지방의회에 원고의 남편을 신고하였다. 원고의 가족들은 0000. 경 00 지역으로, 0000.경 다시 00 지역으로 이사하였으나 0000. 00으로 찾아온 원고의 남편에 의해 원고 남동생의 다리가 부러지고 원고의 집이 붕괴되기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사인에 의한 폭력이므로, 이것이 난민인정요건의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되는 사적 영역에서 사인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 '사적인 폭력'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폭력은 남편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간다 역사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성 차별을 기반으로, 앞에서 본 우간다 내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처리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방치 속에서 존속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이는 원고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기본적인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폭력의 주체가 사인이라는 것만으로 박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등을 당한 후 우간다 내에서 경찰 이전 단계로서 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의회에 수회에 걸쳐 원고의 남편을 신고하였고, 실제 지방의회는 원고의 남편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0000.경에는 00 파출소에서, 0000.경에는 00 파출소에서 각 원고의 남편을 수배한다는 내용의 경찰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받는 등 우간다 정부 내지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적 보호조치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0000. 원고가 남편을 00 지역 지방의회에 신고하였으나, 위 지방의회에서 남편에게 폭행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원고와 남편을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며 원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원고는 남편의 허락 없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의 남편을 수배한다는 내용의 경찰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원고의 남편은 자신을 피해 아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여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겨 다닌 원고의 가족들을 찾아내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바) 피고는 우간다 내에서 원고가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충분히 이혼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우간다 정부 역시 여성 및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간다 헌법과 가정폭력법 등에서는 가정폭력과 같이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의회, 치안 법원, 가족 및 아동 법원 등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심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보상, 화해 등의 명령과 임시보호명령 또는 보호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간다 법원은 '남편이나 아내가 잔인한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경우'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현재 우간다 내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결혼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당연시 여기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고, 실제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방의회와 경찰에 원고의 남편을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우간다 내 가정폭력 관련 법률은 2010년에 제정된 것인바, 원고가 겪은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률과 사법적 제도가 제대로 적용 내지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 및 사회적 문화가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2021년경 우간다 의회에서 남성에게만 인정되던 상속권 등을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는 고용법안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여성 인권을 보장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여성운동이 이루어지는 등 최근 우간다 정부와 국민들이 실질적인 여성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는 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 사실을 합리적으로 수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국적국의 상황이 현저히 나아져서 박해의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888 판결 참조), 유엔여성기구가 2019년경부터 우간다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여성권리단체에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사정은 그만큼 아직 우간다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우간다 내 상황이 현저히 나아져서 원고가 법적·제도적으로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받는 등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국적국인 우간다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아랍인 여성으로 000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0000. 피고에게 '아버지의 결혼 강요 및 가정폭력, 000의 치안 불안'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거주지의 전반적인 치안 부재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사유가 아니고 자국 내 대안적 피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강제 결혼과 가정폭력 문제 역시 원고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문제로 보이고 자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나. 법원판단

아버지에 관한 원고의 위 면접 당시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의 각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그 주된 내용은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가 000에 정착하여 계속 살거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요구한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강제결혼 : 혼인의 자유

1) 서울고등법원 2021누***** 판결

이 판결은 파키스탄 국적의 부부가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본국 가족들로부터 명예 살인 위협을 받아 난민 신청을 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강제로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박해'의 개념을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넘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확장하여 해석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법원은 국적국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형식적인 법 제정만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 보호가 부재하다고 보았다.

2)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아이티에서 지진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후 B 가족과 함께 살다가 B의 강요로 B의 채권자인 C과 강제 결혼을 하였고, 결혼생활 동안 C에게 폭행 등 위협을 당했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원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원고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과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C와 강제로 결혼한 후 결혼생활 동안 그에게 폭행 등 위협을 받은 것은 사적 분쟁일 뿐,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이티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카메룬의 남서부 지역인 림베의 B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원고의 부친은 위 마을의 전통족장인 C로부터 토지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면서 C와 원고를 결혼시키기로 약속하였고,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C는 원고에게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0000.경 D와 결혼하자, C는 결혼식 당일 피로연에 찾아와 칼로 D를 위협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며칠 뒤 D를 자신의 집에 끌고 가 3일간 불법적으로 구금, 폭행하였으며, 이후 C의 요청으로 D는 경찰서에 인계되어 구치소에서 3일간 구금, 폭행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0000.경 D가 C의 위협을 피하여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자, C는 0000.경 원고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3개월간 감금, 강간하였고, 원고는 겨우 탈출하여 가족들의 도움으로 본국에서 출국하였으며, 원고와 D 사이에는 0000.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다.

원고와 가족들이 본국에 돌아갈 경우, 원고는 계속하여 C와의 결혼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원고와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법원 판단

가) 원고가 0000년경 원고와 남편 D를 위협한 전통족장이라고 지목한 C는 0000년경 이미 족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는 C가 족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지역의 족장위원회와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어 원고와 그 가족들을 위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C가 원고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와 그 남편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는 사인에 의한 불법적인 위협에 해당할 뿐이다.

나) 원고의 국적국가에서도 강제결혼은 법으로 금지되고 카메룬 여성가족부는 모든 강

제결혼 사건에 대하여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카메룬 법은 전통적 족장에 대하여 피통치자를 강탈하거나 벌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족장을 해임 및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원고는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카메룬 정부가 위와 같은 사인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가 0000년 국적국가를 출국한 뒤 4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 남편인 D와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였는데, 아직까지 국적국가에서 C와의 결혼이 강요되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원고가 계속하여 C로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본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 판결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여성인데, 0000경 무슬림인 큰아버지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였고, 강간이나 강제결혼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나. 법원 판단

가) 큰아버지가 개종을 강요하고 강제결혼을 하려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큰아버지의 위협에 대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찰당국에 신고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0000경 남자친구 차량에 강도들이 침입한 사건이 큰아버지의 소행이라는 것은 원고의 추측일 뿐 이에 부합하는 정황이 부족하다.

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인 0000년경 원고의 숙부는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하였다. 당시 원고와 강제로 결혼시키려 한 남성은 아버지 형제의 친구로, 이미 아내와 자녀가 있는 나이가 많은 남성이었고, 원고를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려 하였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숙부는 다른 아버지 형제를 설득하고, 원고의 어머니를 위협하여 원고가 강제결혼에 응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결혼에 저항하자, 숙부는 위 남성의 집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 원고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남성 역시 원고에게 ‘돈을 지급했으니 순종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00를 떠나 대한민국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0000년 말경 숙부가 원고의 어머니를 찾아와 원고의 행방을 물으며 여전히 결혼을 강요하고 있다. 원고가 본국인 00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

나. 법원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결혼 강요의 박해사유는 사인(私人)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난민인정의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았다면 이는 기니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할 문제이고, 기니 국가기관이 강제결혼을 용인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대한민국 체류 중이던 0000년부터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서 3명의 자녀까지 출산한 상태인바,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숙부가 계속해서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강요하며 위협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원고가 학업을 위해 0000에 거주한 기간 및 강제결혼 상대 남성의 집에서 가출하여 출국 전까지 친구 집 등에 머무는 동안 숙부 및 상대 남성 등으로부터 별다른 위협을 받은 적이 없어, 본국 내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진술 신빙성 평가 관련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954 판결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그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

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난민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수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그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의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참조).

2) 소수민족과 젠더박해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가) 원고들은 소수민족 하자라족 출신으로 원고 A는 0000. 00지역에서 여성들에게 기초 페르시아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평소 탈레반이 이슬람 종교를 이용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사람을 죽이는 등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이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수업을 듣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관하여 다시 이야기하자 며칠 후 탈레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원고 B는 남녀 이용자를 분리하지 않고 비이슬람 서적을 보유한 도서관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탈레반에 의해 위협을 당하였다.

다) 원고 C는 탈레반이 요구하는 전신을 가리는 히잡이 아닌 평범한 히잡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 C는 한국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였고,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 C의 탈레반 여성인권 탄압 비판이 널리 방영되었다.

나. 법원 판단

가) 원고들은 난민인정신청, 피고의 난민면접 심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본국에서의 박해 경험 등을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며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원고 A, B, C의 각 진술은 탈레반의 하자라족 시아파 무슬림 여성에 대한 박해 일반 관련 국가정황정보와 부합하고, 원고 00의 탈레반으로부터 00 등의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도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들은 하자라족 시아파 무슬림으로, 앞서 본 각종 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탈레반 집권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원고 C는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여성인권 탄압상황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은 00 등의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00의 얼굴과 이름이 매체를 통해 노출되었다. 원고 00의 대한민국 입국 후 활동과 그 통치 방식의 불확실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겪게 될 위협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다) 2023. 2. 자 아프간인에 대한 국제적 보호 관련 UNHCR 권고 지침에 의하면, 현재 아프가니스탄 내 정보수집 및 보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아프간인에 대한 난민심사시 검증된 국가정황정보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추론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에서 인권침해 및 학대가 기록되거나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흔할 것이며, 특정사건 또는 위반 및 학대의 패턴에 관한 국가정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한 그 자체만으로 신청인의 신뢰성 및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3) 난민에게 유리한 해석의 이익을 부여하는 원칙을 적용한 판례

가. 판결문 상의 사실관계 (원고 주장요지)

가) 원고의 남편은 000족 000조직의 일원이었는데 0000. 경 대통령 선거 후 발생했던 폭력사태 당시 현 정권과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증언을 하려고 하던 중에 실종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처럼 남편이 실종된 부인들과 함께 000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남편들의 실종 경위를 파악하고 그들의 행방을 찾는 운동을 하던 중 0000.경 정부측 사람들로 부터 납치되어 약 6개월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성폭행 등의 박해를 받았다.

다) 이와 같이 원고가 박해를 받던 중 성폭행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납치범들은 원고와 원고의 태아를 중국으로 돈을 받고 팔았는데, 원고는 홍콩으로 가는 항공기가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대기 중일 때 납치범들로부터 탈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라) 이와 같이 원고는 00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중국으로 팔려가던 도중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00로 돌아갈 경우 다시 심각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원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00로 돌아갈 경우 00 정부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폭력, 납치, 인신매

매 등에 관한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 케냐 정부로부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중략) 이 외에도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진술 곳곳에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지나치게 작위적인 부분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난민인정을 받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왔고, 이를 종합하여 다소 작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스토리를 준비하고 일부러 대한민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탈출하는 외관을 만들어 이 사건과 같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부로 살았던 원고의 학력과 경력, 남편을 잃고 딸을 00에 두고 온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오로지 난민인정을 받기 위하여 이토록 치밀하게 박해사유나 탈출경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 진술이 다소 작위적으로 보인다고 하여 원고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쉽사리 부인하기도 어렵다.

사) 물론 원고의 학력과 경력, 가족사항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진술이 처음부터 전부 허위로 창작되었거나 심하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난민 인정절차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른바 위장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의 손해와 진정한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익의 피해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위장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의 피해는 예산의 낭비, 위장난민신청의 증가로 인한 난민인정절차의 혼란 등 추상적이고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익인 반면, 진정한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당장 침해될 수 있는 범익은 심할 경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본인과 가족의 생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절차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진범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억울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민인정절차에서 원고 진술에 일부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원고가 처할 수 있는 박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를 난민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원고에게 난민의 자격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5. 참고자료 : 유엔난민기구 보호지침의 ‘절차적 문제’

젠더와 관련된 박해로 인한 신청인, 특히 고문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본인의 신청사유에 대해 비밀엄수가 보장되는 협조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들 중에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과거에 받은

박해 또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정부기관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가족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거부나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다(UNHCR 지침 35항). 이러한 상황의 난민 인정 절차에서 젠더와 관련된 난민신청을 특히 여성이 하는 경우 적절히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UNHCR 지침 36항).

A. 여성신청인의 면접은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남성 가족 구성원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들 자신에게 유효한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B. 난민신청절차와 신청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물론, 법률적 조언 또한 여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C. 신청인은 자신과 동성인 면접관과 통역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고 여성신청인에게는 자동적으로 여성면접관과 통역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면접관과 통역인은 문화적·종교적 민감성, 또는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 개인적 요소를 인지하여 임해야 한다.

D. 개방적이고 확신을 주는 환경은 면접관과 신청인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때로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면접실은 대화를 촉진하고, 기밀유지를 도모하며, 권력불균형이 인식될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E. 면접관은 시간을 할애하여 신청인에게 자신과 통역인에 대해 소개하고, 각자의 역할과 면접의 정확한 목적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에게 본인의 주장이 극비로 다루어질 것이며,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가 가족구성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확인해 주어야 한다.

F. 면접관은 면접시간 동안 중립적, 객관적이며 연민어린 태도를 유지하고, 위협적이거나 문화적으로 둔감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신체언어나 몸동작을 피해야 한다. 면접관은 방해물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본인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 모든 비호관련 면접에는 해당 난민신청에서 젠더 관련 이슈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의'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했거나 정치적 의견이 있다고 간주된 여성들은 종종 남성중심적 질문으로 인해 면접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신청인은 '고문'

에 대한 질문을 자신이 두려워하는 위해의 형태(성폭행, 성추행, 여성할례, ‘명예살인’, 강제결혼 등)와 연관시키지 못 할 수 있다.

H. 특히 성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신뢰를 구축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2차 및 후속 면담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면접관은 트라우마 및 신청인의 감정에 민감해야 하고, 신청인이 감정적으로 힘들어 할 경우 면접을 중단해야 한다.

I. 특정 난민신청이 젠더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면접관은 적합한 질문을 하고,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신청인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J. 여성의 난민신청에 있어 신청사유와 관련된 출신국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로는 법률상 여성의 지위, 여성의 정치적 권리,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출신국의 문화적·사회적 관습과 이러한 관습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 이러한 유해한 전통적 관습의 만연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의 발생률과 형태, 여성에게 제공되는 보호, 폭력 가해자의 처벌, 여성이 난민신청 후 출신국으로 귀국 시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이 있다.

K. 면접관 및 결정권자는 문화적 차이와 트라우마가 행동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복잡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사례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심리적 또는 의학적 증거를 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성폭행이나 성폭력 행위의 세부사항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그보다는 박해자의 동기와 더불어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사건경위나 그러한 행위의 발생 후 주변 상황 및 세부정보(총기사용, 박해자가 말한 단어 또는 문장, 폭력의 유형, 장소, 발생경위, 박해자의 상세정보(예:군인, 민간인) 등)가 필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여성이 자신이 학대당한 이유를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L. 필요한 경우 심리사회적 상담 및 다른 지원서비스로 의뢰할 수 있는 연계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모범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면접 전후에 신청인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된 심리사회상담사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권고된다.

6. 마무리

전통적인 난민 개념이 남성 중심적 경험에 기반하여 여성의 박해를 간과했던 한계를 넘어 국제사회와 한국 법원은 '젠더박해'의 개념을 확장하고 난민 인정 요건을 성인지적으로 해석하는 의미 있는 사례들이 확인된다. 특히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에 젠더 정체성(트랜스젠더)과 문화적 관습에 의한 폭력(여성할례)을 포함시키고, 사인에 의한 박해(가정폭력, 명예 살인/강제결혼)를 국가 보호 불능과 연계하여 박해로 인정하는 판례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난민 신청 과정에서 여성 난민이 겪는 어려움은 많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심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통역 문제, 정신 건강 지원의 부재 등은 여성난민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난민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난민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유엔난민기구 등 각국의 젠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젠더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통역사, 법원 등 관련 모든 주체가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성 난민신청자의 경우 여성 면접관 및 통역관 배치를 의무로 하고, 성폭력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심사 시에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트라우마화를 방지하는 심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젠더 감수성 교육과 전문성 강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난민 신청인의 진술 신빙성 평가시 문화적, 심리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민 신청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난민에게 유리한 해석의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하는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젠더박해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여 문서화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의 경험과 위치에 대한 제약으로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보장할 수 있는 증거의 부재가 신빙성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난민 여성이 겪는 이중적 취약성(난민이자 여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직업 훈련 및 연계, 한국어 교육, 자녀 돌봄지원 등 삶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주의 위기, 여성의 위기, 여성난민신청자의 몸과 삶

토론_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공간지킴이)

난민 불인정 사유서	
신청인 성명	[REDACTED]
난민 신청 사유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심사결과	불인정
이유	<p>신청인은 외국인과 이혼한 이력이 있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 국가명 사회에서 나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범죄 노출 가능성을 주장하나, 신청인은 국가명 최대 도시인 [도시명] 출신으로 대도시에서 학업과 생활을 한 점, 신청인이 2017년 혼자서 한국에 입국 목적은 온라인 결혼 사이트에서 만난 외국인과의 혼인을 위해서인 점 관련 국가 정황에 따르면, 국가명 여성이 만연한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법적, 경제적, 심리적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는 특히 국가명 의 문맹률과 실업률이 높은 시골 지역의 여성들이 젠더기반폭력에 더욱 노출된 것으로 보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도시 출신 여성인 신청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귀국 시 불상인에 의한 젠더 기반 폭력 범죄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p> <p>② 또한, 국가명 정부는 여성폭력근절에관한법률 등 젠더기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 점, 당국은 위 법률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 법률이 채택된 이후 여성폭력에 관한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되는 점, 2004년의 새로운 가족법 이후로 국가명 사회에서 이혼은 더 보편화되고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알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귀국 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자국 사법 당국에 적극적으로 보호를 요청할 자만으로 판단됨</p> <p>③ 한편 신청인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한 난민 신청사유는 없다고 하는 점 등 기타 제반 진술 및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난민 불인정 결정함</p>

위의 난민불인정 사유서는, 한국에서 혼인관계가 종료되어 비자를 잃은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난민 신청을 했다가 받은 불인정 통보서이다. 이 사유서에는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들의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드러나 있다. 특히 사유서에는 해당 여성이 '도시 출신'이고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졌기 때문에 '젠더 기반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1. 젠더박해가 난민인정 사유로 폭넓게 인정된다면...

난민신청자의 국적국의 가족법은 자녀가 교육을 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위 신청자는 외국 국적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과 그 자녀가 그 국가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을 걱정했다. 또한 신청자는 본국에 있었을 때부터 가족 구성원 일부와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였으며, 이혼 과정에서도 협박을 받았던 상황을 결혼 이주를 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였으며, 이혼 과정에서도 협박을 받았던 상황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영아(2024, 공감칼럼)⁶⁵)는 한국에서 젠더 박해로 인한 난민 인정을 받기 어려운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실질적 안전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신청자의 국가에 법률상의 여성 보호 규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즉,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남녀평등에 관한 규정이나 여성 할례·강제결혼 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실제로 사법 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지, 실효적 구제로 이어지는지, 나아가 법률보다 비공식적·관습적 규범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 중요한 자원인 가족이 오히려 박해자가 되었을 때, 여성이 그 영향력으로부터 피신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 실질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위 사례의 난민 불인정 사유 역시 여성의 국적국이 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신청자의 국가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의 증가”를 근거로 들고, “이혼이 보편화되고 있기에”, 범죄가 발생하면 “자국 사법 당국에 보호를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2. 아니, 애초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을 ‘인도적 체류자의 종속비자’화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례의 난민신청자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G-1-6 체류비자)의 가족(G-1-12 체류비자)으로 체류해왔다. 종속체류자격이란 당사자의 체류자격이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⁶⁶) 여성은 한국에서 혼인관계가 끝나면서 출입국에서 더 이상 가족체류비자를 연장해주지 않아 미등록 상태가 되었고, 당시 만 4세이던 자녀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본인의 안전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신청을 했던 것이었다. 배우자와의 불화 이후 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들을 경험하며 ‘체류적 종속화’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권력적 불균형의 조건을 만들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5년간 자녀를 양육해 온 여성이 인도적 체류자와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미등록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65) 박영아(2024, 공감칼럼) https://www.kpil.org/board_column/20240221/

66)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2023) <https://nancen.org/2348>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당시 신청자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잃었지만 아이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비자 자격은 유지되고 있었다. 여성은 미등록 상태였기에 아이의 체류 연장을 위해, 수년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질적 양육 분담도 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애정과 돌봄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전남편에게 계속 얽매이고 싶지 않아, 여성은 고민 끝에 자녀를 G-1-5(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바꿔달라고 출입국에 요청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난민 신청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진행되기에, 난민 신청 비자로 바꾸면 더 이상 전남편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출입국사무소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비자 코드 간 변경을 허락하지 않을까 봐 걱정했지만, 웬걸 출입국은 너무나 쉽게, 고민도 없이 아이의 비자를 G-1-12에서 G-1-5로 변경해 주었다. G 비자 간의 변경은 큰일이 아니라는 식이었다.

출입국이 G-1-5를 G-1-12의 하위 등급 비자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비자로 인한 속박의 굴레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이는 G-1-5 비자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엄마는 미등록 상태로 은행카드를 만들 수 없어 지자체의 보육비 보조를 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 중인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체류자격 여성을 조력하고 있다. 이 여성은 비자 연장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은 남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혼인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혼인 실태 조사는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 여성은 아이디 카드를 출입국에 압류당한 채로, 남편의 생계 보조와 양육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출입국이 비자를 주지 않으면 바로 미등록이 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남편과 같은 주소지가 아니라는 출입국의 문제 제기로 체류비자를 잃을까 봐 불화 상태임에도 다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은 여성에게 전혀 안전하지 않다. 남편이 물리적 가정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기에, 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아 쉼터에 입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 여성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난민신청자로도, 인도적 체류자로도, 또한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으로도 5년 넘게 한국에 거주해도 영주권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출입국은, 이주민의 이주와 정착을 마치 사물을 옮기듯 대하여 언제든 다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하는 듯하다.

#3. 아니, 애초에 '중속비자'라는 비자형태가 없었다면...

한국에 '결혼이주' 형태로 온 이주여성이 겪는 제도적 차별이 이슈화된 지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 가족 구성은 언제든 위기와 갈등, 그리고 해체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했기에 체류비자를 부여받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짜 결혼은 아닌지, 결혼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하며 비자 연장 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제출하게 했던 악랄한 제도는 많은 문제 제기 끝에 201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체류 연장 시 남편의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결

혼이주여성의 귀화 과정에서도 남편의 조력이 필요하며, 여성에게 독립적인 권리를 주지 않기 위해 귀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한국인 배우자들도 있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렇듯 비자의 '종속' 형태는 권리의 종속과 권력의 불평등을 만들며, 종속 비자를 가진 여성이 독립적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이주는 국민국가 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주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동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 여성들의 경우, 이주의 경로가 글로벌한 부거제적(patrilocal) 이주 시스템(Constable 2005)⁶⁷⁾ 안에서 주어지며, 이 시스템 안에 종속되어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격을 확인 당한다.

#4. 아니, 애초에 체류지위에 따른 차등적 '구제'가 아닌, '보편적 안전'에 근거한 안 전망이 있는 사회였다면... 68) *

애초의 이주 경로가 자본주의·가부장적 국민국가 체제가 만들어 놓은 구조에 종속되어 있기에, 이주인이 유입국에서 자격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심지어 그 자격조차도 차등적으로 부여된다.⁶⁹⁾ 한국인 배우자와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존재하지만, 외국인과의 결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은 그마저도 배제되고 있다. 지원에 대한 차등은 쉼터 내에서도 나타나는데, 실제로 최근 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경험한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은 해당 시설에 머무는 동안 어떤 물품이 들어오면 특정 체류 자격자에게만 지급되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뭔가 '똑같이 지원하라'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원 체계가 체류 자격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피해자성'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은 여성의 이주 삶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결정권을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것(아이러니하게도 배우자에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에 어찌면 모두가 연루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3년 외국 국적 가족 간의 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현장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체류적 불안정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권리가 향상되어야 함을 설득하려면, 결국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삶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며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현행 이주시스템은 이주여성들의 실제적 삶에 기반하여 정주할 권리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동을 종속화하고 권리를 시혜적으로 분배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결국 누가 어떻게 이주하는가,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바꿔낼 수 있는 이주시스템의 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여성의 취약성이 아닌 보편적 삶의 권리의 향상의 문제를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67) Constable, N. (Ed.). (2005).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68) 황정미, (2015).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피해에 대한 재고찰: 취약성프레임에서 인간안보의 관점으로. *한국여성학*, 31(4), 1-39.

69)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20) 경기도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질의응답

이슬기 : 먼저 채팅창에 의견들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직접 마이크 켜고 이야기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타리 님 그리고 김순남 님 그리고 전민경 님 순서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타리 님 부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타 리 : 정영 님 토론을 들으면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비자 종류가 많고 명시적으로 비자의 위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비자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자 간의 위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더 좋은 비자가 있고 더 나쁜 비자가 있다는 것을 행정 권력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권리가 차등되니까 정말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폭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자 간의 등급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는 인종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계급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의 등급과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의견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연주 님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소수자 난민이 신청하고 심사받는 과정에서 이 증거 없음과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성소수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 하는가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젠더 박해가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성소수자의 경험과 많이 겹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의외로 여성 난민 네트워크는 왜 없는 것인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혹은 젠더 박해와 관련해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인정 사유들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젠더나 섹슈얼리티 문제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좀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소수자 난민 인권네트워크에서도 좀 더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연주 님 같은 경우, 양쪽의 상황을 겪고 있으니 같이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한 생각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슬기 :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김순남 님의 말씀도 비자와 관련된 거라서 먼저 나눈 다음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순남 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김순남 :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타리 님의 의견과 비슷하게 저 또한 이주에 관한 비자 제도를 들을 때마다 계속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비자라는 제도 자체가 체류에 대한 권리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류 자체가 삶을 굉장히 파편화시키는 방향을 대처하고 있는 현실이고 거기에 더 종속화시키는 구조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주 배경 청소년 같은 경우도 부모의 비자나 체류 조건에 따라 종속화 되어 있고 이혼 후 여성에게도 매

우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만드는 것을 보니 어떤 삶을 계획할 수 있을까, 삶의 불안정성을 계속 정당화하는 이 비자 시스템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동안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오셨겠지만, 오늘 저는 이 종속화되는 구조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분노가 생겼네요. 그리고 또 그 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난민의 지위는 너무나 작고 협소한 것 같습니다. 인도적 체류 자격이라는 방식으로 양산시키고요. 사실 이 구도가 우리 사회가 권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그대로 폭력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고민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슬기 : 혹시 박정현 선생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박정현 : 타리 님께서 얘기하신 비자 등급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등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난민 신청자들도 등급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난민 신청자가 가장 낮고 인도적 체류자가 그보다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난민 인정자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2018년 경 부터 국가의 민주화 문제로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고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신청 기간이 늘어났어요. 심사를 받는 것도 늘어났고 그래서 힘든 상태에서 많이 기다리다가 대부분 인도적 체류 비자를 받았어요. 그 중 끝까지 난민 심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인도적 체류비자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분들은 사실 체류에 등급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고용허가제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이나 제조업이 유리하고 그 다음이 농촌, 그 다음이 어촌 순으로 보이지 않는 등급이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 간의 이동 또한 쉽지 않아요. 제조업에서 농촌, 어촌을 갈 수 있지만, 어촌에서 건설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사실 이걸 드러나 있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살면서 경험하면서 터득하고 체득하게 된 것인데, 사실 그런 식으로 비자 등급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존재한 것이지요. 그리고 난민 지위가 아니라 인도적 체류 자격이라는 것을 주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고 물으셨는데, 일단은 연주 님께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듯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정도껏 답변해보겠습니다. 난민 인정 기준이 있는데, 특히 앞의 이집트의 사례를 보면, 정치적 이유라고 해도 전쟁 난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보충적 지위라고 말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인도적 체류 지위라고 하면서 체류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난민과 인도적 체류 구분이 정말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난민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서로 비슷한 경우인데 누구는 난민 인정받고 누구는 인도적 체류를 받고 그렇거든요. 기준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불신이 커진 상황이지요. 한국의 난민 인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정보는 빠르게 공유되고 있어요. 또한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도 이후 체류를 인정했던 사유가 해지되거나 달라지면 언제든지 체류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 눈치를 보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난민법 시행되고 나서 인도적 체류자가 난민 인정자보다 1.8배 더 많은 사실만 봐도 그런 거지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인도적 체류자도 대략 2천 명 정도이니 많지도 않

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해 난민 인정해주는 비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슬기 :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동포 비자 같은 경우도 국적별로 다 다르게 지급이 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포여도 서구권 출신이나 중앙아시아 출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비자 종류랑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일할 수 있는 위치들이 다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동포 사회에서도 동포 비자 문제의 차별성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자는 굉장히 등급 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전민경 님 질문이랑 좀 연결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연주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민경 : 두 분 발표 정말 잘 들었고 트랜스보더링랩 주최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연주 선생님 발표문 준비해 주신 거 보다가 30쪽에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정확히 어떤 특징이 특수하다고 인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난민 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수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가능성과 특수성이 뭔가 신빙성에 영향을 좀 준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점의 특수성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연주 : 발표문 11쪽 이하에 젠더 기반 박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난민 신청을 평가하도록 하는 여러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대법원의 판시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판결 요지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진술 세부 사항에서 불일치하거나 제출한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갑의 피해 사실 부인 및 상해의 내용, 이 때문에 여성인 갑이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 난민 신청인으로서의 갑이 처한 처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 사실관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의 젠더 박해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인해서 사실 진술이 일부 불일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진술, 아까 앞서 나왔었던 얘기 중에 심사관이 남성 공무원일 경우 지금 난민법에서는 여성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같은 성의 공무원이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공무원이 심사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또 있거든요. 앞서서 공유했던 강제 결혼 사건도 남성 공무원이 심사를 진행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치심이나 낙인으로 인해서 진술이 일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의견 또 같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이드라인과 연구 논문을 읽어보면서 타리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여성 난민 신청자의 상황과 성소수자 난민이 심사 과정에서 겪는 상황이 되게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유엔난민기구 가이드라인을 처음 봤을 때 한국에 적용이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심사관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지침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타리 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성소 사실 소수자 난민 인권 네트워크에서 이미 그 작업을 해서 성소수자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

었고 여러 국제적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마련해서 이미 정부 법무부에도 다 전달하고 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바뀌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아정 :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에 대한 성폭력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1995년이라니. 난민협약 체결되고 나서도 젠더 관련 요인은 40년이 더 지나야 언급된다는 걸 감안하면,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1992년부터 1994년 보스니아 내전에서 대대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이에 대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법원에서의 여러 판결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내전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계속 한 동네에 살면서 남은 삶을 꾸리는 경우도 많아서요. '국적국 밖'이라는 난민 규정이 너무 협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김연주 : 아정 쌤 이야기 듣고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영향을 미쳐서 유엔 난민기구 성폭력 가이드가 나온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보고서가 영문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게 연결되는 맥락에서 이 지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기 : 지금 에밀리 님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직접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에밀리 : 인도적 체류 비자 받은 분 중 난민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영주권 신청 가능한 길이 있는 곳인가요?

김연주 : 지금까지 문제가 인도적 체류자도 원래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었는데 2019년인가, 국적법이 바뀌면서 모든 이주민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영주권 전치주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국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인도적 체류자 비자가 G1 비자가 영주 자격으로 변경 가능한 게 없어요. 인도적 체류자는 아무리 한국에 오래 체류를 해도 영주 자격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게 계속적으로 문제였는데, 이번에 15년 이상 한국에 인도적 체류자 로 살아온 한 분이 영주권이 안 되더라도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해서 알게 됐는데 영주 자격도 F5, 여러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딱 하나가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요건 자체가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을 것을 요하고 또는 이제 IT 전공자인 학사 초시자인 경우, 높은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확인했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 자체가 높은 기준이라 그런 카테고리가 있다고 해도 인도적 체류자에게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서 넘어갈 수 있는 장벽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IT 업종 등 소위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슬기 :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상한 일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다 님께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지점들 올려주셨는데 직접 말씀하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어서 제가 좀 대신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해의 상황을 보면 한 국가의 여성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듯 합니다. 국가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권 침해 및 생명 위협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난민인정 및 국가의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벗어나 젠더 폭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네트워크하여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젠더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 난민신청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젠더폭력을 만들어내는 상황은 국가폭력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결국 우리는 이런 취약성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자들과 싸워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 지점을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민인권센터에서 내일 하는 증언대회에 관련된 소식 공유해주셨어요. 라이브 스트림은 되지 않아서 나중에 홈페이지 통해서 자료집 확인하실 수 있다는 의견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6강 마지막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했던 상황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6강을 마치면서 7월에 시작해서 6주간 진행되었던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트랜스 보더링랩은 소수의 인원이 하는 작은 모임으로 우리끼리 뭘 해보자라기보다는 공부하고 논의하고 싶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자리를 만들고 계속 다른 분들에게 함께하자고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돌돌돌은 그 첫 번째 시도였는데 비록 더 복잡다난한 상황에 한숨도 나오고 갑갑해지는 내용도 많았지만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기쁨을 서로에게 선사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다음에 또 저희가 같이 하자고 꼬드긴다면 흔쾌히 넘어와 주셔서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도 또 더 많이 마주치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로 돌돌돌의 전체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관련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724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3535.htm

<https://v.daum.net/v/20250619200614572>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대회

<https://nancen.org/2348>